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23. 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23.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23.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정경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주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 (제도 개요) 조특법 제66조~68조의 평가대상 감면제도는 도입된 지 25년 이상 된 제도로 2003년부터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으며, 2021년에 2년 연장 후 현재 2023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동 제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조세감면을 통해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조세감면을 통한 관련 법인의 고용증대와 생산 활동 증진을 통해 이차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진작을 도모

- (제도 내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조세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지출규모) 3개 평가대상 감면제도의 2021년 조세지출액은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 증가함
 - (영농조합법인) 2021년 조세지출액은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 증가, 2022년 및 2023년 전망치는 각각 353억원, 384억원임
 - (영어조합법인) 2021년 조세지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소, 2022년

및 2023년 전망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업회사법인) 2021년 조세지출액은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 2022년 및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표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영농 조합 법인 | 소득세 | 87 | 130 | 140 | 148 | 178 | 141 | 154 |
| | 법인세 | 197 | 202 | 188 | 194 | 209 | 212 | 231 |
| | 합계 | 284 | 332 | 328 | 343 | 387 | 353 | 384 |
| 영어 조합 법인 | 소득세 | 2 | 2 | 3 | 1 | 0.2 | 0.1 | 0.1 |
| | 법인세 | 23 | 27 | 30 | 31 | 29 | 35 | 38 |
| | 합계 | 25 | 29 | 33 | 32 | 29 | 35 | 38 |
| 농업 회사 법인 | 소득세 | - | 40 | 41 | 1 | 4 | 3 | 4 |
| | 법인세 | 154 | 231 | 186 | 177 | 189 | 270 | 294 |
| | 합계 | 154 | 271 | 227 | 178 | 193 | 273 | 298 |
| 합 계 | | 463 | 632 | 588 | 553 | 609 | 661 | 720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법인 현황) 2021년 현재 농업법인은 25,605개이며, 영농조합법인이 11,337개, 농업회사법인이 14,268개로 농업회사법인이 과반임(55.7%)
 - 법인별 매출액 규모, 자본금 등을 살펴보면 법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인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1억원 미만 법인이 10,772개로 전체의 42.1%, 1억~5억원 미만이 5,564개로 21.7%이며, 100억원 이상은 1,002개로 3.9% 수준임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4억 8,100만원,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6억 6,100만원 정도이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이 4,503개(39.7%), 농업회사법인이 6,090개(42.7%)임
 - 농업법인 종사자는 약 19.4만명이며, 법인당 평균 종사자는 7.6명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중심(41.2%), 농업회사법인은 농축산물 가공·유통업 중심(56.9%)으로 운영
 - 농업법인당 평균 출자자 수는 영농조합법인(14.7명)이 농업회사법인(6.4명)보다

많은데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3.4억원)이 영농조합법인(2.5억원)보다 많음

- 2021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비중은 6.9%(1,965억원),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비중은 18.6%(9,001억원)임

□ (어업법인) 2020년 현재 운영 중인 어업법인은 2,985개이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2,327개, 어업회사법인은 658개로 영농조합법인이 전체 중 78.0% 비중을 차지함

○ 해수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어업법인 5,423개 중 약 45% 정도가 미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 운영되고 있는 법인 비중이 47.9%에서 55.0%로 증가

○ 영농조합법인의 조세지출액은 전체의 약 4.8%(29억원)에 불과하여 농업법인인 대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타당성 분석) 정부개입의 정당성, 지원방법의 적절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타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함

○ (정부개입의 정당성)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득결정식을 설정하고, 학력수준, 연령, 가구규모, 성별 차이 등을 통제하여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유의미하게 연간 812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추정

- 재정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2007~2020년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 현상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됨

○ (지원방법의 적절성) 동 조세특례는 이론적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균형고용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방법론상 적절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

○ (지원수준의 적정성)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조세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적(optimum)이지만, 현실에서 최적수준을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음

- 다만 실증분석에서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에 미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동 지원정책이 방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 (타 제도와의 중복성) 농어업 부문을 대상으로 조특법 등에 규정된 각종 조세 지원·감면 제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지원 대상 객체와 지원 대상 세목, 지원 조건 등이 구별되어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효과성 분석)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의 필요성,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 관계, 농업법인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 제도 변화 시 효과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 (법인 참여 효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는지를 분석
 - 농업총조사(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합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도와 합산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한 경우에 총판매금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모두 참여(4,069.9만원)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2,073.1만원)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1,382.4만원)’의 순으로 매출증가효과가 나타남
 - (출자와 소득 간 관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비농업인 출자 정보와 해당 법인의 농업소득 간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 관계에 대해 확인함
 - 분석결과, 농업인 출자액 비중이 낮을수록, 총 출자금액이 클수록 법인의 농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
 - (법인 참여 유인 구조)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는 동일한 소득조건인 농업인이 개인 대신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상의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사례분석으로 판단함
 - 사업소득에 대한 동 제도의 감면 범위와 조건상으로, 소수의 대규모 농업인을 제외하면 개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조직에 참여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제도 변화 시 효과는 2000년대에 있었던 제도상의 주요

1) 단, 이러한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2016~202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나, 농업법인이면서 농업인 출자자가 0, 자산과 출자금 항목이 0인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특히 자산이 0인 관측치 수가 전체 표본의 60%를 넘는 등 자료 자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변화(200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 2014년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후 관련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후 행태변화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과세전환은 법인의 행태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작물재배면적 대비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율의 감소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남

□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결과, 법인설립을 통하여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 특례제도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지원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 조세특례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동 조세특례를 일몰시킬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다만 중장기적으로 농어업 가구와 비농가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이를 살펴 향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뮬레이션상 조세특례 구조가 대규모 농업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농업 소득에 대한 정확한 미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임
 - 이번 분석은 미시 데이터 취득의 제한으로 통계청의 통합자료(aggreated data)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서 향후 세부자료취득이 가능해지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²⁾

□ (관련 제도의 정비) 그동안 동 특례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에서 세제 지원을 받는 법인들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를 신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늦게나마 수령한 농업법인 관련 미시 자료는 이상치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시 자료 관리를 위한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정 되는바,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게 하고, 농어업법인의 운영 실태 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됨
- (농어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여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정부 용자나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어업법인이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님
- 최근 대법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의무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판결함(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시행령에 따라 동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을 것이나, 동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법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감면의 조건으로 한 현행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면 향후 명시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부대사업소득 감면 대상 제외 여부) 면제 대상 농어업법인 소득 가운데, 부대사업 소득의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하였음
- 예를 들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의 재배와 같은 농업의 본질적인 사업이 아니고, 여타 휴양지에서의 관광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혜택을 부여함에 따른 문제 제기임
 -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세한 자료의 존재 여부 및 접근이 중요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가용 데이터를 이용한 전체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대비 부대사업 매출액은 약 1.1% 수준으로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2년에 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20조의5 사업범위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의한바, 법적 안

정성 측면을 고려하고, 자료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부대사업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 (비농업인에 대한 혜택 제한)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는 비농업인에게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참여 추세는 현재 증가추세라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2018~2021년간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수 비중은 각각 14.8%, 15.2%, 14.4%, 14.5% 수준이며,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8.6%, 20.8%, 21.9%, 18.6% 수준임
 -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를 신설하여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총액 중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법인세 감면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제한함
 - 동시에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농업회사법인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에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농업인만으로는 자본출자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고,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특정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농업인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배제는 일정 기간 후에 그 추세를 검토한 후 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함

목 차

| | |
|---|-----|
| I. 서론 | 15 |
| II.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 19 |
| 1.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개요 | 21 |
| 가. 연혁 | 21 |
| 나.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내용 | 30 |
| 다. 조세지출 규모 | 39 |
| 2. 제도 운영 현황 | 47 |
| 가. 법인 구분 | 47 |
| 나. 법인 현황 | 51 |
| 3. 주요 쟁점사항 | 69 |
| 가. 최근 선행 연구 | 69 |
| 나. 외부 평가 | 78 |
| 다.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 | 83 |
| 라. 최근 개선 사항 | 89 |
| III. 타당성 분석 | 93 |
| 1. 개요 | 95 |
| 가. 주요 분석목적과 분석내용 | 95 |
| 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97 |
| 2. 정부개입의 정당성 | 99 |
| 가. 개요 | 99 |
| 나.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소득: 단순비교 | 100 |
| 다.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특성 비교 | 102 |
| 라.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선행연구 고찰 ... | 117 |
| 마.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실증분석 | 120 |

| | |
|---|------------|
| 마. 소결 | 127 |
|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128 |
| 가. 조세감면을 통한 농어의 가구소득 증대정책의 적절성 논란 | 128 |
| 나. 이론분석 | 129 |
| 4. 지원수준의 적정성 | 135 |
| 5. 타 제도와의 중복성 | 137 |
| 6. 소결 | 138 |
| | |
| IV. 효과성 분석 | 141 |
|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와 농가 매출액 간의 관계 | 144 |
| 가. 분석자료 | 145 |
| 나. 분석방법 | 147 |
| 다. 분석결과 | 148 |
| 2. 농업법인의 종류 및 출자 특성과 농업소득 간의 관계 | 153 |
| 가. 분석자료 | 153 |
| 나. 분석방법 | 156 |
| 다. 분석결과 | 156 |
| 3. 조세지출 구조상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유인 | 158 |
| 가.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1) | 159 |
| 나.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2) | 160 |
| 다.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소수의 농업인과 다수의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한 농업인(사례 3) | 161 |
| 4. 조세지출제도 개편에 따른 행태 변화 여부 | 164 |
| 가.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의 효과 | 165 |
| 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의 과세전환 효과 | 171 |
| 5. 소결 | 176 |
| | |
| V. 결론 및 시사점 | 181 |
| | |
| 참고문헌 | 189 |

표 목 차

| | |
|--|----|
| <표 II-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주요 연혁 | 21 |
|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주요 연혁 | 23 |
| <표 II-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연혁 | 25 |
| <표 II-4>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주요 연혁 | 26 |
| <표 II-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연혁 | 26 |
| <표 II-6>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요 연혁 | 27 |
| <표 II-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요 연혁 | 29 |
| <표 II-8> 평가대상 특례제도 내용 | 30 |
| <표 II-9>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 32 |
| <표 II-10>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금액 | 32 |
| <표 II-1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 33 |
| <표 II-12>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 35 |
| <표 II-13>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 36 |
| <표 II-14> 조세지출 감면 현황 및 예상 감면액 | 40 |
| <표 II-15> 연도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 41 |
| <표 II-16> 연도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 41 |
| <표 II-17> 연도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 41 |
| <표 II-18>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 43 |
| <표 II-19>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 비교 | 44 |
| <표 II-20> 농어업분야 주요 국세감면 제도 현황(2021년 실적) | 45 |
| <표 II-21> 농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기준 비교 | 47 |
| <표 II-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 49 |
| <표 II-23>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비교 | 50 |
| <표 II-24>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 | 51 |
| <표 II-25> 농업법인 및 법인당 종사자 수(2021년 기준) | 52 |
| <표 II-26> 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 53 |
| <표 II-27>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현황 | 54 |

| | |
|--|-----|
| <표 II-28> 운영기간별 농업법인 현황 | 55 |
| <표 II-29> 농업법인 출자자 수 및 출자금 규모(2021년 기준) | 56 |
| <표 II-30> 비농업인 출자자 수 추이 | 56 |
| <표 II-31> 출자금 형태별 추이 | 57 |
| <표 II-32> 출자자 유형별 출자금 추이 | 58 |
| <표 II-33>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에 따른 농업법인 수(2021년) | 59 |
| <표 II-34> 연도별 농업법인 경영실태(법인당) 추이 | 60 |
| <표 II-35> 농업법인별 매출액 현황(2021년 기준) | 61 |
| <표 II-36>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추이 | 62 |
| <표 II-37>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추이 | 63 |
| <표 II-38>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추이 | 63 |
| <표 II-39> 농업법인 농지 현황(2021년 기준) | 65 |
| <표 II-40> 농업법인 주요 지표 요약(2021년 기준) | 67 |
| <표 II-41> 어업법인 수 현황 | 67 |
| <표 II-42> 연도별 어업경영체 법인 수 현황 | 68 |
| <표 II-43> 연도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수 현황(설립연도 기준) | 68 |
| <표 II-44>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문제점 | 70 |
| <표 II-45> 어업법인 주요 감면 내용 | 84 |
| <표 II-46>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 세제 지원 | 85 |
| <표 II-47> 어업활동 소득세 감면(사업자별) | 85 |
| <표 II-48> 농어업법인 관리 체계화 관련 개정 내용 | 89 |
| <표 II-49>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 | 90 |
| <표 II-50>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21년 기준) | 90 |
| | |
| <표 III-1> 가구유형별 총소득 추이 비교 | 102 |
| <표 III-2> 가구유형별 평균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 105 |
| <표 III-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연령 추이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 107 |
| <표 III-4> 가구유형별 30~54세 가구 비율 비교(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자료 기준) · | 108 |
| <표 III-5> 가구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 비교(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 자료 기준) | 109 |
| <표 III-6> 가구소득 10분위별 5세 연령그룹의 비중 분포(재정패널자료 2020년) · | 110 |

| | |
|---|-----|
| <표 III-7>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 113 |
| <표 III-8>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중졸 이하(재정패널자료 기준) | 115 |
| <표 III-9>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고졸(재정패널자료 기준) | 116 |
| <표 III-10>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전문대 이상(재정패널자료 기준) | 116 |
| <표 III-11> 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선행연구 결과) | 119 |
| <표 III-12> 가구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재정패널자료 기준) | 124 |
| | |
| <표 IV-1> 기초통계량(통합회귀분석 기준) | 146 |
| <표 IV-2> 201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 146 |
| <표 IV-3> 2015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 147 |
| <표 IV-4> 202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 147 |
| <표 IV-5> 통합회귀분석 추정결과 | 149 |
| <표 IV-6> 201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150 |
| <표 IV-7> 2015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151 |
| <표 IV-8> 202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151 |
| <표 IV-9> 변수 간 상관관계 | 155 |
| <표 IV-10> 기초통계량 | 155 |
| <표 IV-11>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 157 |
| <표 IV-12>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한도 | 158 |
| <표 IV-13>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법인세 적용세율 | 159 |
| <표 IV-14> 법인별 배당소득세 감면 한도 | 159 |
| <표 IV-15> 사례 1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160 |
| <표 IV-16> 사례 2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161 |
| <표 IV-17> 사례 3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162 |
| <표 IV-18> 법인당 출자금액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 168 |
| <표 IV-19>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 169 |
| <표 IV-20> 출자법인 수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 170 |
| <표 IV-21>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 173 |
| <표 IV-22>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 | 174 |
| <표 IV-23> 2014년의 구조적 변화 여부 검증 결과 | 175 |
| <표 IV-24> 분석기간(2000~2021년) 중 구조적 변화 개수 추정 결과 | 17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국제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분야 비중 추이 | 44 |
| [그림 II-2] 농업법인 수 추이 | 52 |
| | |
| [그림 III-1] 가구유형별 가구총소득 평균(재정패널자료) | 101 |
| [그림 III-2] 가구유형별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 104 |
| [그림 III-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재정패널자료) | 106 |
| [그림 III-4]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30~54세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 108 |
| [그림 III-5]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 109 |
| [그림 III-6]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총소득 평균 분포(재정패널자료) | 111 |
| [그림 III-7]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교육연수(재정패널자료) | 112 |
| [그림 III-8]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비중(재정패널자료) | 114 |
| [그림 III-9]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비중(재정패널자료) | 114 |
| [그림 III-10]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졸 비중(재정패널자료) | 115 |
| [그림 III-11] 법인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노동시장 예시) .. | 131 |
| [그림 III-12] 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근로소득세 예시) .. | 132 |
| [그림 III-13] 법인세·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 | 134 |
| | |
| [그림 IV-1] 법인당 출자금 추이 | 166 |
| [그림 IV-2] 출자법인 수 추이 | 166 |
| [그림 IV-3] 출자법인 수 추이(2002~2009년) 확대 | 167 |
| [그림 IV-4]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추이 | 167 |
| [그림 IV-5]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추이 | 172 |
| [그림 IV-6]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추이 | 172 |
| [그림 IV-7]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 178 |
| [그림 IV-8]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 178 |

I. 서론



I. 서론

- 「조특법」 제66조~68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합원 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세 조세특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조합 또는 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인 3개의 특례제도는 농업 및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법인을 통하여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등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고, 한·칠레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제도를 도입함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하여 농업 분야 기업 경영 활성화 및 조합원 등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조세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개 평가대상 조세특례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액(합산)은 2021년 실적 기준, 609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6억원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87억원이며,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어조합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9.4% 감소한 29억원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회사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8.4% 증가한 193억원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영농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1995년)과 영어조합법인(1997년)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최소 25년 이상 여러 차례의 일몰연장을 통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일몰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II.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1.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개요³⁾

가. 연혁

-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는 1989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이후 1995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997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었음
- 법인별 조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한도 조정과 과세범위 등을 조정하여 왔음

<표 II -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주요 연혁

| 연도 | 주요 내용 |
|-------|---|
| 198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조합원당 386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386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징) |
| 199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386만 → 500만원 |
| 199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500만 → 1,200만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징) |
| 199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1,200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징) |
| 200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이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영농사업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본 절은 홍범교 외(2021), pp. 21~59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 함

〈표 II -1〉의 계속

| 연도 | 주요 내용 |
|-------|--|
| 200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 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
| 201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함 |
| 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준 금액 한도 확대: 1,200만 → 3,000만원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도래: 2023년 12월 31일 |

자료: 이동규 외(2018), p. 31; 홍범교 외(2021), p. 47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작성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 1989년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한 이후 1993년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 1998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한 후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함
- 2014년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전환함⁴⁾
 - 과세전환 관련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당시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사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기존 작물재배업과 동일한 1차 산업인 임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발생된 농어업법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
 - 유사 업종 모두 1차 산업으로 FTA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업종으로 소득을 각각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

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1., pp. 467~468.

- 동 제도에 따라 작물재배업 소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세제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조세구조가 형성됨
- 또한 해외의 농림소득 과세의 경우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특정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없음
- 더불어 영농의 규모화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농이 증가하는 반면, 판매액이 연 120만원도 되지 않는 고령농 비중도 확대되는 등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득재분배 강화가 필요⁵⁾
- 반면, 과세 전환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유지하자는 반대의견도 있었음
 - 더불어 기후에 따라 수확량 및 가격 변동이 크고 연도별 소득 편차가 큰 농업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일정 수입 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수입이 집중되는 특정연도에는 농업법인의 담세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일부 소득을 과세 전환하더라도 세수증대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표 II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1989.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농지소득으로 규정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및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일부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 과세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징 |

5) 상동, p.60.

<표 II -2>의 계속

| 연도 | 내용 |
|---------------|--|
| 1990. 12. 31. | • 면제 세목에서 방위세 및 교육세 삭제 |
| 1993. 12. 31. |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
| 1998. 12. 28.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
| 2000. 12. 29. |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농지에서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개정함 |
| 2003. 12. 30. |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 2006. 12. 30. |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 2010. 1. 1. |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 2013. 1. 1. |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
| 2014. 1. 1. |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전환 • 양도소득세 사후관리규정 추가 - 초지 및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 지분의 100분의 50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정 |
| 2015. 12. 15. |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
| 2016. 12. 20. |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또는 초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
| 2018. 12. 24. |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 2019. 12. 31. |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함 |
| 2021 .12. 28 | • 일몰기한 연장: 2023년 12월 31일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범교 외(2021), p. 48의 내용을 업데이트 함

<표 II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1989.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상당가산액’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율을 적용함 |
| 1990. 6.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추가 (386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 배당소득세 비과세 설정: 386만원까지 |
| 1990.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 386만원 → 500만원 |
| 1993.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
| 1995.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조합원당 1,200만원 |
| 1998.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 2014.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 2020. 2.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 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022. 2.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 1일 10만분의 25 → 10만분의 22(「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9항)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범교 외(2021), p. 49의 내용을 업데이트 함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1997년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한 후 1998년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이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함

<표 II -4>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1997. 12.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정 |
| 1998.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
| 2003.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 2006.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 2010.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 2013.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
| 2015. 12.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
| 2016. 12.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
| 2018. 12.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 2019.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 |
| 2021.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3년 12월 31일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범교 외(2021), p. 50의 내용을 업데이트 함

<표 II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1997. 12.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 한도 설정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 수/12) - 배당소득세 면제 한도 설정 (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

<표 II -5>의 계속

| 연도 | 내용 |
|---------------|---|
| 1998.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 2020. 2.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 면제 금액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어업소득과 그 제외 소득금액 |

자료: 홍범교 외(2021), p. 51.

3)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 동 제도는 1995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과세특례 대상의 추가 및 일몰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4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혜택을 추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배당소득 감면제도를 신설
 - 이후 2019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법인세 감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
 - 동 규칙에서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표 II -6>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1995. 12.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신설 • 내용: 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② 농업인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시기: 1996. 1. 1. 이후 |
| 1998.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전면 개정 시 구법 제53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로 이관하고 일몰기한 2003. 12. 31. 신설 |
| 2003.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06년 12월 31일 |

<표 II -6>의 계속

| 연도 | 내용 |
|---------------|--|
| 2004.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추가 • 적용시기: 2005. 1. 1. 이후 |
| 2006.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일몰기간 연장 및 면제대상 소득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09년 12월 31일 -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
| 2010.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2년 12월 31일 |
| 2011.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
| 2013.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5년 12월 31일 |
| 2014.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로 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전환 •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
| 2015. 12.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8년 12월 31일 |
| 2016. 12.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초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감면 범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 2018. 12.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 2019.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 |
| 2021.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3년 12월 31일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범교 외(2021), p. 52의 내용을 업데이트 함

<표 II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요 연혁

| 연도 | 내용 |
|--------------|---|
| 2007. 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추가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 2012. 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 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 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 외 소득금액) 2. 농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 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 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 외 소득금액) |
| 2014. 2.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 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 2017. 2.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 발생한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2019. 3.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조항 신설(2019. 3. 20.)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의 경우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이며,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이 해당 |
| 2020. 2.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자료: 홍범교 외(2021), p. 53.

□ 참고로 2021년 8월 17일에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어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하였으며,⁶⁾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양도차익이나

-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⁷⁾
- 또한 농업법인은 설립 사실을 등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⁹⁾

나.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내용

□ 평가 대상인 3가지 과세특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II-8>과 같음

<표 II -8> 평가대상 특례제도 내용

| 구분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6조)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7조)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8조) |
|--------|---|---|--|
|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 면세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한도 면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까지 면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 감면 |
| 양도 소득세 |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배당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 출자자의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을 면세,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자료: 저자 작성

-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
-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고, 한·칠레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어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입함

나) 정책대상자

-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①)
 - 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①)
 -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②)¹⁰⁾
 -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 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조특령§63④)

다) 특례내용

- 영농조합이 받는 아래의 조세혜택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인세 면제(조특§66①, 조특령§63①)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표 II -9〉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
- 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나. 아래의 산식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
 - 다. 아래의 산식에서의 면제소득 범위 내 그 밖의 소득금액
면제소득 범위 =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조특§66②, 조특령§63②,③)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¹¹⁾

〈표 II -10〉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금액

-
- 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다.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이하의 금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조특§66③)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11)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봄(조특령§63③)

□ 양도소득세 감면(조특§66④)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는 것을 새롭게 규정
-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표 II -1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가.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액

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다른 용도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소득 전액

$$\text{양도소득금액} \times \left(\frac{\text{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 \right)$$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66⑦)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조특§66⑤, ⑥, 조특령§63 ⑥, ⑨)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 지분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
 -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 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함)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해당 피상속인(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미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조특§66⑨,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함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 영농조합법인 도입 목적과 동일함
 - 한·칠레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입함

나) 정책대상자

- 정책대상자는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어업인임

- 영어조합법인: 5인 이상의 어업인 및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②)
- 조합원: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⑤)
- 어업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수산업법§2⑫, 수산종자산업육성법§2⑦)¹²⁾¹³⁾
 - 해당 어업인이 현물출자 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다) 특례내용

- 영어조합이 받는 아래의 조세혜택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법인세 면제(조특§67①, 조특령§64①)
 -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표 II -12>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 | |
|--------------------------------------|--|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어로어업소득) | 면제소득 범위 = 3,0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 면제소득 범위 =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조특§67②, 조특령§64②)

- 1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함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 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조특§67③)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감면(조특§67④)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표 II -13>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가.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액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다른 용도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소득 전액

$$\text{양도소득금액} \times \left(\frac{\text{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 \right)$$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조특§67⑤, 조특§66⑥)

- 어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 농업 분야의 기업 경영 활성화 및 조업원 등 농업인의 소득증가를 도모하고자 동 특례제도를 도입함
 -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농업생산 전문화를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나) 정책대상자

- 조세특례 적용 대상자 및 적용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음
 -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설립한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¹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조특령§63④)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농업인·거주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아닌 자도 일정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¹⁵⁾
 - (농업소득)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다) 특례내용

(1) 법인세 과세특례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다음 계산식에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법인세 50% 감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 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 혹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산 처분 시에 과세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산산식은 앞에서 언급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을 준용함

(3) 배당소득 과세특례

- (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함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에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함
- 이 경우에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 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다. 조세지출 규모

- 3개 평가대상 조세특례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액(합산)은 2021년 실적 기준, 609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6억원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87억원이며,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법인세 지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 소득세 지출은 전년 대비 20.3% 증가
- 영어조합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6.5% 감소한 29억원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법인세 지출은 전년 대비 6.5% 감소, 소득세 지출은 전년 대비 75.0% 감소
- 농업회사법인은 2021년 전년 대비 9.0% 증가한 193억원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법인세 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 소득세 지출은 전년 대비 400.0% 증가

〈표 II -14〉 조세지출 감면 현황 및 예상 감면액

(단위: 억원)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영농 조합 법인 | 소득세 | 87 | 130 | 140 | 148 | 178 | 141 | 154 |
| | 법인세 | 197 | 202 | 188 | 194 | 209 | 212 | 231 |
| | 합계 | 284 | 332 | 328 | 343 | 387 | 353 | 384 |
| 영어 조합 법인 | 소득세 | 2 | 2 | 3 | 1 | 0.2 | 0.1 | 0.1 |
| | 법인세 | 23 | 27 | 30 | 31 | 29 | 35 | 38 |
| | 합계 | 25 | 29 | 33 | 32 | 29 | 35 | 38 |
| 농업 회사 법인 | 소득세 | - | 40 | 41 | 1 | 4 | 3 | 4 |
| | 법인세 | 154 | 231 | 186 | 177 | 189 | 270 | 294 |
| | 합계 | 154 | 271 | 227 | 178 | 193 | 273 | 298 |
| 합 계 | | 463 | 632 | 588 | 553 | 609 | 661 | 720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 2023년 조세지출 규모(전망치)는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한 약 384억원으로, 2021년 수준으로 전망

<표 II -15> 연도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소득세 | 125 | 105 | 87 | 130 | 140 | 148 | 178 | 141 | 154 |
| 법인세 | 192 | 200 | 197 | 202 | 188 | 194 | 209 | 212 | 231 |
| 합계 | 317 | 305 | 284 | 332 | 328 | 343 | 387 | 353 | 384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 2023년 조세지출 규모(전망치)는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한 약 38.1억원으로 전망

<표 II -16> 연도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소득세 | 8 | 4 | 2 | 2 | 3 | 0.8 | 0.2 | 0.1 | 0.1 |
| 법인세 | 21 | 22 | 23 | 27 | 30 | 31 | 29 | 35 | 38 |
| 합계 | 29 | 26 | 25 | 29 | 33 | 31.8 | 29.2 | 35.1 | 38.1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 2023년 조세지출 규모(전망치)는 전년 대비 23억원 증가한 약 297억원으로 전망

<표 II -17> 연도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소득세 | - | - | - | 40 | 41 | 1 | 4 | 3 | 4 |
| 법인세 | 123 | 153 | 154 | 231 | 186 | 177 | 189 | 270 | 294 |
| 합계 | 123 | 153 | 154 | 271 | 227 | 178 | 193 | 274 | 297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4)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 국세통계연보상 연도별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은 다음의 <표 II-18>과 같음
 - 2021년 영농조합법인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2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약 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2,604개, 일반법인은 70개로 각각 전년 대비 6.8%, 11.4% 감소함
 - 2021년 영어조합법인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일반법인은 약 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0%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423개로 전년 대비 13.0% 감소하였으며, 일반법인은 2개로 전년 대비 60.0% 감소함
 - 2021년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약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708개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18개로 전년 대비 10.0% 감소함
 - 2021년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일반법인은 약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1,066개로 전년 대비 11.5% 감소, 일반법인은 3개로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임
 - 2021년 전체 법인세액 감면 신고 금액 중 중소기업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이 약 0.6%,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이 약 0.5%, 영어조합법인이 약 0.2%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감면 대상 법인 수의 경우 전체 중 영농조합법인이 약 1.1% 정도이며, 그 뒤로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 0.4%,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 0.3%, 영어조합법인 0.2% 순임

<표 II -18>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 영농조합 법인 | 18,672 (2,968) | 1,058 (197) | 19,400 (2,977) | 810 (164) | 18,432 (2,945) | 364 (95) | 19,138 (2,793) | 302 (79) | 20,622 (2,604) | 299 (70) |
| 영어조합 법인 | 2,271 (437) | 25 (10) | 2,688 (447) | 36 (9) | 2,949 (486) | 33 (5) | 3,041 (486) | 29 (5) | 2,842 (423) | 20 (2) |
| 농업회사 법인 (농업 소득) | 5,461 (412) | 771 (28) | 7,024 (528) | 1,012 (22) | 7,261 (579) | 894 (22) | 7,548 (631) | 1,177 (20) | 8,146 (708) | 731 (18) |
| 농업회사 법인 (농업 소득 외) | 7,354 (918) | 1,850 (6) | 13,265 (1,054) | 1,790 (4) | 9,938 (1,220) | 511 (4) | 8,698 (1,205) | 232 (3) | 9,827 (1,066) | 235 (3) |
| 전체 | 1,298,809 (202,163) | 1,021,358 (444) | 1,420,006 (216,122) | 919,547 (382) | 1,260,405 (224,306) | 757,161 (284) | 1,333,242 (234,970) | 733,228 (247) | 1,589,302 (237,091) | 395,319 (220) |

주: 1. () 안은 신고법인 수

2.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연도별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9>와 [그림 II-1]과 같음

- 2021년(실적) 국세감면액은 약 57.0조원으로 2020년 53.9조원 대비 약 3.1조원 증가함
- 2022년 및 2023년 전망치는 각각 63.6조원, 69.3조원으로 이는 2021년 실적치 대비 각 6.6조원, 12.3조원 증가한 수치임
- 농림수산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국세감면액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액 대비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음

<표 II -19>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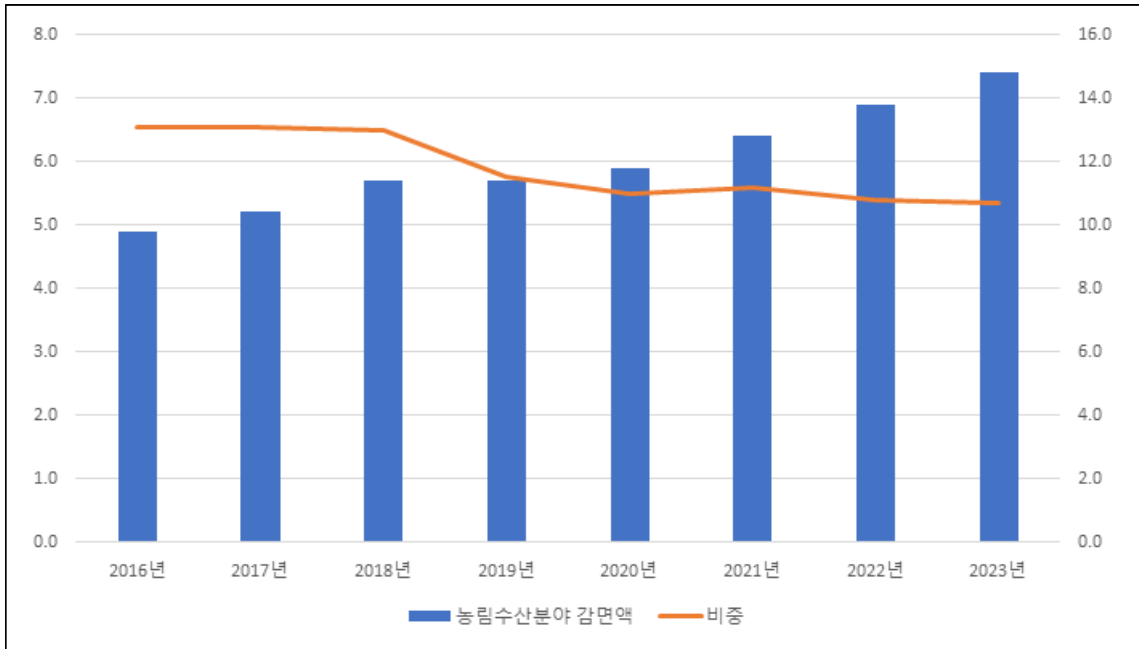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국세 감면액 | 37.4 | 39.7 | 44.0 | 49.6 | 53.9 | 57.0 | 63.6 | 69.3 |
| 농림수산분야 감면액 | 4.9 | 5.2 | 5.7 | 5.7 | 5.9 | 6.4 | 6.9 | 7.4 |
| 비중 | 13.1 | 13.1 | 13.0 | 11.5 | 11.0 | 11.2 | 10.8 | 10.7 |

주: 1. 비중은 전체 국세감면액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을 의미함
 2. 2022년 및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그림 II -1]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분야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1. 좌축은 조원, 우축은 %
 2. 비중은 국세감면액 대비 농림수산분야 감면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농어업분야의 주요 감면제도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20>과 같음
 - 국세 중 농어업분야 감면제도는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약 23개 정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2021년 실적 기준 각각

209억원과 189억원이며, 어업만을 단독으로 조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영어조 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29억원)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7억원)으로 2021년 실적 기준 약 46억원으로 농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II -20> 농어업분야 주요 국세감면 제도 현황(2021년 실적)

(단위: 억원)

| 국세 세목 | 감면 내용 | 근거 법령 | 감면 세액 | | | 일몰 기한 |
|----------|--|---------------------------|-------------|-------------|-------------|---------------|
| | | | 2021년 실적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소득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사목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없음 |
|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 157 | 159 | 169 | 없음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9조 | 20,459 | 22,026 | 23,686 | 없음 |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9조의2 | 191 | 190 | 205 | 2025. 12. 31. |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9조의4 | 2 | 0.3 | 0.3 | 없음 |
| | 농지 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조특법 제70조 | 1,102 | 1,292 | 1,389 | 없음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조특법 제87조의2 | 35 | 30 | 33 | 2025. 12. 31. |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제99조의4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2025. 12. 31.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제70조의2 | 0 | 0 | 0 | 없음 |
|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제69의3 | 17 | 16 | 17 | 2025. 12. 31. |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 3,760 | 3,432 | 3,690 | 2025. 12. 31. |

<표 II -20>의 계속

(단위: 억원)

| 국세 세목 | 감면 내용 | 근거 법령 | 감면 세액 | | | 일몰 기한 |
|-------------|--|--|-------------|-------------|-------------|---------------|
| | | | 2021년 실적 | 2022년 전망 | 2023년 전망 | |
| 상속 및 증여세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특법 제71조 | 773 | 972 | 992 | 2025. 12. 31. |
| |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994 | 1,113 | 1,268 | 없음 |
| 부가 가치세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 18,481 | 21,454 | 22,929 | 2025. 12. 31. |
| |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34 | 73 | 78 | 2025. 12. 31. |
|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법 제105조의2 | 1,401 | 1,570 | 1,678 | 없음 |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2023. 12. 31. |
|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2,893 | 3,802 | 4,063 | 2023. 12. 31. |
| 법인세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제66조 | 209 | 353 | 384 | 2023. 12. 31. |
|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68조 | 189 | 273 | 298 | 2023. 12. 31. |
|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제67조 | 29 | 35 | 38 | 2023. 12. 31. |
|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특법 제72조 | 3,347 | 4,291 | 4,665 | 2025. 12. 31. |
| 인지세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5, 6, 7, 9, 11호 | 116 | 119 | 124 | 2023. 12. 31. |

주: 1.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할 경우 대표적인 세목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 제도 운영 현황

가. 법인 구분

1)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에서는 농업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정의함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농업인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경영 또는 경작 농지가 1,000㎡ 이상이거나 농지 또는 축사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함

<표 II -21> 농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기준 비교

|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
| 분류 기준 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비농업인이 분양받은 경우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표 II -21>의 계속

|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
| 분류 기준 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판매액 기준 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2) 330㎡ 이상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 3) 660㎡ 이상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 가축 사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30㎡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규모를 사육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곤충 사육 및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자 | |

주: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16조, 제1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농업인 확인 기준 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농작물 및 가축, 곤충 사육 및 생산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며, 이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신청 자격 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홍범교 외(2021), p. 24. 내용을 업데이트 함

- 다음의 <표 II-22>는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비교한 내용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조합원을 구성·설립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함
 - 여기서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 생산력 증진 및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 단체를 말하며 다음의 4가지로 구분 가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표 II -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
|-------|--|--|
| 관련규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18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법인 성격 | • 협업적 농업경영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 기업적 경영체 •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며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 가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설립 자격 | •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 •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
| 설립요건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 하되,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
| 사업내용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작업 대행 •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동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¹⁾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농지소유 | • 소유 가능 |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 제3호) |
| 타법 준용 |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

주: 1)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자료: 서종석 외(2017), pp. 13~14.; 홍범교 외(2021), p. 25. 내용을 일부 수정함

2) 어업법인

- 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 어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함
 - 여기서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체로, 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
 -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따르며, 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

<표 II -23>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비교

| 구분 |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
|--------------|--|---|
| 관련 규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성격 | • 협업적 어업경영 | • 기업적 어업경영 |
| 설립 요건 및 출자제한 | • 어업인 5인 이상 조합원 참여 - 비어업인의 경우 의결권 없는 준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조합원 1인 출자액 제한 없음 | • 비어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 초과 불가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비어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총출자액이 80억원 초과한 경우) |
| 설립 자격 | • 어업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 • 어업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
| 발기인 수 | • 어업인 5인 이상 | •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름 |
| 책임 |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출자 한도로 유한책임 ¹⁾ | •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름 |
| 의결권 | • 1인 1표(준조합원 의결권 없음) | • 출자 지분에 의함 |
| 사업내용 | • 어업·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 사업 • 어업·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 및 가공, 수출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 | • 수산업의 경영 또는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주: 1) 2015년 7월 7일 이후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기존 영어조합법인은 2015년 7월 7일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적용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p. 4.; 홍범교 외(2021), p. 26. 및 김정환 외(2021), p. 18을 참조

나. 법인 현황

1) 농업법인¹⁶⁾

가) 법인 수

- 2021년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 수는 25,605개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11,337개(44.3%), 농업회사법인은 14,268개(55.7%)임
 - 2021년 기준 대법원 등기부에서 추출된 농업법인(농업경영체 DB 포함) 총 78,545개소 중 통계기업등록부(SBR)를 연계하여 확인된 결산법인은 총 44,736개임¹⁷⁾
 - 이 중 활동법인은 25,605개(57.2%), 비활동법인 18,021개(40.3%), 폐업 1,106개(2.5%)로 조사됨¹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1년 11,337개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2021년 14,268개로 전년 대비 0.7% 감소함

〈표 II -24〉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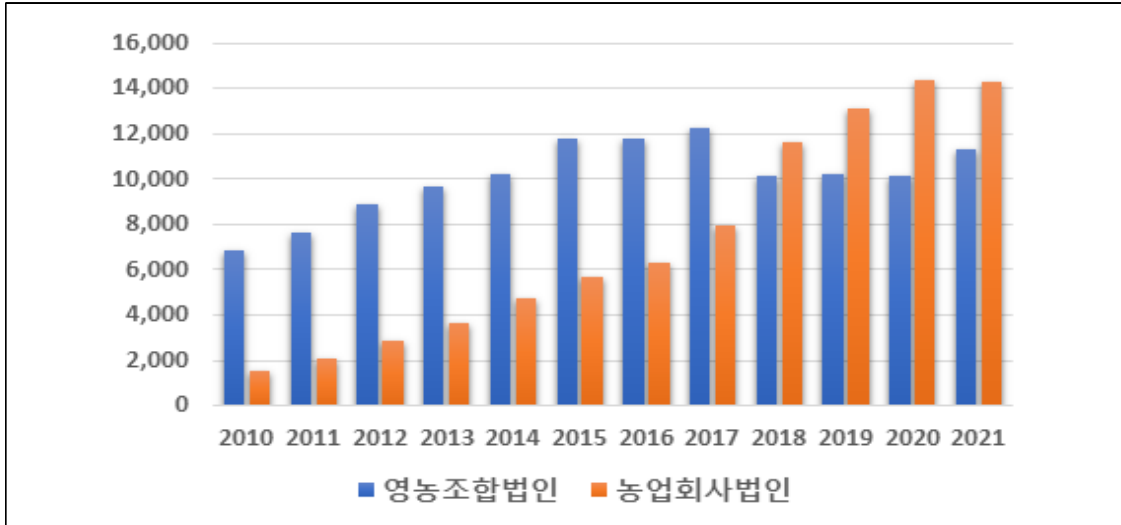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영농조합법인 | 10,023 | 10,792 | 11,599 | 12,979 | 12,768 | 13,363 | 10,163 | 10,230 | 10,136 | 11,337 |
| 농업회사법인 | 2,958 | 3,760 | 4,883 | 5,778 | 6,645 | 8,296 | 11,617 | 13,085 | 14,363 | 14,268 |
| 합계 | 12,981 | 14,552 | 16,482 | 18,757 | 19,413 | 21,659 | 21,780 | 23,315 | 24,499 | 25,605 |

주: 2017년까지 농업법인 수는 출자자 개별운영 및 실질 운영법인을 합산한 수이며, 2018년 이후는 실질 운영법인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16)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으로 통계청 통계기업등록부(SBR)에서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함
- 17) 생멸이 빈번하고 휴·폐업이 잦은 농업법인 특수성을 고려, 실질 운영 중인 농업법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활동법인으로 정의함
- 18) 실질 운영 중인 활동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활동법인 중 중복법인 4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5,605개로 설정함

[그림 II -2] 농업법인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종사자 규모

□ 농업법인 종사자는 193,745명으로 법인당 평균 종사자 수는 7.6명임

- 영농조합법인 종사자는 95,878명으로 법인당 8.5명이며, 농업회사법인 종사자는 97,867명으로 법인당 6.9명임(<표 II-25> 참조)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021년 기준 2~4인 규모가 농업법인 중 45.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1인 이하(27.8%), 5~9인(18.7%), 10~49인(7.6%), 50인 이상(0.7%) 순임(<표 II-26> 참조)
-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4인 및 50인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 수는 증가한 반면, 1인 이하와 10~49인 이하 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 수는 감소함
- 1인 이하 종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만 전년 대비 15.0% 증가함

<표 II -25> 농업법인 및 법인당 종사자 수(2021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 농업법인 수 |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 |
|--------|---------------|--------|-------|-----|
| | | | 법인당 | 평균 |
| 영농조합법인 | 11,337(44.3%) | 95,878 | 8.5 | 7.6 |
| 농업회사법인 | 14,268(55.7%) | 97,867 | 6.9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표 II -26> 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 1인 이하 | 8,339 (34.0) | 3,142 (31.0) | 5,197 (36.2) | 7,121 (27.8) | 3,613 (31.9) | 3,508 (24.6) |
| 2~4인 | 8,802 (35.9) | 3,484 (34.4) | 5,318 (37.0) | 11,582 (45.2) | 4,456 (39.3) | 7,126 (49.9) |
| 5~9인 | 5,163 (21.1) | 2,672 (26.4) | 2,491 (17.3) | 4,777 (18.7) | 2,487 (21.9) | 2,290 (16.0) |
| 10~49인 | 2,075 (8.5) | 811 (8.0) | 1,264 (8.8) | 1,954 (7.6) | 724 (6.4) | 1,230 (8.6) |
| 50인 이상 | 120 (0.5) | 27 (0.3) | 93 (0.6) | 171 (0.7) | 57 (0.5) | 114 (0.8) |
| 전체 | 24,499 (100.0) | 10,136 (100.0) | 14,363 (100.0) | 25,605 (100.0) | 11,337 (100.0) | 14,268 (100.0)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다) 사업 유형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작물재배업이 7,548개로 전체 중 29.5%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물유통업(28.7%), 농축산물가공업(21.7%), 기타사업(8.0%) 순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33.9%) 비중이 가장 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축산물유통업(32.31%) 비중이 가장 큼
 -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축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축산물유통업과 농업서비스업은 감소함
 - 축산업 기준 농업법인은 전년 대비 11.4% 증가, 영농조합법인은 22.7%, 농업회사법인은 1.5% 증가
 - 농축산물유통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반면, 농업법인 전체와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3.5%, 8.6% 감소함

<표 II -27>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 작물재배업 | 7,011 (28.6) | 3,304 (32.6) | 3,707 (25.8) | 7,548 (29.5) | 3,848 (33.9) | 3,700 (25.9) |
| 축산업 | 1,460 (6.0) | 678 (6.7) | 782 (5.4) | 1,626 (6.4) | 832 (7.3) | 794 (5.6) |
| 농축산물가공업 | 5,093 (20.8) | 1,830 (18.1) | 3,263 (22.7) | 5,552 (21.7) | 2,038 (18.0) | 3,514 (24.6) |
| 농축산물유통업 | 7,600 (31.0) | 2,560 (25.3) | 5,041 (35.1) | 7,337 (28.7) | 2,727 (24.1) | 4,609 (32.3) |
| 농업서비스업 | 505 (2.1) | 286 (2.8) | 219 (1.5) | 462 (1.8) | 265 (2.3) | 197 (1.4)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976 (4.0) | 613 (6.0) | 363 (2.5) | 1,043 (4.1) | 681 (6.0) | 362 (2.5) |
| 기타사업 | 1,853 (7.6) | 865 (8.5) | 988 (6.9) | 2,037 (8.0) | 944 (8.3) | 1,092 (7.7) |
| 전체 | 24,499 (100.0) | 10,136 (100.0) | 14,363 (100.0) | 25,605 (100.0) | 11,337 (100.0) | 14,268 (100.0)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라) 운영 기간

- 농업법인 운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4~7년 운영한 농업법인 비중이 3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8~12년(30.1%), 12년 이상(22.6%), 3년 이하(13.7%) 순임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2년 이상 운영한 비중이 38.3%로 가장 높으며, 8~12년 (36.8%), 4~7년(19.8%), 3년 이하(5.2%) 순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7년 운영한 비중이 44.5%로 가장 높으며, 8~12년 (24.8%), 3년 이하(20.5%), 12년 이상(10.1%) 순임

<표 II -28> 운영기간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 법인 |
| 3년 이하 | 6,690 (27.3) | 1,129 (11.1) | 5,562 (38.7) | 3,518 (13.7) | 591 (5.2) | 2,927 (20.5) |
| 4~7년 | 8,121 (33.1) | 2,625 (25.9) | 5,496 (38.3) | 8,592 (33.6) | 2,240 (19.8) | 6,352 (44.5) |
| 8~12년 | 6,079 (24.8) | 3,759 (37.1) | 2,319 (16.1) | 7,709 (30.1) | 4,167 (36.8) | 3,543 (24.8) |
| 12년 이상 | 3,609 (14.7) | 2,623 (25.9) | 986 (6.9) | 5,786 (22.6) | 4,339 (38.3) | 1,447 (10.1) |
| 전체 | 24,499 (100.0) | 10,136 (100.0) | 14,363 (100.0) | 25,605 (100.0) | 11,337 (100.0) | 14,268 (100.0)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마) 농업법인 출자자 수 및 출자금 규모

- 법인당 평균 출자자 수는 영농조합법인(14.7명)이 농업회사법인(6.4명)보다 많으나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3.4억원)이 영농조합법인(2.5억원)보다 많음
- 특히 비농업인의 출자자 수와 출자금액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비
 해 많음
- 2021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은 6.9%(1,965억원), 농업회
 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은 18.6%(9,001억원)
 - 농업회사법인은 총출자액(80억원 초과여부)에 따라 비농업인이 90% 이상을
 출자할 수 있음
 -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농업
 회사법인은 법인세 감면이 배제(「조특법」 시행규칙 제26조)

<표 II -29> 농업법인 출자자 수 및 출자금 규모(2021년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 법인수 | 출자자 수 | | | | | | 출자금 규모 | | | | | 법인 당 출자금 |
|--------|--------|---------|---------|--------|-------|------|---------|--------|--------|--------|-------|-------|----------|
| |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생산자단체 | 기타법인 | 법인당출자자수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생산자단체 | 기타법인 | |
| 전체 | 25,605 | 258,055 | 238,155 | 18,339 | 816 | 746 | 10.1 | 77,017 | 61,345 | 10,966 | 1,645 | 3,062 | 3.0 |
| 영농조합법인 | 11,337 | 166,738 | 161,059 | 5,100 | 387 | 193 | 14.7 | 28,639 | 26,169 | 1,965 | 429 | 75 | 2.5 |
| 농업회사법인 | 14,268 | 91,317 | 77,096 | 13,239 | 429 | 553 | 6.4 | 48,378 | 35,175 | 9,001 | 1,216 | 2,987 | 3.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3. 31., p. 6.

- (비농업인 출자자 수)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수를 보면, 2018년 2.9%에서 2021년 3.1%로 3%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수는 2018년 14.8%에서 2021년 14.5%로 14~15% 수준임

<표 II -30> 비농업인 출자자 수 추이

(단위: 명, %)

| 구분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 전체 | 비농업인 | 전체 | 비농업인 | 전체 | 비농업인 | 전체 | 비농업인 |
| 영농조합법인 | 162,712 | 4,726 (2.9) | 152,979 | 3,555 (2.3) | 149,042 | 3,496 (2.3) | 166,738 | 5,100 (3.1) |
| 농업회사법인 | 76,398 | 11,333 (14.8) | 83,641 | 12,751 (15.2) | 87,277 | 12,587 (14.4) | 91,317 | 13,239 (14.5)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을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출자금 형태별 추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금 형태별 현황은 <표 II-31>과 같음
- 2021년 기준 출자금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2조 8,639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조 8,378억원으로 나타남
- 현금출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27.6% 증가한 2조 5,503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4조 1,514억원

- 현물출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3,136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6,864억원

<표 II -31> 출자금 형태별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9년 | | | 2020년 | | | 2021년 | | |
|--------|------------------|------------------|-----------------|------------------|------------------|-----------------|------------------|------------------|------------------|
| | 합계 | 현금출자 | 현물출자 | 합계 | 현금출자 | 현물출자 | 합계 | 현금출자 | 현물출자 |
| 영농조합법인 | 22,596 (0.8) | 20,283 (△0.4) | 2,314 (12.8) | 22,290 (△1.4) | 19,994 (△1.4) | 2,296 (△0.8) | 28,639 (28.5) | 25,503 (27.6) | 3,136 (36.6) |
| 농업회사법인 | 46,260 (14.1) | 40,695 (12.3) | 5,564 (29.0) | 46,985 (1.6) | 41,333 (1.6) | 5,652 (1.6) | 48,378 (3.0) | 41,514 (0.4) | 6,864 (21.5) |
| 농업법인 | 68,856 (9.3) | 60,978 (7.7) | 7,878 (23.8) | 69,275 (0.6) | 61,328 (0.6) | 7,948 (0.9) | 77,017 (11.2) | 67,017 (9.3) | 10,000 (25.8)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출자자 유형별 출자금 추이)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전체 농업인 출자금은 6조 1,345억원으로 전체 중 79.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농업인 1조 996억원(14.2%), 기타법인 3,062억원(4.0%), 농업생산자단체 1,645억원(2.1%) 순임
 -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중 농업인 출자금이 2조 6,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하였으나, 출자금 비중은 2020년 95.5%에서 2021년 91.4%로 4.1%p 감소함
 - 비농업인의 출자금은 전년 대비 152.5% 증가한 1,965억원으로 출자금 비중도 2020년 3.5%에서 2021년 6.9%로 3.4%p 증가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중 농업인 출자금이 3조 5,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출자금 비중도 2020년 68.4%에서 2021년 72.7%로 4.3%p 증가함
 - 비농업인의 출자금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9,001억원으로 출자금 비중도 2020년 21.9%에서 2021년 18.6%로 3.3%p 감소함

<표 II -32> 출자자 유형별 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 | 농업인 | 비 농업인 | 농업 생산자 단체 | 기타 법인 | 농업인 | 비 농업인 | 농업 생산자 단체 | 기타 법인 | 농업인 | 비 농업인 | 농업 생산자 단체 | 기타 법인 |
| 영농 조합 법인 | 21,558 (95.4) | 833 (3.7) | 149 (0.7) | 57 (0.3) | 21,283 (95.5) | 778 (3.5) | 155 (0.7) | 74 (0.3) | 26,169 (91.4) | 1,965 (6.9) | 429 (1.5) | 75 (0.3) |
| 농업 회사 법인 | 31,401 (67.9) | 9,626 (20.8) | 618 (1.3) | 4,614 (10.0) | 32,132 (68.4) | 10,303 (21.9) | 567 (1.2) | 3,983 (8.5) | 35,175 (72.7) | 9,001 (18.6) | 1,216 (2.5) | 2,987 (6.2) |
| 농업 법인 | 52,959 (76.9) | 10,460 (15.2) | 767 (1.1) | 4,670 (6.8) | 53,415 (77.1) | 11,081 (16.0) | 722 (1.0) | 4,057 (5.9) | 61,345 (79.7) | 10,966 (14.2) | 1,645 (2.1) | 3,062 (4.0) |

주: () 안은 각 법인별 전체 대비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바) 경영실태 및 경영성과

- (재무 현황) 2021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1~5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 3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도 1억원 미만 법인 수(33.1%)가 가장 많음
 - 자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3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도 1억원 미만이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부채와 자본 모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규모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부채) 2019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은 10억원 이상(3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21년에는 1억원 미만 비중이 가장 많음
 - (자본)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1~5억원 미만(39.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21년에는 1억원 미만 비중이 가장 많음

<표 II -33>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에 따른 농업법인 수(2021년)

(단위: 개, %)

| 구분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합계 |
|---------|------------|-------------------|-------------------|-------------------|
| 자산 규모 | 1억원 미만 | 2,648 (23.4) | 2,894 (20.3) | 5,542 (21.6) |
| | 1억~5억원 미만 | 4,337 (38.3) | 4,079 (28.6) | 8,416 (32.9) |
| | 5억~10억원 미만 | 1,616 (14.3) | 2,009 (14.1) | 3,625 (14.2) |
| | 10억원 이상 | 2,737 (24.1) | 5,285 (37.0) | 8,022 (31.3) |
| 부채 규모 | 1억원 미만 | 5,735 (50.6) | 4,728 (33.1) | 10,462 (40.9) |
| | 1억~5억원 미만 | 2,762 (24.4) | 3,525 (24.7) | 6,287 (24.6) |
| | 5억~10억원 미만 | 1,102 (9.7) | 1,866 (13.1) | 2,968 (11.6) |
| | 10억원 이상 | 1,739 (15.3) | 4,149 (29.1) | 5,888 (23.0) |
| 자본 규모 | 1억원 미만 | 4,503 (39.7) | 6,090 (42.7) | 10,593 (41.4) |
| | 1억~5억원 미만 | 4,214 (37.2) | 4,667 (32.7) | 8,881 (34.7) |
| | 5억~10억원 미만 | 1,265 (11.2) | 1,547 (10.8) | 2,811 (11.0) |
| | 10억원 이상 | 1,356 (12.0) | 1,965 (13.8) | 3,321 (13.0) |
| 결산 법인 수 | | 11,337 (100.0) | 14,268 (100.0) | 25,605 (100.0) |

주: 1. () 안은 결산 법인 수 대비 비중

2. 결산 법인 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법인 수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 (법인당 경영실태) 2021년 기준 농업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16.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11.7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1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2021년 기준 농업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10.7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함
- 2021년 기준 농업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5.9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 참고로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이 4,503개(39.7%), 농업회사법인이 6,090개(42.7%)

<표 II -34> 연도별 농업법인 경영실태(법인당)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전체 |
|-------|----|--------|--------|-------|
| 2017년 | 자산 | 990 | 2,244 | 1,539 |
| | 부채 | 556 | 1,431 | 939 |
| | 자본 | 435 | 813 | 600 |
| 2018년 | 자산 | 1,183 | 2,039 | 1,638 |
| | 부채 | 703 | 1,357 | 1,051 |
| | 자본 | 481 | 682 | 588 |
| 2019년 | 자산 | 1,128 | 2,041 | 1,641 |
| | 부채 | 650 | 1,380 | 1,060 |
| | 자본 | 478 | 660 | 580 |
| 2020년 | 자산 | 1,181 | 1,944 | 1,628 |
| | 부채 | 713 | 1,304 | 1,060 |
| | 자본 | 467 | 640 | 568 |
| 2021년 | 자산 | 1,174 | 1,974 | 1,660 |
| | 부채 | 692 | 1,313 | 1,070 |
| | 자본 | 481 | 661 | 590 |

주: 결산 법인 수 기준이며, 이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법인 수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매출액)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의 <표 II-35>와 같음

- 2021년 농업법인의 매출액은 47조 7,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이 12조 4,338억원, 농업회사법인이 35조 2,726억원임
-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영농조합법인 1,238백만원, 농업회사법인 2,266백만원임
 - 참고로 매출액 1억원 미만 법인이 10,772개로 전체의 42.1%, 1억원~5억원 미만이 5,564개로 21.7%이며, 100억원 이상은 1,002개로 3.9% 수준임

<표 II -35> 농업법인별 매출액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억원, 백만원)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합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합계 |
| 법인수 | 10,136 | 14,363 | 24,499 | 11,337 | 14,268 | 25,605 |
| 매출액 | 118,963 | 310,199 | 429,162 | 124,338 | 352,726 | 477,064 |
| 법인당 매출액 | 1,175 | 2,150 | 1,746 | 1,238 | 2,266 | 1,863 |

주: 매출액은 억원, 법인당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3. 31., p. 8.

□ (농업법인 규모화) 농업법인들이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규모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II-36>과 같음

- 10억원 이상 매출액 법인 수 비중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영농조합법인 : 2017년 21.1%, 2018년 22.9%, 2019년 22.6%, 2020년 21.4%, 2021년 21.6%
 - 농업회사법인 : 2017년 37.0%, 2018년 35.7%, 2019년 35.3%, 2020년 32.5%, 2021년 32.2%
- 1억원 미만 매출액 법인 수 비중을 보면 두 법인 모두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됨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비중이 감소 후 2021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표 II -36>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영농조합법인 | 1억원 미만 | 4,408 (49.1) | 4,211 (43.5) | 4,144 (42.7) | 4,593 (45.3) | 5,245 (46.3) |
| | 1~5억원 미만 | 1,898 (21.2) | 2,395 (24.7) | 2,465 (25.4) | 2,460 (24.3) | 2,652 (23.4) |
| | 5~10억원 미만 | 774 (8.6) | 863 (8.9) | 912 (9.4) | 911 (9.0) | 988 (8.7) |
| | 10~20억원 미만 | 702 (7.8) | 826 (8.5) | 808 (8.3) | 754 (7.4) | 885 (7.8) |
| | 20~50억원 미만 | 697 (7.8) | 846 (8.7) | 877 (9.0) | 851 (8.4) | 903 (8.0) |
| | 50~100억원 미만 | 295 (3.3) | 340 (3.5) | 318 (3.3) | 343 (3.4) | 387 (3.4) |
| | 100억원 이상 | 195 (2.2) | 207 (2.1) | 190 (2.2) | 224 (2.2) | 277 (2.4) |
| | 전체 | 8,969 (100.0) | 9,688 (100.0) | 9,714 (100.0) | 10,136 (100.0) | 11,337 (100.0) |
| 농업회사법인 | 1억원 미만 | 2,408 (34.5) | 3,647 (33.2) | 4,173 (33.6) | 5,539 (38.6) | 5,528 (38.7) |
| | 1~5억원 미만 | 1,345 (19.3) | 2,289 (20.8) | 2,574 (20.7) | 2,842 (19.8) | 2,912 (20.4) |
| | 5~10억원 미만 | 649 (9.3) | 1,134 (10.3) | 1,299 (10.4) | 1,312 (9.1) | 1,235 (8.7) |
| | 10~20억원 미만 | 688 (9.8) | 1,099 (10.0) | 1,285 (10.3) | 1,392 (9.7) | 1,322 (9.3) |
| | 20~50억원 미만 | 976 (14.0) | 1,528 (13.9) | 1,662 (13.4) | 1,717 (12.0) | 1,684 (11.8) |
| | 50~100억원 미만 | 521 (7.5) | 772 (7.0) | 866 (7.0) | 903 (6.3) | 863 (6.0) |
| | 100억원 이상 | 398 (5.7) | 532 (4.8) | 574 (4.6) | 658 (4.6) | 725 (5.1) |
| | 전체 | 6,985 (100.0) | 11,001 (100.0) | 12,433 (100.0) | 14,363 (100.0) | 14,268 (100.0)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표 II -37>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추이

(단위: 개, %)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
| | 법인 수 | 전체 결산법인 내 비중 | 법인 수 | 전체 결산법인 내 비중 |
| 2017년 | 195 | 2.17 | 398 | 5.70 |
| 2018년 | 207 | 2.14 | 532 | 4.84 |
| 2019년 | 190 | 1.96 | 574 | 4.62 |
| 2020년 | 224 | 2.21 | 658 | 4.58 |
| 2021년 | 277 | 2.44 | 725 | 5.08 |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영업이익) 농업법인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9~2020년 사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임(<표 II-38> 참조)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적자 법인의 비중은 2017년 48.4%에서 2021년 43.4%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5억원 이상 법인 비중이 2017년 1.8%에서 2021년 1.9%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적자 법인의 비중도 46.4%로 크게 증가하고 5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은 2019년에 한 곳도 없고 2020년에 3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역시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적자 법인과 5억원 이상 법인 비중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2019년에 농업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된 요인은 전반적인 농업 환경 영향에 따른 것으로 따뜻한 겨울 기온과 수확기에 잦은 태풍, 신선식품 구매 감소 등으로 보고 있음¹⁹⁾

<표 II -38>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영농조합법인 | 적자 | 4,337 (48.4) | 3,924 (40.5) | 4,510 (46.4) | 4,297 (42.4) | 4,922 (43.4) |
| | 1억원 미만 | 3,690 (41.1) | 4,717 (48.7) | 4,203 (43.3) | 4,840 (47.8) | 5,230 (46.1) |

19) 홍범교 외(2021), p. 129.

<표 II -38>의 계속

(단위: 개,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영농조합법인 | 1~5억원 미만 | 782 (8.7) | 905 (9.3) | 1,001 (10.3) | 996 (9.8) | 974 (8.6) |
| | 5억원 이상 | 160 (1.8) | 142 (1.5) | 0 (0.0) | 3 (0.0) | 211 (1.9) |
| | 전체 | 8,969 (100.0) | 9,688 (100.0) | 9,714 (100.0) | 10,136 (100.0) | 11,337 (100.0) |
| 농업회사법인 | 적자 | 2,734 (39.1) | 3,948 (35.9) | 4,907 (39.5) | 5,215 (36.3) | 5,307 (37.2) |
| | 1억원 미만 | 2,695 (38.6) | 4,799 (43.6) | 5,056 (40.7) | 6,531 (45.5) | 6,325 (44.3) |
| | 1~5억원 미만 | 1,218 (17.4) | 1,866 (17.0) | 2,466 (19.8) | 2,608 (18.2) | 2,108 (14.8) |
| | 5억원 이상 | 338 (4.8) | 388 (3.5) | 4 (0.0) | 9 (0.1) | 528 (3.7) |
| | 전체 | 6,985 (100.0) | 11,001 (100.0) | 12,433 (100.0) | 14,363 (100.0) | 14,268 (100.0) |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사) 농지 현황

-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경작 면적, 임차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9>와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작 경지면적은 50,889ha이며, 이 중 논이 25,496ha, 밭이 25,393ha임
 - 이 중 소유농지는 논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17,712ha이며, 밭은 전년 대비 15.0% 감소한 17,157ha임
 - 임차농지는 논이 전년 대비 32.0% 감소한 7,784ha, 밭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8,236ha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작 경지면적은 24,120ha이며, 이 중 논이 10,546ha, 밭이 13,575ha임
 - 이 중 소유농지는 논이 전년 대비 45.8% 감소한 7,384ha이며, 밭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0,592ha임

- 임차농지는 논이 전년 대비 33.8% 감소한 3,162ha, 밭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2,983ha임

<표 II -39> 농업법인 농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ha, %)

| 구분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 전체 면적 | 소유농지 | 논 | 17,902 (2.0) | 7,488 (△45.6) |
| | | 밭 | 17,387 (△14.5) | 10,702 (16.6) |
| | | 과수 | 2,020 (81.0) | 868 (1.0) |
| | | 합계 | 35,289 (△6.8) | 18,190 (△20.8) |
| | 임차농지 | 논 | 7,785 (△32.1) | 3,163 (△34.3) |
| | | 밭 | 8,246 (△7.4) | 2,991 (△18.9) |
| | | 과수 | 1,199 (40.4) | 647 (143.2) |
| | | 합계 | 16,032 (△21.3) | 6,154 (△27.6) |
| 경작 면적 | 소유농지 | 논 | 17,712 (1.8) | 7,384 (△45.8) |
| | | 밭 | 17,157 (△15.0) | 10,592 (16.8) |
| | | 과수 | 2,019 (81.2) | 861 (5.5) |
| | | 합계 | 34,868 (△7.2) | 17,976 (△20.8) |
| | 임차농지 | 논 | 7,784 (△32.0) | 3,162 (△33.8) |
| | | 밭 | 8,236 (△7.3) | 2,983 (△18.2) |
| | | 과수 | 1,199 (40.4) | 647 (176.5) |
| | | 합계 | 16,020 (△21.2) | 6,145 (△27.1) |

<표 II -39>의 계속

(단위: ha, %)

| 구분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 미경작 면적 | 소유농지 | 논 | 190 (22.6) | 104 (△26.8) |
| | | 밭 | 230 (47.4) | 110 (△2.7) |
| | | 과수 | 1 (△50.0) | 6 (△86.0) |
| | | 합계 | 421 (35.8) | 215 (△16.0) |
| | 임차농지 | 논 | 1 (△96.4) | 1 (△97.2) |
| | | 밭 | 10 (△23.1) | 8 (△80.0) |
| | | 과수 | 0 | 0 |
| | | 합계 | 11 (△73.2) | 9 (△88.2) |
| 대상 법인 수 | | 4,502 (28.6) | 4,559 (10.2) |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2021.

아) 농업법인 주요 지표 요약

-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주요 지표로 출자자 수는 25만 8,055명이며 법인당 10.1명임²⁰⁾
 - 출자금은 7조 7,017억원(법인당 3억원), 종사자 수 19만 3,745명(법인당 7.6명)
 - 부채는 27조 3,900억원으로 법인당 10억 7,000만원이며, 자본은 15조 1,141억원으로 법인당 5억 9,000만원임
 - 매출액은 47조 7,064억원으로 법인당 18억 6,300만원, 영업이익은 1조 3,398억 원으로 법인당 5,200만원임
 - 당기순이익은 1조 3,603억원으로 법인당 5,300만원, 결손²¹⁾을 제외하면 2조 1,016억원으로 법인당 1억 2,000만원임

20) 농림축산식품부(2023), p. 24.

21) 결손 제외는 당기순이익에서 손실 부분을 제외한 수치임

<표 II -40> 농업법인 주요 지표 요약(2021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농업법인 | | |
|-------------|--------|------------|-------|
| | 법인 수 | 합계 | 법인당 |
| 출자자 수 | 25,605 | 258,055 | 10.1 |
| 출자금 | 25,605 | 7,701,686 | 300 |
| 종사자 수 | 25,605 | 193,745 | 7.6 |
| 자산 | 25,605 | 42,502,254 | 1,660 |
| 부채 | 25,605 | 27,390,029 | 1,070 |
| 자본 | 25,605 | 15,114,122 | 590 |
| 매출액 | 25,605 | 47,706,379 | 1,863 |
| 영업이익 | 25,605 | 1,339,765 | 52 |
| 당기순이익 | 25,605 | 1,360,255 | 53 |
| 결손 제외 당기순이익 | 17,505 | 2,101,569 | 120 |

주: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국세청 법인세 자료를 협조받아 작성한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p. 24.

2) 어업법인²²⁾

- 어업법인은 2020년 기준 5,423개 중 운영 법인이 2,985개, 미운영 법인이 2,438개로 45% 정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기준 어업법인 중 운영 중인 영어조합법인은 2,327개로 전체 중 7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은 658개로 전체 중 22.0%를 차지함
- 2016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 운영되고 있는 법인 비중이 47.9%에서 55.0%로 증가함

<표 II -41> 어업법인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 2016년 | | | 2020년 | | |
|--------|-------|-------|-------|-------|-------|-------|
| | 소계 | 운영 | 미운영 | 소계 | 운영 | 미운영 |
| 계 | 2,799 | 1,341 | 1,458 | 5,423 | 2,985 | 2,438 |
| 영어조합법인 | 2,669 | 1,246 | 1,423 | 4,463 | 2,327 | 2,136 |
| 어업회사법인 | 130 | 95 | 35 | 960 | 658 | 302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2) 어업법인 현황에 대한 자료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중 2020년 자료가 최신이며, 소득 및 자산 등에 대한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이 어려움

- 다음의 <표 II-42>의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영어조합법인 신규 등록 수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표 II-43> 참조)

<표 II -42> 연도별 어업경영체 법인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영어조합법인 | | 361 | 398 | 443 | 480 | 513 | 529 |
| 어업회사 법인 | 유한회사 | 5 | 9 | 12 | 16 | 20 | 21 |
| | 주식회사 | 64 | 82 | 99 | 119 | 141 | 152 |
| | 합명회사 | 3 | 3 | 3 | 3 | 3 | 3 |
| | 합계 | 72 | 94 | 114 | 138 | 164 | 176 |
| 전체(어업법인) | | 433 | 492 | 557 | 618 | 667 | 705 |

주: 전산화 처리가 안 된 법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업법인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II -43> 연도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수 현황(설립연도 기준)

(단위: 개)

| 구분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영어조합법인 | | 16 | 37 | 45 | 37 | 33 | 16 |
| 어업회사 법인 | 유한회사 | 2 | 4 | 3 | 4 | 4 | 1 |
| | 주식회사 | 16 | 18 | 17 | 20 | 22 | 11 |
| 합계 | | 34 | 59 | 65 | 61 | 59 | 28 |

주: 전산화 처리가 안 된 법인 자료가 있으며, 등록연도가 아닌 법인 설립연도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보면, 어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 등의 차이로 농업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임
 - 2021년 기준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지출액 29억원 수준은 평가 대상 3개 조세 지출 합계(609억원)의 약 4.8%에 불과

3. 주요 쟁점사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3개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됨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검토를 통해 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분석에 앞서 선행 연구와 국회 및 감사원 등 외부 평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함

가. 최근 선행 연구²³⁾

- 유찬희 외(2022)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고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와 범위의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함
 - (문제점) 농업경영체 법적 정의의 한계 및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범위의 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문제, 정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문제, 농업경영체 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등
 - (정책 제언) 농업경영체 등록을 임의등록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의무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²⁴⁾
 -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속하는 사람은 특정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
 - 의무등록 정보(기본정보)와 영농 관련 상세 정보(추가 정보) 등을 임의등록 형태로 제공
 - 단, 현행 방식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시 기본 및 추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특정 정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대안은 기존 농업경영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피하도록 함
 - 현행 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농업인 정의보다 범위가 넓고 경영체 특성을 담고 있지 못하므로 농업경영체를 농업인 중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갖추고

23) 홍범교 외(2021), pp. 59~67을 참조하여 최근 선행연구로 업데이트하여 살펴봄

24) 의무등록제로의 전환은 현재 방식보다 사업자 등록제에 가까운 형태이며, 정책 대상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식임. 정책 대상 농업인 및 경영체의 소득 정보에 기반하여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를 사업자 등록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 스스로 내린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직불금 수령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과 정책 대상이 아닌 자가 섞여 있는 불법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

〈표 II -44〉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문제점

| 주요 과제 | 구분 |
|---|---------------------------------------|
| 농업경영체 정의에서 의사결정의 독립성, 단일성 등 개념이 결여되어 실체가 법에 반영되지 않음 | 경영체·농업인 개념 |
|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농업인의 기준보다 범위가 작으나, 각종 보조사업에서 농업인 증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활용함으로써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정책 사업에서 제외됨 | 경영체·농업인 개념 |
| 각종 보조 및 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등록하더라도 제한 규정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늘어남 | 경영체·농업인 개념, 등록 기준 법제화 및 강화 |
| 불법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한 개인 간 임대차계약서 적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임차농은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비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거부 등 관련 규정 미흡 등의 문제가 빈발함 | 등록 기준 법제화 및 강화 |
| 농지를 소유하였지만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음 | 등록 기준 법제화 및 강화, 검증 체계(신규 및 기존 등록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a) 내부자료 발췌 및 정리; 유찬희 외(2022), p. 38. 재인용

- 이동식(2022)은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개인과의 역차별, 농업법인의 종류에 따른 차별의 적절성, 과도한 조세지출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이 가능하며 재정적·조세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 활동하지 않는 농업법인 중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신청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인 법인도 존재
 - 농지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 대토감면의 경우 대토 후 납세자가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전제로 하나, 농업

- 법인의 경우 영농 종사(사용) 요건이 없음
- 이에 농지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와 동일하게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유지한다면 법인이 농지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영농에 사용하는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법인세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법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보다 비농업인이 원칙적으로 90%까지 자본출자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이 식량 이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제상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
 - 2019년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6조가 신설되었으나, 동 규정은 법인의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이 50% 미만인 상황에서 작물재배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상 취급에서 조세중립성원칙을 위반, 즉 동일한 행위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과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됨
 - (식량작물재배업) 농업법인은 전액 법인세 면제를 하고, 개인은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하므로 10억원 이상의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이 유리
 - (식량 이외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6억원에 대해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의 범위에서 면제하지만 개인의 경우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를 하므로 개인과 법인의 유불리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²⁵⁾
 - 농업법인이 작물재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농가부업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전액 과세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도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음
 - 이에 농업법인이 실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25) 연간수입규모가 6억원인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 차이가 없지만, 6~10억원의 경우 개인은 전액 비과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일부 과세, 농업회사법인은 개인과 동일하게 전액 법인세가 면제됨

-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을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을 초래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함
- 2019년 기준 농업법인의 운영기간이 3년 이하가 7,241개, 4~7년 법인이 7,698개로 전체 농업법인 중 64%에 해당, 이는 5년 간 법인세 감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2022)는 향후 농업법인 제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통계 및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를 파악함
- (분석 내용) 농업법인의 출자자 제한 완화, 농지 소유 요건 완화의 제도 변화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 특성·유형별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2001~2019년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도변화 주요 시점을 전후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변동 및 출자자 구조 변동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 농업법인 유형별 현장 조사를 통해 운영의 제반 상황을 직접 확인, 운영 특성 및 실태 확인 등
-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효과 분석) 이중차분분석결과 2009~2010년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금 완화²⁶⁾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 비농업인 출자금이 75% 이상인 집단에서 비농업인 출자금 제한을 완화시켰을 경우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성한 것으로 확인
 - 비농업인 출자비중 75% 이상인 법인은 기준 시점 이후 매출액이 27.96억원 증가, 미만인 법인은 21.47억원 증가
 - 농업법인 출자금 한도 완화 정책이 농업회사법인의 성과를 대표하는 매출액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범위²⁷⁾ 축소) 영농조합법인 제도변화의 영향 집단은 작물재배업으로 설정하고, 비영향 집단은 이외의 모든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26)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2004년 50%에서 75%로, 2009년 75%에서 90%로 완화되었음
 27) 2014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기존 작물재배업에서 식량작물재배업으로 축소하고, 과세 면제 한도도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로 설정, 식량작물 재배를 제외한 여타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로 전환된 것이며,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한도가 부여된 것임

- 2014~2015년을 전후로 하여 작물재배 영농조합법인과 그 이외 사업 유형의 영농조합법인 두 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범위 조정이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홍범교 외(2021)에서는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일몰에 따라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등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 (분석 내용)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당성, 지원수단의 적절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여타 지원제도와 유사성 또는 중복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중복되는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통폐합 여부를 검토
 - 효과성 분석에서는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농어민 소득에 미친 효과와 간접적 효과 등에 대해 분석
 - 세제 지원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는 실제 혜택이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
 - 이러한 법인들은 농업이나 어업 생산뿐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까지 담당함으로써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판로를 확보해주고, 홍보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간접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
- (제도 타당성 분석 결과) 농·어업 산업여건상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방식도 적절하다고 판단
 - (지원방법 적절성) 농어촌 인구고령화와 공동화로 소규모 영세경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필요
 -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대형화를 유도하려면 조세지원 방식이 적절함
 - (지원수준 적절성)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을 장려하는 목적이 농업인 전반의 소득증대라면, 현행 감면조건은 법인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비슷한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음

- 그러나 농업 생산의 속성과 전 세계적으로 개인(가족)농의 비중이 법인 농업경영체보다 훨씬 높은 현상을 보아 추론한다면, 법인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을 지금보다 늘릴 필요는 없음
- (유사중복성) 「조특법」상 조세지출제도나 개별 세법상 세금감면제도 및 재정사업 중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평가
- (제도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지원제도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변화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분석
 - (소득증대효과) 소득분위별 소득지원효과를 추정한 결과, 농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55,000원 수준, 어가는 평균 65,000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재분배효과)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따라 소득증가 효과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봄
 - 농어가의 지니계수²⁸⁾를 보면, 상대소득격차가 약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비농어를 포함하는 전 가구 대상으로 동 제도의 소득분배구조 효과를 추정하면 지니계수가 0.0017%(0.460531 → 0.4605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제도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마상진 외(2020)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문제점) 농업법인이 활성화됨에 따라 설립 이후 운영하지 않는 부실 법인²⁹⁾이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증가하였으며, 비농업인의 농업 진출 및 농지 소유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³⁰⁾
 - (미운영 법인)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미운영 법인이 38.6%로 2016년 조사 대비 3.8%p 증가하였으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목적 외 사업) 일부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 매입 후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을

28) 농가와 어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37%(0.457645 → 0.457816), 0.036%(0.531175 → 0.531363)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6,877개소 중 44.8%가 실제 운영 중이고 미운영 법인이 38.6%,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6.3%,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0.3%로 나타남

30) 마상진 외(2020), pp. 44~50을 요약함

- 업는 등의 투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도 법률 위반행위사례 중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6.9%로 나타남
- (비농업인 농지소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가 90%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급증, 이에 농업계에서는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축소하고 비농업인이 참여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주장하기도 함
 - (보조금 부당 지원) 미운영(휴업, 폐업), 소재 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국가보조금이 부당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³¹⁾
 - (조세지원 형평성) 개인영농과 법인설립 간 조세지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커서 법인 설립의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직 형태 간 구분 모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 생산과 비생산 분야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조직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어려움
 - (법인 관리 체계 미흡)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업법인 사업운영 관리 및 농지취득자격 허위 신청·발급업무 부당 처리,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 관리 미흡, 비목적사업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 등을 지적함
- (개선방안)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농업 구조 정책 및 농촌 정책에 농업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질적·양적인 내실화를 실현할 필요
-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 및 범위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 등이 필요함
- (농가 및 지역 조직화 및 창업 활성화)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 단위 생산자 조직의 법인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법인을 활성화하는 정책 마련 필요
- 현행 농업법인 취지에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가족농 육성을 추가할 필요
 - 농업법인 설립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를 통해 농업 생산 외 가공 및 유통 활동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필요
- (농업생산법인³²⁾과 비생산법인의 차별화) 비농업인의 법인 참여, 농지 소유 자격 및 사업 내용 등의 확대로 조직 형태 간 차별성이 사라짐
- 농업인 참여규모,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 사육 규모, 농산물 생산 및 유통,

31)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6개 시도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6개소의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의 농업법인에 약 24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마상진 외(2020), pp. 47-48.)

32)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인에 의해 주도되고, 농업생산이 주가 되고 유통, 가공 및 서비스 활동은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함(마상진 외(2020), p. 173.)

- 가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농업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의 유형화가 필요
 - 또한, 농업생산 및 지역 연계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세제 감면혜택을 비생산법인과 차별화해야 함
 - 2018년 농업법인 중 생산 매출이 없는 법인이 60.7%를 차지할 정도이며, 법인당 경지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농지관리기구 도입을 통해 모든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업생산법인에게 농지이용이 집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지원체계 구축) 전문성 있는 농업법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 운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예: 프랑스 농업회의소, 독일 농업회의소와 협동조합협회, 일본 농업법인협회
 - (관리체계 강화) 현재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관리 감독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폐업관리 체계의 개선과 함께 농업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 (회계 투명성 강화) 농업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를 통해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확고히 하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토대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보완 필요
 - (조세제도 개선) 농업인 개인과 법인설립 시 받는 세제 감면 규모를 비교하면, 법인설립 시 받는 세제 혜택이 불리하고, 농업인 참여율이 낮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간 동등한 세제혜택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농업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개선도 필요
 - 현행 양도소득세 면세한도 1억원을 유지하되, 면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촉진하도록 함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생산법인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며, 농업비생산법인은 조세상 혜택보다 정책지원 사업이나 외부 투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시 이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임소영 외(2019)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규모화가 중요한 만큼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최소한 소득세 공제한도 수준과 동등하게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단, 농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혜택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함
- 이동규 외(2018)에서는 제도의 현황 파악과 쟁점 정리를 통해서 제도의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당성, 지원수단의 적절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및 여타 지원제도와 유사성 내지 중복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중복되는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통폐합 여부를 검토
 - 효과성 분석에는 동 특례조항들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검토
 -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재분배효과와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효과 등을 추가 검토
 - 미시모의실험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농가소득 수준별 소득증대효과를 비교하고 이를 전 가구로 확대하여 그 효과를 계층별로 비교분석함
 - 일반균형모형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로 인한 농업부문의 세금감면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며,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한 모형결과로 소득 분위별 혜택 분표를 파악
 - 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함
 - 농어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을 지금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비농업인의 농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차등적 세제혜택을 적용할 출자기준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나. 외부 평가

- 국회 및 정부, 감사원 등에서 그동안 제기한 동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국회 및 정부 발의안

- (의안번호 10456, 17844, 18000, 19059/위원회 의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4. 24.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
-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의안번호 17845, 19369, 20559/위원회 의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4. 24.

- 현재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의안번호 20450/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3. 3. 7.
- 2023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법인 조합원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연장을 제안
 - 이는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해당 제도를 5년 연장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863억원(연평균 537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비용 추계됨
- (의안번호 126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3.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이에 해당 발의안과 관련된 의안들을 통합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하기로 함(의안번호 13612)
- (의안번호 11695/원안가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7. 23.
-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
 -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안 제6조 제2항 제3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및 농지위원회 설치(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4조) 등
- (의안번호 11683/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7 .22.
-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
- (의안번호 10556/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 12. 1.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안 제133조)
- (의안번호 4058/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 12. 2.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감사원

- 2022년 7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법인 설립, 운영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함
 - 2016년 2월과 2021년 7월 시행한 감사결과와 2021년 4월 ‘LH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업법인 사업운영 관리 및 농지취득자격 허위 신청·발급업무 부당 처리,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 관리 미흡, 비목적사업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 등을 지적함
 - 동 감사에서는 전국에서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선정, 농지거래 현황, 매매차익 등 농지투기 실태를 파악, 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점검함
 -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 미비) 소재불명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융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재불명 농업법인이 285억여 원의 신용보증을 계속 지원받고, 국세청으로부터 36억여 원의 법인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농업법인의 농지처분명령 이행 관련 규정 미흡)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이 처분대상 농지를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처분하는 행위가 「농지법」 제10조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 (부동산업 영위 목적의 농업법인 설립제한 규정 미비) 농지매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농업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 부적정)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
- 2021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보고서 중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 관리 부적정’ 통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7월에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지 등 농업법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함³³⁾

- 법인 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목적에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전기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482개 농업법인을 추출한 후, 이들 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자료를 토대로 비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검토함
- 검사 결과 35개 농업법인의 매출은 부동산 매매 등 전액 비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2월 특정감사보고서 중 ‘영농조합법인 경영체 등록 및 관리 부적정’통보에 따르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이나 국세감면 등 정부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요청함³⁴⁾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조합원 명단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 농업인인 조합원이 5인 미만의 영농조합법인 명세에서의 178개 영농조합법인 중 15개 법인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56개 법인은 2014년 신고 법인세 기준 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농업인인 조합원 5인 이상의 명단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관리가 필요

3) 판례

□ 쟁점 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수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³⁵⁾

-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33) 감사원(2021), pp. 14~34.; 홍범교 외(2021), p. 68.

34) 2016년 3월 10일 감사원 감사결과이며, 홍범교 외(2021), p. 68.를 참조함

35)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2018. 1. 17.)

- 2023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법인세 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³⁶⁾
 -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2015,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천세무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비로 경정 고지함
 - 대법원은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였을 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판단
 - 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목적이지만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등록확인서 제출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본다면, 면제 신청 절차만을 위임한 모법(母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
 - 시행령은 신청의 절차만 위임받아 정하는 것일 뿐, 면제 요건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해야 함

다.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³⁷⁾

-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은 다음의 <표 II-45>와 같음
 - 어업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지방세,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익금 배분 단계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은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만 있음

3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37)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협동조합(2021), pp. 25~28. 내용을 요약함

〈표 II -45〉 어업법인 주요 감면 내용

| 구분 | 근거법령 | 내용 |
|---------|-------|--|
| 법인 | 법인세 | 조특법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어로어업 소득):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3,000만원 이하 어로어업소득 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 이하 |
| | 부가가치세 | 조특법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42종 어업용 기자재: 사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기자재 33종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 면제 어업용 석유류 : 면제 |
| | 취득세 | 지특세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어업법인): 취득세의 50% 감면 |
| | 재산세 | 지특세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어업법인): 재산세의 50% 감면 |
| | 등록면허세 | 지특세 제10조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면제(영어조합법인)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영어조합법인) 어업법인 설립등기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주주(조합원) | 양도소득세 | 조특법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배당소득 면제 |
| | 소득세 | |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협동조합(2021), p. 25.

-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 요건이 동일하나, 세제 지원은 차이가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며, 배당소득세는 소득배당분의 14% 종합과세함

<표 II -46>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 세제 지원

| 구분 | 농업회사법인 (「조특법」 제68조) | 어업회사법인 |
|-------|---|---|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비과세 • 기타작물재배업: 수입금액 50억원 한도 • 그 외 소득: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 간 50% 감면(「조특법」 제6조 제1항 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과세 |
| 배당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분: 전액 비과세 • 기타 작물재배업과 그 외 소득배당분: 14% 분리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배당분: 14% 종합과세 |

자료: 국회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3. 5. 22., p. 27.

-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간 수평적 과세형평 측면에서 보면 어로어업소득 및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감면 기준이 개인보다 낮은 수준임
 - 어로어업소득은 개인이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반면,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 3천만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
 - 농어가부업소득의 경우에도 개인은 연 3천만원(양식어업) 이하까지 비과세인 반면,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

<표 II -47> 어업활동 소득세 감면(사업자별)

| 구분 | 개인 |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
|---------|------------------------|----------------------|--------|
| 어로어업소득 | 연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조합원 1인당 연 3천만원 이하 감면 | 해당없음 |
| 농어가부업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양식어업 포함) |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 | 해당없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협동조합(2021), p. 28.

- 선행 연구에서도 농어업법인 간 세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임종선 외(2016)에서는 영어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별적 대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지는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곡물재배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과세를 유지한 반면,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도 하였음³⁸⁾
 -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을 비교하면 농가와 어가의 인구 비중과 비례함
 - 또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만을 확대할 경우 축산업 임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과세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정확한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
 - 2022년 평균 어가 소득(5,291만원)이 농가 평균소득(4,615만원)보다 높기도 함

□ 2019년 9월 24일, 김정호 의원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어업지원 2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대안 반영 폐기됨³⁹⁾

- 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어업 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함
 -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세제 조항을 신설하여 어로소득 전액, 양식소득 수입 50억원 한도, 그 외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 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지원
-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기본원칙 및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 및 개인소득과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FTA에 따른 어업 피해 규모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2018년 산업부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주요 8개국⁴⁰⁾과의 FTA 체결로 어업 생산액이 578억원 감소한 반면 농업생산액은 1조 1,7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8) 홍범교 외(2021), p. 70.

39)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2.

40)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및 어업의 생산액 감소 피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캐나다 | 호주 | 미국 | EU | 콜롬비아 | 합계 |
|-----|------|-----|------|------|--------|--------|--------|------|---------|
| 농업 | △77 | △47 | △237 | △320 | △1,102 | △8,150 | △1,776 | 3.1 | △11,706 |
| 수산업 | △104 | △54 | △21 | △10 | △0.45 | △295 | △94.2 | 1 | △578 |

자료: 기획재정부위원회(2019), p. 6.

- 2008년 이후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가구와 소득격차도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함
 -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6.6%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80.0%까지 개선됨
- 반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수준을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음
 - 영어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과 설립요건 및 주체,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에만 법인세 등 면제 소득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움
 - 어업 분야가 농업에 비해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지만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으며 이는 44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⁴¹⁾
 -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연간 630~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은 어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신설 발의안에 대해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개정안과 동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 및 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농업회사법인에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보기 어려움
 -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어업회사법인의 매출규모가 열악하고 어업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함⁴²⁾
 -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인 출자자의 비중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자 비중보다 높아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는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⁴³⁾

41) 1986년 최대생산량인 173만톤에 비해 46.5% 감소한 수치임

42) 2017년 기준 어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20.1억원, 농업회사법인 평균 매출액은 26.5억원이었음

43) 2017년 기준 어업회사법인 중 어업인 출자 비중은 86.0%, 어업인 출자금 비중은 90.3%이며 농업

-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었던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별도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설정함
 - 당시 조세소위에서는 어로어업에 대하여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수산물 종류에 따라 소득률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어로어업의 평균 소득률을 5%(기획재정부 추정)로 보고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함⁴⁴⁾

- 2023년 5월, 윤준병 의원도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 하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발의함
 -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비교하면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양식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양식어업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
 - 어로어업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 양식어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세제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
 - 양식업의 경우 평균소득이 높아 전체 소득 상위 30% 내외 수준으로 영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시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현재 어로어업과 양식업 각각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겸업하는 경우에도 8,000만원(어로어업 5,000만원+양식업 등 부업 3,000만원) 비과세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임
 - 또한 2014년부터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해 10억원 초과 수입금액을 과세 전환하여 농업소득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 범위를 축소할 바,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경우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⁴⁵⁾

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자 비중은 82.4%, 출자금 비중은 73.5%임

44)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부위원회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12호, 2019. 11. 29., pp. 53~54.

- 반면 이에 대해 지난 5월 2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평균적인 자기자본 규모는 2021년 기준 일반 농업이 5억 6,100만원, 양식업이 5억 6,5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농업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영세성이 아닌 생산성이 낮거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라 반박 의견을 제시함⁴⁶⁾
 - 소득증가로 인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한 것이 농어가 소득 차이에 큰 영향을 줌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여짐

라. 최근 개선 사항

- 2015년부터 농어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공익형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었고, 농지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표 II -48> 농어업법인 관리 체계화 관련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농업인, 어업인 확인서 추가 • 설립통지제¹⁾ 도입 • 실태조사 정례화, 장기 미운영 법인 후속 조치 근거 마련 |
| 201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후 장기 미운영 법인 등 비정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 청구 |
| 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정보 유효기간(3년) 설정 • 등록정보가 사실과 불일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

주: 1)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말함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73971>), 검색일자: 2023. 6. 7.

- 2023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함
 - 2022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는 182만 8천 경영체가 등록(<표 II-49> 참조)
 -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20. 9. 28.)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

46) 김우철, 「수산분야 세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2023. 5. 22.

- 농업법인의 경우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가공대상 품목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되며,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등 정보가 등록
- 2021년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비중은 59.1%, 농업인은 96.6%(농가인구 대비 79.6%)⁴⁷⁾(<표 II-50> 참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
- 이 외에도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하고 변경 유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됨

<표 II -49>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

(단위: 경영체)

| 구분 | 2021년 | | | 2022년 | | |
|----|-----------|-----------|--------|-----------|-----------|--------|
| | 합계 | 농업인 | 법인 | 합계 | 농업인 | 법인 |
| 전체 | 1,777,702 | 1,762,573 | 15,129 | 1,827,785 | 1,811,440 | 16,345 |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표 II -50>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

|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전체 |
|----------|---------------------|------------------|-----------|
| 농업경영체 등록 | 1,762,573 | 15,129 | 1,777,702 |
| 운영 농업법인 | - | 25,605 (59.1) | - |
| 농업인 | 1,823,982 (96.6) | - | - |
| 농가인구 | 2,215,498 (79.6) | - | - |

주: 1. () 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비중

2. 농업인 데이터는 농촌진흥청(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농가인구는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이용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47) 현재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 데이터가 2021년까지 수록되어 있어 2021년 기준으로 비교함

- 2022년 9월,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농지의 소유 및 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⁴⁸⁾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명 서류(예: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도 의무화
 - 또한 투기 우려 지역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
 -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
 -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하도록 함
 - (농지 관리 행정체계 확충) 기존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함
 -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4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보도자료, 2021. 7. 23.

사전신고제가 도입,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 활용 및 전용한 부동산업⁴⁹⁾에 대해 「농어업경영체법」에 명시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

49)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 및 시설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 및 시설의 분양은 불허함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1. 개요

가. 주요 분석목적과 분석내용

- 영농·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부담을 감면(면제)해주는 정책의 주된 정책목표는 조세감면(면제)을 통해 비농어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노동공급(즉, 고용) 확대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농어가에 조세감면을 통해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 일차적으로 조세감면액만큼 농어가의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고
 - 이차적으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세후수익률을 제고해줌으로써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공급 증대,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통해 농어업 생산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증대하여 농어가 소득을 제고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확장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 그럼으로써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음
 - 특히 가족경영 영농·영농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형 영농·영농방식 확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분업과 협업을 활성화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 타당성 분석을 통한 동 조세감면 정책의 도입·시행·유지의 필요성·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데에서 출발함

-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요인은 가구유형(예: 농어가 vs. 비농어가)의 차이 외에도 교육수준, 연령, 업종, 경력, 건강상태, 노력의 정도, 운 등 매우 다양함
 - 건강상태, 노력 정도, 운 등은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로서, 일반 서베이 자료에는 해당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다만 업종이나 가구유형별로 각 구성원들의 건강상태, 노력 수준, 운 등이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비록 해당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이들 요인에 의한 가구유형 간 평균 소득 격차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일치추정(consistent estimation)이 가능
 - 순수하게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는 여타 요인이 통제된 상태, 즉 가구유형 간 (평균)가구소득의 총격차 중에서 가구유형(또는 종사업종)의 차이에 의한 부분 이외의 여타 결정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격차 기여분을 차감한 부분임
-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는 평균가구소득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중 상당 부분은 가구를 구성하는 인적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격차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인적특성이라 함은, 가구규모(가구원 수), 가구 내 소득자 수(또는 취업인 수),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일컬음
 - 인적특성 차이에 의해 야기된 소득 차이의 기여분은 가구유형(종사업종)의 차이와 관계없이 당해 가구 특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일 가구유형 내에서도 인적특성에 따라 평균소득수준이 달라지게 하는 요소
 - 따라서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의 존재 여부는 전체 가구소득 차이에서 이들 요인 차이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격차 분을 제거한 이후에도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순수하게 가구유형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즉, 불평등)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순수하게 가구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타 인적특성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차이분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가구소득의 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도를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인분해(factor decomposition),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요인분해 방법은 세부 요인별로 기여도를 분해(decomposition)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공식을 수학적으로 분해하는 경우 등에 많이 사용
 -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 상호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선형모형의 경우 각 설명변수의 계수(coefficient)는 여타 설명변수의 값을 통제(control)한 상태에서 해당 설명변수의 값 1단위당 피설명변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를 지니는지를 나타냄

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타 소득결정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기여분을 통제(즉,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분을 분리 추정해야 함
 - 여러 가지 분석방법 중 본 절에서는 회귀 분석 방법을 채택·사용함
 - 회귀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 분석을 기준으로 OLS(단순최소제곱법) 방법을 채택
- 회귀 분석을 이용하면 여타 조건(변수)에 의한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농어가와 비농어가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의 계수는 가구 유형 차이에 따른 가구소득 격차의 부호와 크기를 나타내므로 동 계수 추정치 값의 부호와 크기를 기준으로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의 방향과 크기를 유추할 수 있음
 -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한 각 계수의 추정치는 다른 변수 값의 변동 없이 동 설명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피설명변수 값의 변화분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

- 그러므로 동 정책의 시행 및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미시 서베이 자료(본 절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추정결과에서 농어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음

- 농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가구와 비농어업 종사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재정패널자료 1~14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함
 - 재정패널자료는 패널자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연도의 가구유형(종사업종, 즉 농어업과 비농어업 부문)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고자 각 연도별로 횡단면분석을 시행
 - 다만 재정패널자료에는 농업, 임업, 어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농림어업의 형태로 하나로 분류되어 있음
 - 따라서 농어업만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임업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농림어업을 농어업으로 지칭하도록 함
 - 재정패널자료 외에도 가계동향조사자료(비농어가 대상), 농가경제조사자료(농가 대상), 어가경제조사자료(어가 대상)의 세 가지 서베이 자료를 통합(merge)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상기 자료 사이의 정보 제공 범위가 상이하야 자료 통합시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 사용하지 않음
 - 농가경제조사자료와 어가경제조사자료는 연간 단위의 소득정보를 제공하지만, 가계동향조사자료는 가구당 1년 중 최대 6개월치의 월간소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의 비교가 곤란
 - 월간 또는 분기 가구소득은 대표적으로 계절성(seasonality)이라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특성을 지니며 동 편의로 인해 월간 소득 자료로부터 연간소득에 대한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es)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위의 편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에 12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비농어가의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가구소득 결정식을 회귀 분석하여 추정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방법론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자료 선택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본 절에서는 자료의 일관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재정패널자료를 채택·사용

2. 정부개입의 정당성

가. 개요

- 위의 제1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통한 농어가(보다 정확히는 법인 회원인 농어가) 소득지원 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 소득 격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함
 - 즉, 가구유형별로 (평균)가구소득의 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농어가에 대해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개입의 필요성·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가늠자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본 절은 농어가·비농어가의 (평균)가구소득 격차를 비교·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함
 - ‘나’항에서는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무조건부 평균)가구소득에 대한 시계열 비교를 시행
 - ‘다’항에서는 인적특성을 비롯하여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각종 소득결정요인에 대해 가구유형별·소득계층별·가구주 연령대별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평균값 및 분포를 상호 비교
 - ‘라’항에서는 가구소득결정함수를 추정·분석하였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농어가·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요약하여 소개
 - ‘마’항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결정함수를 추정하고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
 - ‘바’항에서는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와, 상기 조세지원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

나.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소득: 단순비교

- 재정패널자료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업종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구분함
 - 본질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즉, 농림어가), 무직(은퇴, 실업, 전업주부, 학생·미취학 등 무직가구), 여타 업종(즉, 비농림어가)의 3가지 유형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
 - 재정패널자료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 가운데 임업의 비중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음
 - 논의의 편의상, 아래에서는 농·림·어업 종사가구를 편의상 농어가로 지칭하기로 함

- [그림 III-1]과 <표 III-1>은 각 가구유형별로 가구평균(총)소득의 변화추이를 보여줌
 - 일부 연도에서는 가구유형 간에 평균소득액의 대소관계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농어가 > 농어가 > 무직가구)의 순서로 총소득 수준이 높음
 - 2012년과 2019년 농어가의 가구(평균)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이는 일시적·예외적인 사례인 것으로 추정

-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전 가구 평균소득보다 높은 반면, 농어가는 전 가구 평균보다 조금 낮음
 -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현저하게 낮고, 따라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소득격차가 상당히 큼
 - 2020년 현재 비농어가의 평균소득은 5,743만원으로 전 가구의 평균소득(4,990만원)보다 약 15% 정도 많으며,
 - 농어가의 평균소득은 4,940만원으로 전 가구 평균소득과 거의 비슷
 -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2,335만원으로 전 가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침

- [그림 III-1]과 <표 III-1>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나타나는 외형상 가구소득의 (무조건부)단순평균소득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가구유형 차이(보다 정확하게는 종사업종의 차이)의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 외에도, 여타의 소득결정요인(income determinants)의 차이로 인해 야기된 소득격차도 함께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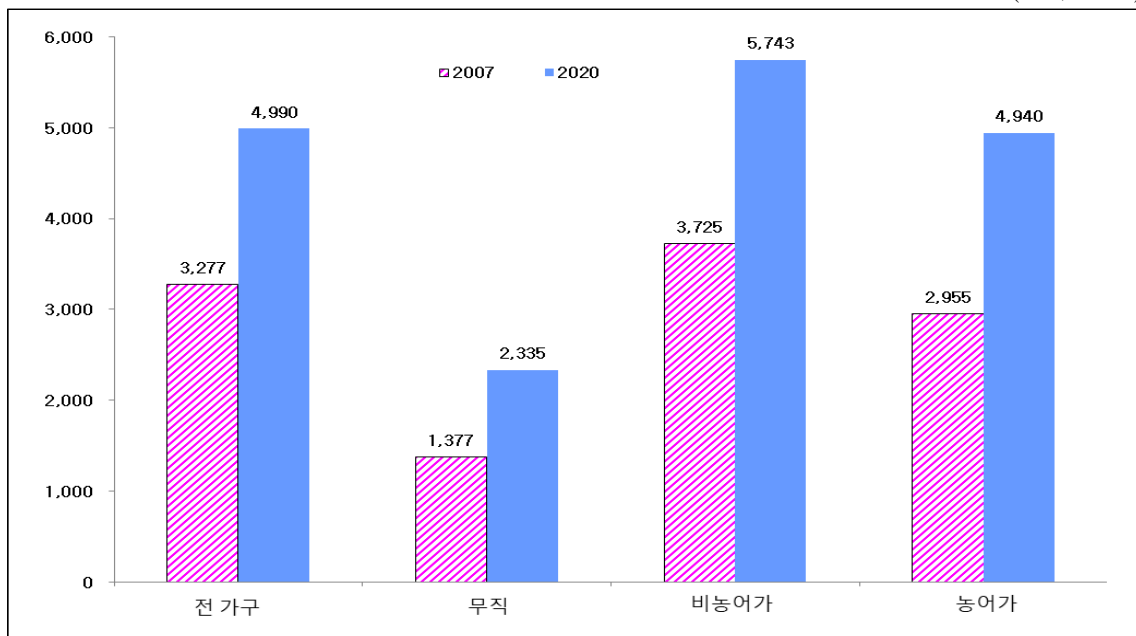
- 예를 들어 가구주의 연령, 학력(교육수준), 성별, 가구원 수(가구규모) 등과 같은 변수들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농어가의 평균소득이 비농어가보다 큰 경우(예: 2012년, 2019년의 상황)에도 다른 소득결정요인에 의한 가구소득의 격차 기여분을 제거하였을 때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가 사라지거나 또는 소득순위가 역전된다면 가구유형 간 (평균)소득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순수하게 가구유형(즉, 종사업종)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평균소득 차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인들에 의한 소득결정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즉,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기여도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래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학력(교육수준), 성별, 가구원 수(가구규모) 등의 인적특성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 항에서는 이들 인적특성들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각각에 의한 가구소득 기여도를 추정·분석함

[그림 Ⅲ-1] 가구유형별 가구총소득 평균(재정패널자료)

(단위: 만원)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1> 가구유형별 총소득 추이 비교

(단위: 만원, %)

| 구분 | 총소득 | | | | 비농림어업 대비 상대비 | |
|-------|---------|---------|---------|---------|--------------|-------|
| | 전 가구 | 무직가구 등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무직 | 농림어업 |
| 2007년 | 3,276.9 | 1,376.6 | 3,724.9 | 2,954.9 | 37.0 | 79.3 |
| 2008년 | 3,387.0 | 1,497.9 | 3,833.6 | 3,156.4 | 39.1 | 82.3 |
| 2009년 | 3,276.5 | 1,101.1 | 3,747.7 | 2,963.1 | 29.4 | 79.1 |
| 2010년 | 3,881.2 | 1,882.0 | 4,323.8 | 3,101.7 | 43.5 | 71.7 |
| 2011년 | 3,867.2 | 1,715.8 | 4,392.3 | 4,108.1 | 39.1 | 93.5 |
| 2012년 | 3,958.1 | 1,870.3 | 4,518.6 | 4,980.6 | 41.4 | 110.2 |
| 2013년 | 4,037.0 | 1,859.2 | 4,637.4 | 2,889.1 | 40.1 | 62.3 |
| 2014년 | 4,281.4 | 2,107.3 | 4,902.9 | 3,117.3 | 43.0 | 63.6 |
| 2015년 | 4,416.9 | 2,062.1 | 5,068.2 | 3,200.7 | 40.7 | 63.2 |
| 2016년 | 4,654.4 | 2,234.8 | 5,328.1 | 3,322.7 | 41.9 | 62.4 |
| 2017년 | 4,726.1 | 2,235.8 | 5,436.7 | 3,355.8 | 41.1 | 61.7 |
| 2018년 | 5,077.5 | 2,322.2 | 5,879.7 | 5,101.9 | 39.5 | 86.8 |
| 2019년 | 5,147.1 | 2,422.4 | 5,948.4 | 5,969.6 | 40.7 | 100.4 |
| 2020년 | 4,990.2 | 2,335.0 | 5,743.4 | 4,940.4 | 40.7 | 86.0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다.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특성 비교

- 재정패널자료에 의하면 2007~2020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007년 2.91명에서 2020년 2.35명으로 크게 감소([그림 III-2] 참조)
 - 같은 기간 농어가(보다 정확히는 농림어업 종사 가구)는 가구당 가구원 수가 평균 3.15명에서 2.84명으로 감소
 -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3.08명에서 2.51명으로 감소
 - 무직가구 또한 2.17명에서 1.77명으로 감소

- 가구유형별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현재 농어가가 2.84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비농어가(2.51명)와 무직가구(1.77명)의 순서
 - 통상적으로는 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비농어가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정패널자료에 따르면 농어가의 가구원 수가 비농어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가구소득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원 수 측면에서 볼 때 비농어가보다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평균적으로 더 클 개연성이 있음
 - 위의 ‘가’항에서는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을 단순 비교하여, 비농어가의 평균소득이 농어가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았는데,
 - 가구유형 간 평균 가구원 수의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격차 기여분을 제외한다면, 두 가구유형 사이의 평균소득 격차는 단순비교 시의 차이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자가생산·자가소비형 가구도 흔히 농어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가구를 무직가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제외
 - 본 절에서는 농어업 부문에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즉 상업생산 등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활동을 하는 관련 법인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피고용 가구 등을 농어가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통상적 의미에서 말하는 농어가의 형태와는 포괄범위가 다름에 유의할 필요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생산·자가소비형 농업 종사가구는 시장형 영농·영어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은퇴 노인가구들로서 노인부부 가구 또는 독거노인가구의 형태를 가진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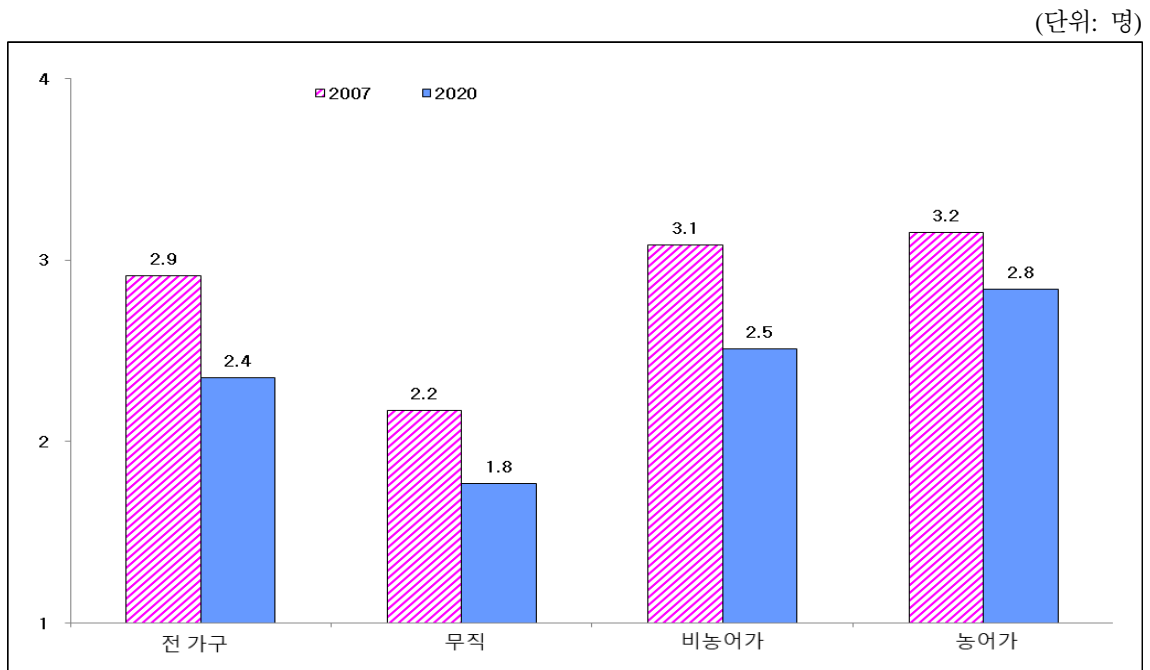
- 그러므로 은퇴 노인 가구를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영농·영어활동에 종사하는 여타의 농어가는 연령적으로도 젊고 경제활동참가인원(예를 들면 취업인)과 부양가족이 많은 것으로 추정

- 농어가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 농어가로 분류하고 있는 가구범위와 차이가 있음

- 선행연구에서도 농어촌 지역 거주가구를 농어가로 인식
-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사업종을 기준으로 농어업 부문에서 경제활동(보다 정확히는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를 농어가로 구분하기 때문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가구 구분과는 다름
- 본 연구는 거주지역 기준 대신 재정패널자료의 종사업종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구분
-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종사업종이 농어업이 아닌 경우에는 비농어가 또는 무직가구로 구분
 - 거주지역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직가구의 경우 농어촌 지역 무직가구와 비농어촌 지역 무직가구로 구분 불가능
 - 만약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연구 등에서의와 같이 종사업종 대신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농어가 vs. 비농어가)을 할 수 있지만, 거주지역 정보를 활용하기 쉽지 않음

□ 기능적으로는 거주지역 기준보다는 종사업종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2] 가구유형별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2> 가구유형별 평균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명)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2.91 | 2.17 | 3.08 | 3.15 |
| 2008년 | 2.90 | 2.09 | 3.08 | 3.43 |
| 2009년 | 2.92 | 2.12 | 3.08 | 3.41 |
| 2010년 | 2.89 | 2.12 | 3.06 | 2.93 |
| 2011년 | 2.72 | 1.97 | 2.91 | 3.45 |
| 2012년 | 2.68 | 1.93 | 2.89 | 2.89 |
| 2013년 | 2.64 | 1.88 | 2.84 | 2.82 |
| 2014년 | 2.59 | 1.88 | 2.80 | 2.76 |
| 2015년 | 2.56 | 1.84 | 2.75 | 2.75 |
| 2016년 | 2.52 | 1.81 | 2.72 | 2.81 |
| 2017년 | 2.49 | 1.80 | 2.68 | 2.67 |
| 2018년 | 2.45 | 1.76 | 2.65 | 2.79 |
| 2019년 | 2.49 | 1.77 | 2.69 | 2.99 |
| 2020년 | 2.35 | 1.77 | 2.51 | 2.84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 <표 III-3>~<표 III-5>와 [그림 III-3]~[그림 III-5]는 가구주의 평균연령 변화추이를 전 가구 및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함

○ 2007~2020년 재정패널자료에서 가구주의 평균 연령(전 가구 기준)이 48.1세에서 54.2세로 6.1세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나타내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7~2020년 동안 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44.8세에서 49.3세로 4.5세 상승하였으며, 농어가의 경우에는 52.0세에서 62.5세로 크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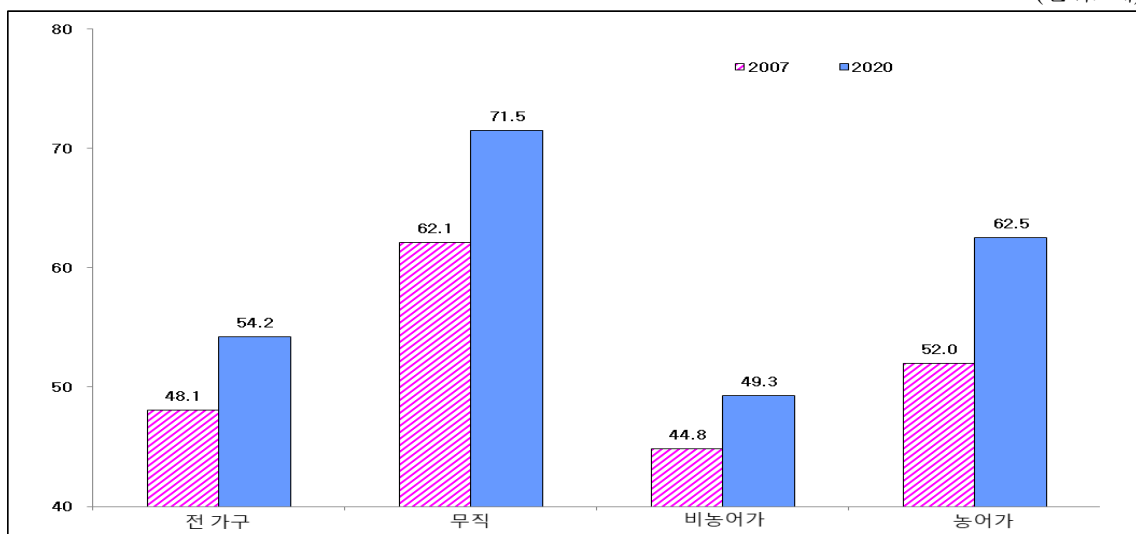
○ 특히 영농·영어활동을 영위하는 가구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무직가구는 62.1세에서 71.5세로 크게 상승(9.4세 상승)

- 주어진 정보만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고령가구 가운데 은퇴를 선택하는 대신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은퇴연령대가 더 높은 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무직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함

- 2020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비중은 비농어가의 경우 15.0%로 가장 작고, 무직가구에서는 79.5%로, 무직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농어가의 경우에는 45.6%로 대략 2가구 중 1가구꼴로 노인가구인 것으로 추정함
- 농어가의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자와 관련한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은퇴 연령대 이후의 연령대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은퇴가구의 대부분은 비농어가로 잔류하지 못하고 무직가구로 전환하여 귀속되는 가구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은퇴기 이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
- 한편 농어업의 경우 특별히 정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6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도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가의 경우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더 이상 경제활동(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초)고령자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노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함([그림 III-3]과 <표 III-3> 참조)

[그림 III-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재정패널자료)

(단위: 세)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연령 추이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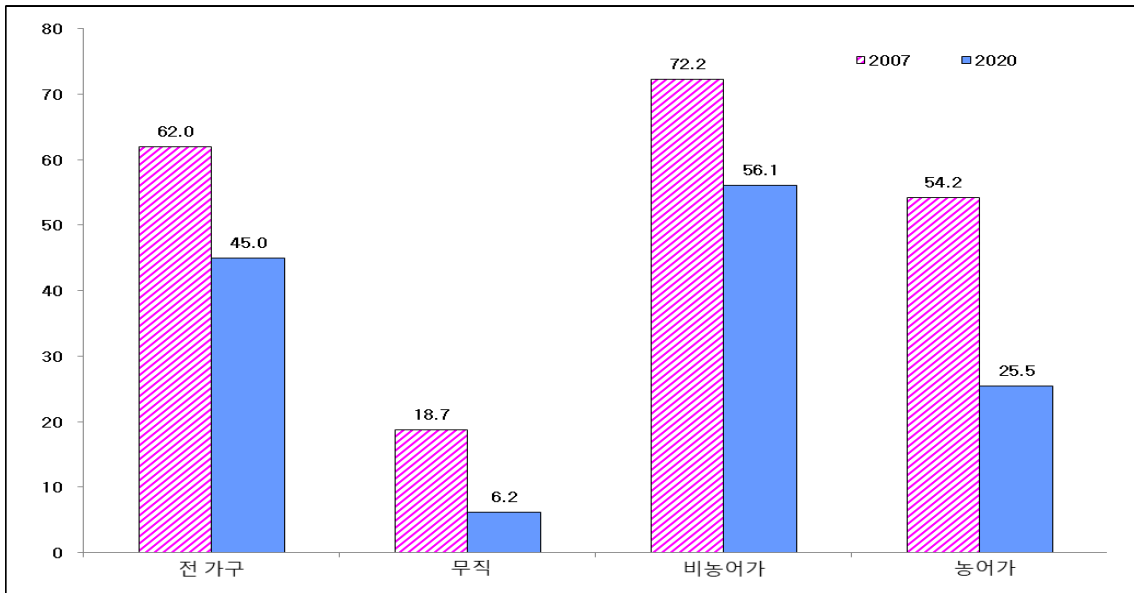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48.1 | 62.1 | 44.8 | 52.0 |
| 2008년 | 48.6 | 63.3 | 45.2 | 46.1 |
| 2009년 | 49.1 | 65.7 | 45.5 | 53.3 |
| 2010년 | 49.5 | 66.8 | 45.7 | 55.6 |
| 2011년 | 50.2 | 67.1 | 46.0 | 51.0 |
| 2012년 | 52.1 | 69.2 | 47.4 | 58.3 |
| 2013년 | 52.5 | 70.1 | 47.7 | 59.8 |
| 2014년 | 53.0 | 70.5 | 48.0 | 59.1 |
| 2015년 | 53.2 | 71.4 | 48.2 | 62.1 |
| 2016년 | 53.3 | 70.9 | 48.4 | 58.3 |
| 2017년 | 53.7 | 71.1 | 48.7 | 59.0 |
| 2018년 | 54.1 | 71.9 | 48.9 | 57.1 |
| 2019년 | 56.5 | 73.1 | 51.5 | 60.1 |
| 2020년 | 54.2 | 71.5 | 49.3 | 62.5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 한편 [그림 III-4]와 <표 III-4>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영위하는 연령대인 30~54세 연령대 가구의 비율은 2007년 62.0%에서 2020년 45.0%로 감소함
 -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로 경제활동가능연령인구로 유입되는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구)가 감소하는 반면 은퇴기 및 은퇴기 이후 연령대로 진입하는 연령대의 인구(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그림 III-5]와 <표 III-5>에서 보듯이 고령화 현상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는데,
 - 그중에서도 특히 무직가구와 농어가에서 고령화 현상이 크게 두드러짐
 - 가구유형별로는 30~54세 가구비율이 비농어가 56.1%, 농어가 25.5%, 무직가구 6.2%로 추정

[그림 III-4]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30~54세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단위: %)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4> 가구유형별 30~54세 가구 비율 비교(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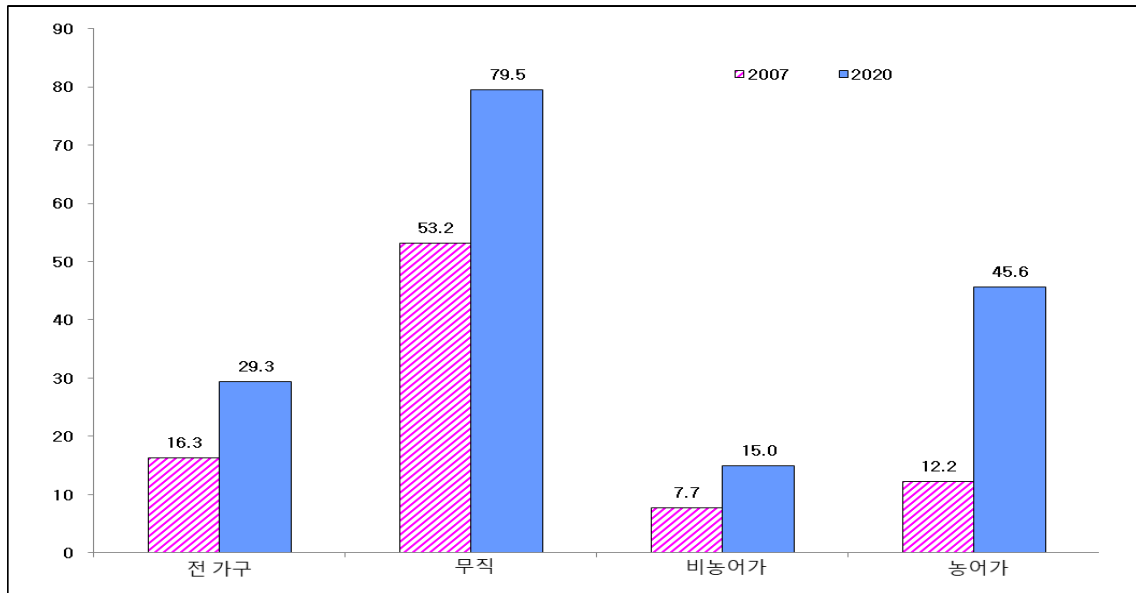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62.0 | 18.7 | 72.2 | 54.2 |
| 2008년 | 62.5 | 17.0 | 73.1 | 77.5 |
| 2009년 | 62.9 | 16.2 | 73.0 | 60.3 |
| 2010년 | 62.8 | 15.6 | 73.3 | 40.0 |
| 2011년 | 60.3 | 15.7 | 71.2 | 63.0 |
| 2012년 | 56.0 | 10.6 | 68.6 | 38.4 |
| 2013년 | 54.8 | 8.2 | 67.6 | 38.3 |
| 2014년 | 53.5 | 8.1 | 66.4 | 39.6 |
| 2015년 | 52.7 | 7.6 | 65.2 | 29.4 |
| 2016년 | 52.3 | 8.8 | 64.3 | 44.0 |
| 2017년 | 50.5 | 8.9 | 62.4 | 37.7 |
| 2018년 | 48.5 | 7.3 | 60.6 | 35.9 |
| 2019년 | 51.7 | 6.7 | 65.2 | 33.0 |
| 2020년 | 45.0 | 6.2 | 56.1 | 25.5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그림 III-5]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단위: %)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5> 가구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 비교
(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16.3 | 53.2 | 7.7 | 12.2 |
| 2008년 | 16.9 | 57.1 | 7.5 | 8.0 |
| 2009년 | 17.4 | 61.2 | 8.0 | 10.5 |
| 2010년 | 18.1 | 64.3 | 7.9 | 28.4 |
| 2011년 | 19.6 | 66.4 | 8.2 | 12.5 |
| 2012년 | 24.4 | 71.8 | 11.4 | 32.3 |
| 2013년 | 25.1 | 74.4 | 11.7 | 26.7 |
| 2014년 | 26.3 | 76.8 | 12.0 | 35.8 |
| 2015년 | 26.5 | 79.8 | 11.8 | 40.2 |
| 2016년 | 26.4 | 76.8 | 12.4 | 34.3 |
| 2017년 | 27.1 | 77.1 | 12.9 | 40.7 |
| 2018년 | 27.9 | 79.7 | 12.8 | 33.4 |
| 2019년 | 30.0 | 81.6 | 14.6 | 38.9 |
| 2020년 | 29.3 | 79.5 | 15.0 | 45.6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 <표 III-6>은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10개의 분위로 가구를 분류하였을 때, 각 분위별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표 III-6>의 마지막 열 기준)를 보면,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가구 비중이 상승하는 분포 특성을 보임
 - 즉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득분위별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노인 가구(65세 이상)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노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고소득분위로 이행할수록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생애주기상 가장 평균소득이 높은 연령대인 40대~50대의 중년가구의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분포 패턴을 보임
 - 65세 이상 가구비율은 1~2분위가 각각 74.2%와 67.5%로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만, 고소득분위로 이행할수록 급속히 감소하여 10분위에서는 동 비율이 6.3%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여 전체 평균(29.3%)에 크게 미달하는 분포 패턴을 보임
 - 한편 생애주기상 가장 평균소득이 높은 연령대인 40대 초반 연령대([그림 III-6] 참조)의 경우 1~2분위에서는 가구 비중이 각각 2.9%와 2.1%로 매우 낮지만, 10분위에서는 16.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빠르게 상승
 - 두 번째로 평균소득이 높은 40대 후반 연령대([그림 III-6] 참조)의 경우 1~2분위의 가구 비중은 각각 2.2%와 5.8%로 매우 낮지만, 10분위에서는 20.3%에 이르러 전체 평균(11.3%)의 약 2배 정도로 비중이 높음

- 이와 같은 패턴분포를 놓고 볼 때, 생애주기상 연령대별 평균소득 수준의 차이가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III-6> 가구소득 10분위별 5세 연령그룹의 비중 분포(재정패널자료 2020년)

(단위: %)

|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24 | 1.5 | 2.7 | 3.7 | 3.4 | 2.6 | 0.6 | 0.4 | 0.1 | 0.1 | 0.0 | 1.5 |
| 25~29 | 1.6 | 2.1 | 7.7 | 14.9 | 10.7 | 7.2 | 3.9 | 2.0 | 2.1 | 1.6 | 5.4 |
| 30~34 | 0.7 | 1.2 | 2.9 | 4.9 | 10.9 | 8.2 | 6.4 | 10.5 | 5.5 | 5.6 | 5.7 |
| 35~39 | 2.7 | 2.3 | 4.6 | 5.9 | 8.6 | 14.0 | 13.7 | 15.2 | 13.4 | 10.1 | 9.1 |
| 40~44 | 2.9 | 2.1 | 5.0 | 7.7 | 9.7 | 12.6 | 14.2 | 17.5 | 15.2 | 16.6 | 10.3 |

<표 III-6>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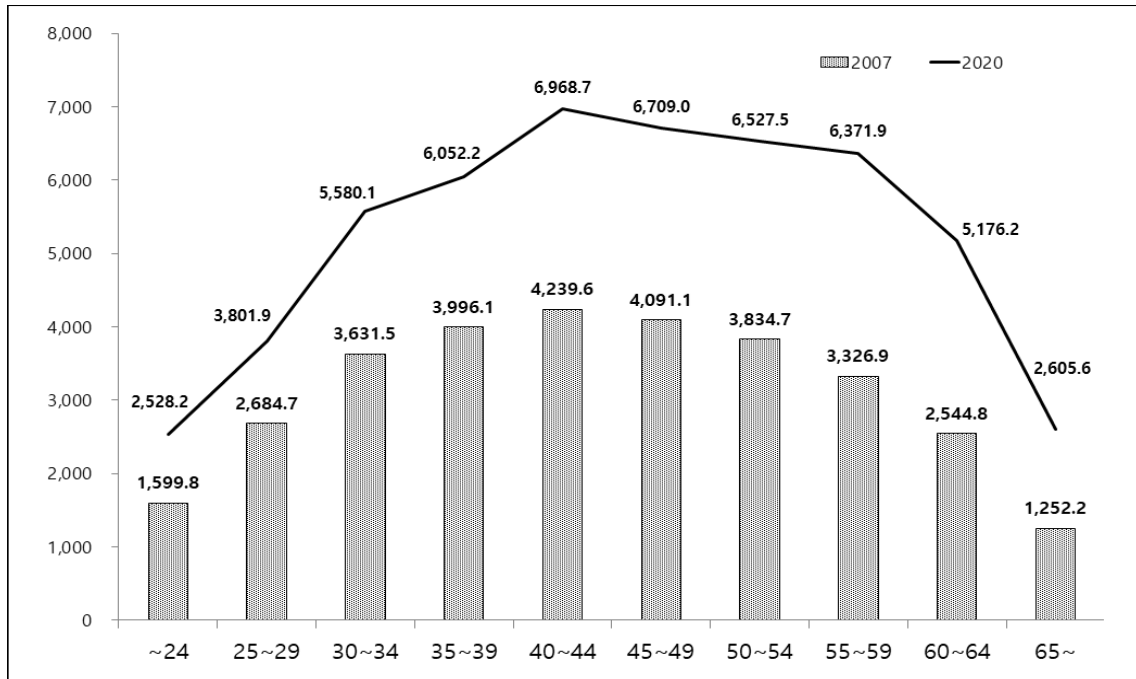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45~49 | 2.2 | 5.8 | 6.7 | 7.7 | 8.9 | 9.2 | 16.0 | 18.8 | 17.7 | 20.3 | 11.3 |
| 50~54 | 2.9 | 2.8 | 7.2 | 7.4 | 7.1 | 8.4 | 10.4 | 10.3 | 13.6 | 15.3 | 8.6 |
| 55~59 | 4.3 | 5.0 | 8.6 | 8.4 | 5.8 | 8.8 | 11.0 | 8.8 | 11.8 | 14.8 | 8.7 |
| 60~64 | 7.1 | 8.4 | 9.9 | 10.2 | 11.5 | 12.3 | 11.3 | 9.3 | 11.4 | 9.4 | 10.1 |
| 65~ | 74.2 | 67.5 | 43.8 | 29.4 | 24.1 | 18.6 | 12.7 | 7.4 | 9.0 | 6.3 | 29.3 |
| 소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그림 III-6]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총소득 평균 분포(재정패널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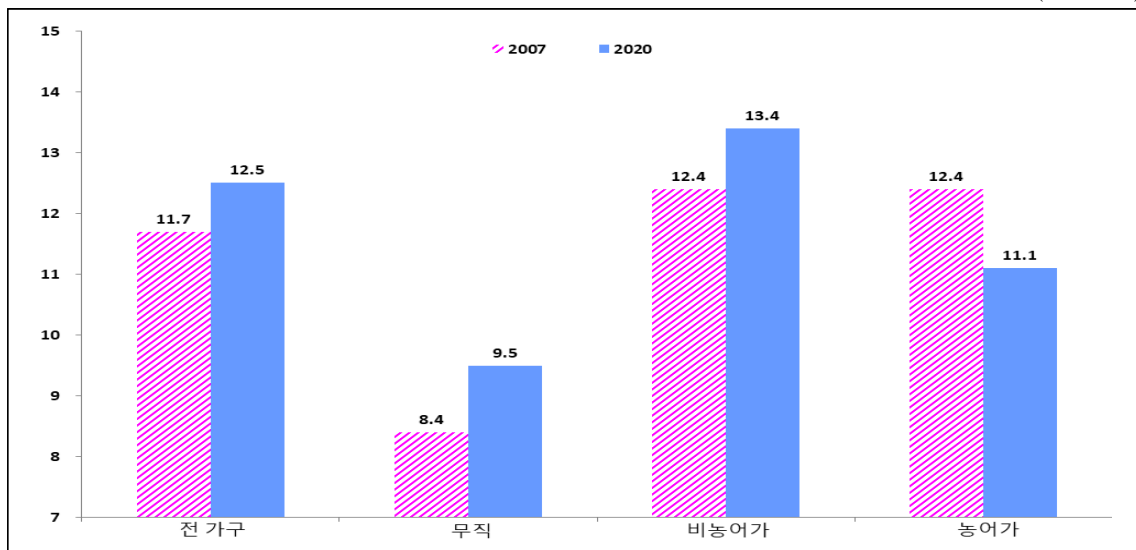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 [그림 III-7] 및 <표 III-7>에서 보듯이 가구주의 교육연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임
- 2007년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는 11.7년에서 12.5년으로 약 0.8년 상승

- 비농어가와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교육연수가 증가하였으나, 농어가의 경우에는 2007년 12.4년에서 2020년 11.1년으로 다소 감소
- 가구주의 학력을 교육연수로 환산하면, 2020년 현재 평균 12.5년으로 나타남([그림 III-7] 및 <표 III-7> 참조)
 - 가구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비농어가, 농어가, 무직가구의 순서로 평균 교육연수가 큼
 - 2020년 현재 비농어가 13.4년, 농어가 11.1년, 무직가구 9.5년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고학력 비율이 높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전반적으로 평균 학력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임
 -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비농어가의 경우가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농어가와 무직가구 순서로 평균연령이 높아짐
 - 따라서 가구유형별 평균 교육연수도 비농어가, 농어가, 무직가구의 순서로 짧아지는 것이 특징
- 일반적으로 학력수준과 평균소득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에는 단순히 가구유형의 차이 외에도 평균 학력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평균 가구소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III-7]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교육연수(재정패널자료)

(단위: 년)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7>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년)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11.7 | 8.4 | 12.4 | 12.4 |
| 2008년 | 11.8 | 8.5 | 12.6 | 12.4 |
| 2009년 | 12.1 | 8.8 | 12.9 | 11.4 |
| 2010년 | 12.2 | 8.6 | 13.0 | 10.9 |
| 2011년 | 12.1 | 8.5 | 13.0 | 12.3 |
| 2012년 | 12.0 | 8.5 | 12.9 | 10.6 |
| 2013년 | 12.1 | 8.5 | 13.0 | 11.3 |
| 2014년 | 12.1 | 8.8 | 13.1 | 11.0 |
| 2015년 | 12.2 | 8.7 | 13.2 | 11.4 |
| 2016년 | 12.3 | 9.0 | 13.3 | 11.0 |
| 2017년 | 12.4 | 9.0 | 13.3 | 10.8 |
| 2018년 | 12.4 | 9.0 | 13.4 | 12.1 |
| 2019년 | 12.4 | 9.4 | 13.2 | 12.1 |
| 2020년 | 12.5 | 9.5 | 13.4 | 11.1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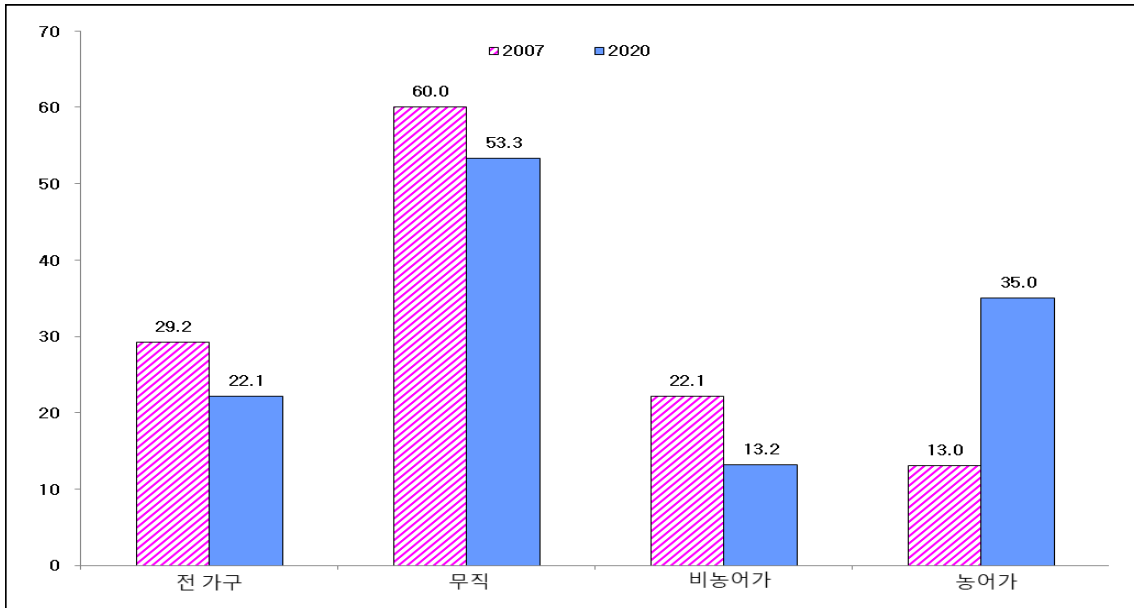
- [그림 III-8] ~ [그림 III-10]과 <표 III-8> ~ <표 III-10>에서 보듯이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농어가의 경우에는 고졸 비율,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의 학력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지님
 - 2020년 현재 중졸 이하 학력 가구의 비율은 무직가구가 53.3%로 절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농어가는 35.0%로 중간 수준이며, 비농어가는 동 비율이 13.2%로 상당히 낮은 편
 - 반면에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가구 비율은 비농어가는 54.8%이며, 농어가(20.6%)와 무직가구(17.8%)는 상당히 낮은 편

- 가구유형별 단순평균가구소득 순위는 비농어가, 농어가, 무직가구의 순서인데, 여기에는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력 수준 차이에 의한 평균소득 차이 요인을 제외하였을 때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가 다소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비농어가보다 농어가의 평균소득이 적은 것은 학력수준의 차이도 일조를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Ⅲ-8]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비중(재정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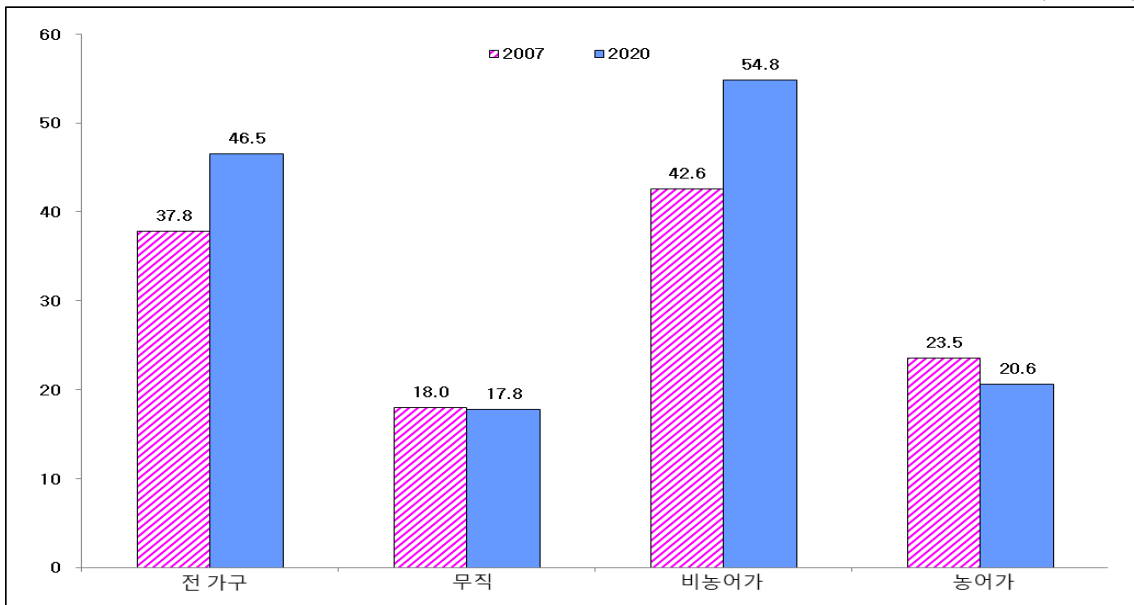
(단위: %)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그림 Ⅲ-9]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비중(재정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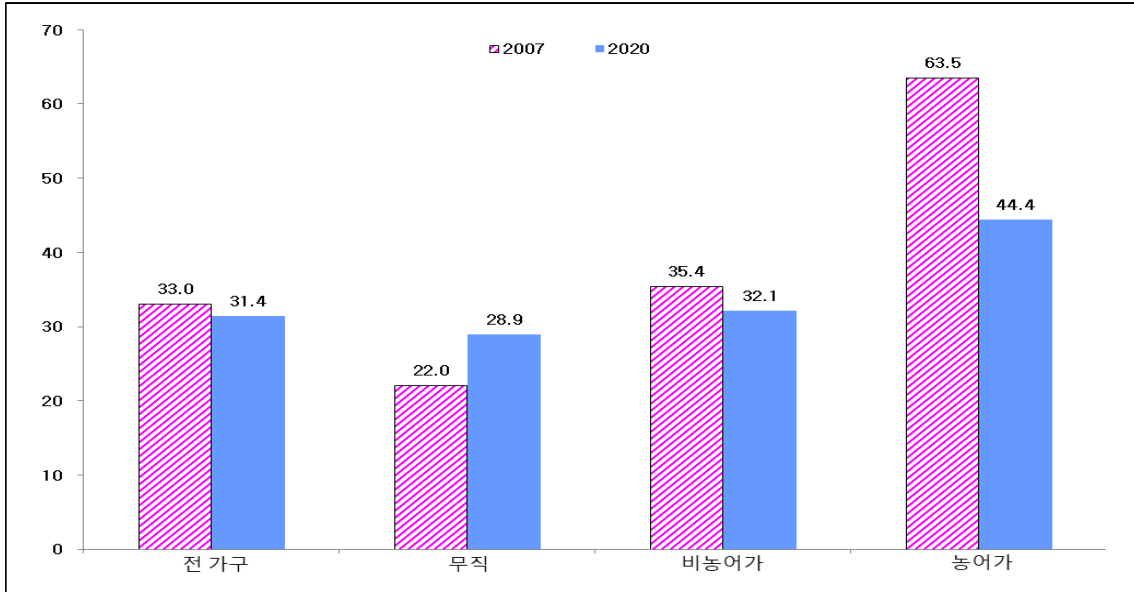
(단위: %)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그림 III-10]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졸 비중(재정패널자료)

(단위: %)



주: 재정패널자료(각 연도)를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III-8>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중졸 이하(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29.2 | 60.0 | 22.1 | 13.0 |
| 2008년 | 27.0 | 59.3 | 19.4 | 17.5 |
| 2009년 | 24.8 | 57.8 | 17.6 | 41.3 |
| 2010년 | 24.0 | 59.7 | 16.1 | 32.0 |
| 2011년 | 24.6 | 59.0 | 16.2 | 25.0 |
| 2012년 | 26.2 | 59.4 | 17.1 | 40.9 |
| 2013년 | 25.7 | 59.6 | 16.4 | 30.4 |
| 2014년 | 25.1 | 57.7 | 15.9 | 28.4 |
| 2015년 | 24.8 | 59.8 | 15.1 | 32.5 |
| 2016년 | 23.8 | 57.1 | 14.5 | 41.1 |
| 2017년 | 23.8 | 56.5 | 14.4 | 45.6 |
| 2018년 | 23.2 | 56.7 | 13.5 | 22.2 |
| 2019년 | 23.5 | 54.3 | 14.4 | 24.6 |
| 2020년 | 22.1 | 53.3 | 13.2 | 35.0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표 III-9>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고졸(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33.0 | 22.0 | 35.4 | 63.5 |
| 2008년 | 33.8 | 22.2 | 36.3 | 48.8 |
| 2009년 | 33.7 | 24.4 | 35.7 | 33.2 |
| 2010년 | 33.5 | 23.8 | 35.5 | 42.3 |
| 2011년 | 33.3 | 25.7 | 35.2 | 35.0 |
| 2012년 | 32.5 | 23.9 | 34.8 | 31.6 |
| 2013년 | 32.2 | 23.3 | 34.5 | 38.4 |
| 2014년 | 32.0 | 23.9 | 34.2 | 48.9 |
| 2015년 | 31.4 | 22.6 | 33.8 | 33.1 |
| 2016년 | 31.3 | 23.3 | 33.5 | 30.9 |
| 2017년 | 30.8 | 22.7 | 33.1 | 29.4 |
| 2018년 | 30.7 | 23.8 | 32.5 | 50.7 |
| 2019년 | 32.6 | 25.5 | 34.6 | 48.7 |
| 2020년 | 31.4 | 28.9 | 32.1 | 44.4 |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표 III-10>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전문대 이상(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 전체 | 무직 | 비농림어업 | 농림어업 |
|-------|------|------|-------|------|
| 2007년 | 37.8 | 18.0 | 42.6 | 23.5 |
| 2008년 | 39.3 | 18.4 | 44.2 | 33.7 |
| 2009년 | 41.5 | 17.8 | 46.7 | 25.5 |
| 2010년 | 42.6 | 16.4 | 48.4 | 25.7 |
| 2011년 | 42.1 | 15.3 | 48.7 | 40.1 |
| 2012년 | 41.3 | 16.7 | 48.1 | 27.4 |
| 2013년 | 42.2 | 17.1 | 49.0 | 31.2 |
| 2014년 | 42.9 | 18.3 | 50.0 | 22.7 |
| 2015년 | 43.8 | 17.5 | 51.0 | 34.3 |
| 2016년 | 44.9 | 19.5 | 52.0 | 28.1 |
| 2017년 | 45.4 | 20.8 | 52.5 | 25.0 |
| 2018년 | 46.1 | 19.5 | 54.0 | 27.1 |
| 2019년 | 43.9 | 20.3 | 51.0 | 26.6 |
| 2020년 | 46.5 | 17.8 | 54.8 | 20.6 |

- 주: 1. 2007~2020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무직은 가구주가 무직(실업, 은퇴 등), 전업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인 경우를 지칭.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은 각각 가구주가 농림어업부문과 비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

라.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선행연구 고찰

- 성명재(2019)는 가구유형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를 제거하고 농어가와 도시가구 사이의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를 추정함
 - 동 연구는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결정요인별로 구별하여 분리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큼
 - 아래에서는 선행연구(성명재, 2019)의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상기 조세감면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번째 요소(정부개입의 정당성, 즉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

- 농가, 어가, 도시가구의 3가지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소득결정식 추정을 통해 가구유형별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성명재(2019)가 대표적임
 - 성명재(2019)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이상 2003년, 2008년, 2009년, 2014년, 2015년의 5개년 귀속분 자료, 단, 2인 이상 가구 대상)를 통합(merge)한 자료를 대상으로 농가 및 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격차를 검정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
 - 가구소득을 종속변수로 놓고, 가구유형의 차이(농가, 어가 여부의 더미변수), (가구주)연령, 성,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원 수 등의 변수를 소득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선택하여 소득결정식에 대한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을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시행
 - 회귀 분석을 통한 추정결과는 <표 III-11>에서 인용

- 회귀방정식에서 각 설명변수의 계수(추정치)는 각 설명변수 값 1단위가 변화할 때 가구소득의 증감액 단위를 나타냄
 - 각 가구유형별로 상기 결정요인(설명변수)의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구유형 사이의 결정요인 평균값의 차이에 각 요인별 계수추정치 값을 곱하면 해당 결정요인에 의한 가구 유형 간 평균 소득격차, 즉 농가, 어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액 평균 차이를 가늠할 수 있음

- 성명재(2019)는 가구유형별로 무조건부 평균소득 대신 소득결정요인의 평균값에서 가구소득의 평균값 차이를 산출하여 농가와 도시가구, 어가와 도시가구 사이의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차이를 산출함

- 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차이 등 인적특성 차이에 의한 소득 차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구유형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격차는, 2003년, 2008년, 2014년에는 농가와 어가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함
 - 2009년과 2015년에는 오히려 농가와 어가의 소득이 도시가구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농가더미변수와 어가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절대크기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농가 또는 어가의 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유의미하게 더 크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요약하면, 2000년대에는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이 평균적으로 도시가구(비농어가)보다 적었으나 2009년 이후 자료에서는 농가·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유의미한 가구소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

- 그런데 성명재(2019)는 상기의 소득결정식을 추정할 때 1인 가구를 제외하고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이는 각각 농가와 어가를 대표하는 농가경제조사자료와 어가경제조사자료가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자료 간 자료구성의 일치성(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해 비농어를 대표하는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에도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
 - 그러므로 성명재(2019)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농어가와 도시가구 사이의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고령자 비중이 높고,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율 역시 높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1인 가구의 비율도 적지 않으므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

-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분석의 포괄범위를 2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정적인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전 가구 기준의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가구유형별 가구평균소득의 차이에 대한 일치추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인 가구까지 분석 자료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평균)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망라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
 -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항에서 논의

<표 III-11> 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선행연구 결과)

| 대상연도 | 2003 | 2008 | 2009 | 2014 | 2015 |
|---------|---------------------------|---------------------------|---------------------------|--------------------------|---------------------------|
| 상수 | -4342.936*** (-12.527) | -5383.048*** (-12.480) | -5908.708*** (-11.397) | -6872.087*** (-9.405) | -8013.006*** (-13.349) |
| 농가터미 | -315.4556*** (-5.578) | -453.0866*** (-5.444) | 47.22014 (0.593) | -155.6607 (-1.445) | 17.34102 (0.170) |
| 어가터미 | -674.8178*** (-9.234) | -440.9778*** (-3.907) | 78.00955 (0.796) | 125.9233 (0.912) | 221.7068 (1.592) |
| 가구원 수 | 354.0249*** (18.355) | 504.7909*** (15.364) | 489.1277*** (17.088) | 536.10755*** (13.859) | 677.6384*** (18.697) |
| (가구주)연령 | 222.98196*** (16.872) | 285.3632*** (18.617) | 297.6776*** (16.259) | 383.5477*** (15.448) | 440.9590*** (21.466) |
| 연령2 | -2.10133*** (-16.700) | -2.6935*** (-19.397) | -2.85895*** (-17.402) | -3.69034*** (-17.258) | -4.30516*** (-23.915) |
| 성별(남자) | 237.1714*** (3.206) | 530.0103*** (7.453) | 360.9930*** (4.025) | 664.56435*** (5.531) | 874.4586*** (8.459) |
| 초등학교 | 209.0940* (1.889) | -275.1061** (-2.204) | -4.20899 (-0.027) | -680.1742*** (-3.317) | -815.5715*** (-4.061) |
| 중학교 | 373.0082*** (3.144) | -99.9478 (-0.712) | 275.16275* (1.694) | -323.0542*** (-1.480) | -743.3781*** (-3.524) |
| 고등학교 | 787.4777*** (6.607) | 266.3346* (1.824) | 749.2926*** (4.611) | 402.9706* (1.868) | -103.9153 (-0.503) |

<표 III-11>의 계속

| 대상연도 | 2003 | 2008 | 2009 | 2014 | 2015 |
|-------|-------------------------|------------------------|-------------------------|-------------------------|-------------------------|
| 전문대 | 1393.379*** (8.734) | 916.1445*** (4.890) | 1349.161*** (6.570) | 849.51868*** (3.172) | 195.68854 (0.806) |
| 대학 | 1769.189*** (13.429) | 1704.033*** (9.895) | 2047.374*** (11.354) | 1462.016*** (6.102) | 936.4908*** (4.226) |
| 대학원 | 3180.819*** (16.608) | 3090.151*** (9.529) | 3363.479*** (13.963) | 2374.5875*** (6.915) | 1992.2628*** (6.723) |
| 표본 수 | 8,870 | 8,137 | 8,327 | 7,679 | 11,300 |
| R^2 | 0.19586 | 0.20377 | 0.19451 | 0.18380 | 0.18897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가장
최소제곱법으로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피회귀변수(가구소득)는 만원 단위임
2. () 안은 z-값을 나타냄. 단,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
으로 추정
3.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자료: 성명재(2019), p. 78.

마.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실증분석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의 기
본적인 목표는 열악한 농어가 소득을 보전해주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
하는 동시에 소득분배격차를 축소하는 등 다분히 재분배적 성격의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자생력·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
 - 주된 논거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즉,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들보다 소득수준이 크게 낮다는 점으로부터 출발
 - 그러므로 상기 조세감면정책의 정당성(또는 필요성)은 농어가와 비농어가구(주로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논의의 출발점

- 다만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종사업종이나 거주지역의 차이 외에도 연령, 교육
수준, 성별 등에 의해서도 격차가 발생함
 - 그러므로 농가와 도시가구 또는 어가와 도시가구 사이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여타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요소를 분리제거
(또는 분해(decomposition))하고 순효과만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함

- 여타 요소에 의한 (평균)소득격차를 통제(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득결정식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결정식을 설정하고 회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
 - 가구소득결정식: 선형회귀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

$$Y_i = \beta_0 + \beta_1 \text{가구인적특성}_i + \beta_2 \text{가구더미벡터}_i + \beta_3 \text{가구주 특성 벡터}_i + \epsilon_i$$

단, 가구인적특성: 가구원 수, 근로자 여부 더미

가구더미 벡터: 농어가더미, 무직가구더미

가구주 특성 벡터: 연령, 연령제곱, 각급 학력더미(무학 제외)

ϵ : 오차항

- <표 III-12>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7~2020년의 14개년 자료에 대해 횡단면 회귀 분석을 통해 가구소득결정식을 추정함
 - 여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농어가 더미와 무직가구 더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
 -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농어가 더미의 계수 추정치 값은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소득 차이 기여분을 의미

- <표 III-12>의 회귀방정식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와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큰 것으로 추정
 - 가구소득은 가구주 연령에 대해서는 (+), 연령의 제곱항에 대해서는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가구주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가구소득이 상승하다가 일정 연령대(주로 40대 부근의 중년층 연령대)를 지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줌
 - 이는 생애주기가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해석 가능
 -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평균소득 차이(또는 격차 기여분)를 나타내는 농림어업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2017년의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2017년의 농림어업 더미의 계수 값은 약 198.4로 절대값이 작고, t-값도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가구유형(종사업종)의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가구유형의 차이라는 요인에 의해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대체로 비농어가보다 적음을 시사
 - 동 계수 추정치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의 절대값이 충분히 크게 추정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
 - 다만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농림어업 더미의 계수 값의 절대크기는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단순평균 가구소득 차이보다 작음
 - 가구소득의 단순평균치의 차이보다 순수하게 가구유형(즉, 종사업종)의 차이에 의한 (평균)가구소득의 차이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은 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에 가구유형(종사업종)의 차이 이외의 다른 요인의 특성 차이로 인해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기타 종사상 지위에 대한 근로자가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연도별로 부호와 절대값의 크기가 크게 변화하여 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일률적으로 더 크지 또는 더 적은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
 - 학력 더미 변수는 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학력수준별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학력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의 값을 가져, 고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더 높음을 시사
- 정리하면, 회귀 분석을 통해 여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유형(즉, 종사업종)의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유형별 가구소득의 단순 평균치를 비교하였던 <표 III-1>에서의 농어가·비농어가 간 평균가구소득 차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즉 비농어가보다 농어가의 평균소득이 더 적다는 결론을 도출 가능
 - 2020년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림어업 더미변수의 계수가 - 811.661이고 통계적 유의성도 비교적 높게 추정

- 이는 농어가(일부의 임업가구 포함)의 가구소득이 평균적으로 비농어가보다 약 811.7만원 정도 적음을 의미
 - <표 III-1>에서 2020년 현재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단순평균 소득격차는 803.0만원(=5,743.4만원-4,940.4만원)이었는데,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 규모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 이는 여타 요인들에 의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평균소득 차이가 각 요인 별로 매우 유의미(즉,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significant))하지만, 각 요인들에 의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평균소득 격차의 크기와 부호가 서로 엇갈리면서 상쇄되었기 때문임을 의미
- 소득을 결정하는 각종 요인에 의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 차이효과를 제거하고 보더라도 가구유형(보다 구체적으로는 종사업종)의 차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약 812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운용되는 법인에 소속(즉, 피고용)되거나 회원으로 활동하는 농어민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면제)하여 농어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보조)하고, 농어민의 고용확대 및 생산 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차적으로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함

〈표 Ⅲ-12〉 가구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재정패널자료 기준)

| 설명변수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상수 | -3540.83*** (-7.854) | -5712.45*** (-10.326) | -5399.51*** (-9.972) | -5726.05*** (-9.531) | -5803.04*** (-9.409) | -6710.63*** (-9.747) | -5830.53*** (-8.918) |
| 가구원수 | 468.8654*** (14.624) | 492.9669*** (13.194) | 525.954*** (15.044) | 669.8654*** (17.287) | 692.6873*** (17.479) | 738.2454*** (16.538) | 805.984*** (19.104) |
| 연령 | 172.1118*** (9.780) | 223.3681*** (10.443) | 221.7174*** (10.828) | 233.6614*** (10.434) | 237.7675*** (10.459) | 260.0168*** (10.363) | 229.8704*** (9.632) |
| 연령제곱 | -1.46137*** (-8.422) | -1.879*** (-9.050) | -1.91494*** (-9.834) | -1.95183*** (-9.252) | -1.99026*** (-9.350) | -2.16532*** (-9.286) | -1.92966*** (-8.702) |
| 농림어업더미 | -962.981*** (-6.046) | -10.1504 (-0.055) | -604.809*** (-3.378) | -713.815*** (-3.599) | -601.802*** (-2.922) | -481.833** (-2.164) | -246.378 (-1.097) |
| 무직·전업주부·학생·미취학아동더미 | -1681.76*** (-13.383) | -1040.7*** (-6.997) | -1329.18*** (-9.485) | -1161.14*** (-7.468) | -1095.89*** (-6.937) | -963.883*** (-5.490) | -845.996*** (-4.923) |
| 근로자더미 | -277.362*** (-3.094) | 187.4226* (1.815) | 297.1158*** (3.046) | 158.8399 (1.469) | 518.8149*** (4.672) | 460.5977*** (3.745) | 628.442*** (5.297) |
| 가구주성별(남성)더미 | 310.0698*** (3.011) | 405.9148*** (3.319) | 451.0346*** (3.945) | 319.7766** (2.549) | 402.4117*** (3.203) | 389.3812*** (2.789) | 461.5141*** (3.521) |
| 학력더미(초) | -31.8427 (-0.184) | 70.65018 (0.334) | -185.938 (-0.880) | -66.1266 (-0.282) | -273.273 (-1.138) | -113.281 (-0.415) | -307.808 (-1.169) |
| 학력더미(중) | 174.0452 (0.920) | 247.5882 (1.0662) | -27.5121 (-0.120) | 49.73856 (0.195) | -65.0694 (-0.248) | 99.17839 (0.334) | 11.81937 (0.042) |
| 학력더미(고) | 804.8276*** (4.371) | 1001.589*** (4.453) | 513.4814** (2.296) | 629.3084** (2.538) | 384.2951 (1.514) | 664.5129*** (2.307) | 344.3458 (1.242) |
| 학력더미(전문대) | 1477.22*** (6.543) | 1646.274*** (6.168) | 1027.218*** (3.895) | 1223.76*** (4.203) | 998.665*** (3.348) | 1180.121*** (3.505) | 853.2658*** (2.658) |

〈표 III-12〉의 계속

| 설명변수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학력더미(대학제) | 2510.428*** (12.964) | 2988.661*** (12.676) | 2170.769*** (9.285) | 2381.84*** (9.221) | 2107.578*** (7.959) | 2557.913*** (8.518) | 2133.6*** (7.380) |
| 학력더미(대학원, 석사) | 4048.508*** (15.217) | 3964.625*** (12.897) | 3609.767*** (12.333) | 3944.516*** (12.047) | 3730.086*** (11.049) | 4070.139*** (10.769) | 4031.44*** (11.191) |
| 학력더미(대학원, 박사) | 4595.28*** (9.790) | 5482.704*** (10.419) | 5391.964*** (11.497) | 4610.341*** (8.698) | 4321.045*** (7.665) | 5337.027*** (8.415) | 5090.427*** (8.858) |
| 표본 수 | 5,014 | 5,039 | 4,830 | 4,778 | 4,740 | 4,756 | 4,807 |
| R2 [조정-R2] | 0.33629 [0.33443] | 0.28885 [0.28687] | 0.34145 [0.33954] | 0.30998 [0.30795] | 0.32282 [0.32082] | 0.29441 [0.29233] | 0.32717 [0.32520] |

| 설명변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상수 | -6916.29*** (-5.758) | -5899.37*** (-8.265) | -5954.37*** (-7.632) | -5430.06*** (-6.536) | -3609.1*** (-3.825) | -5033.73*** (-8.829) | -3877.15*** (-4.613) |
| 가구원수 | 892.533*** (11.438) | 890.9718*** (18.877) | 950.7422*** (18.327) | 1090.05*** (19.350) | 1152.43*** (17.789) | 1174.038*** (29.546) | 1362.45*** (22.194) |
| 연령 | 254.996*** (5.872) | 245.5892*** (9.551) | 249.4805*** (9.005) | 197.5616*** (6.739) | 246.1222*** (7.450) | 219.1837*** (11.051) | 191.2621*** (6.492) |
| 연령제곱 | -2.12221*** (-5.299) | -2.0876*** (-8.783) | -2.1746*** (-8.564) | -1.60931*** (-5.999) | -2.10482*** (-6.985) | -1.82766*** (-9.962) | -1.64973*** (-6.059) |
| 농림어업더미 | -314.534 (-0.766) | -479.894* (-1.938) | -262.239 (-0.963) | 198.3845 (0.666) | -1560.21*** (-4.567) | -991.809*** (-4.624) | -811.661** (-2.420) |
| 무직·전업주부·학생·미취학아동더미 | -739.21** (-2.373) | -985.954*** (-5.131) | -668.526*** (-3.255) | -903.97*** (-4.065) | -1927.31*** (-7.608) | -1627.34*** (-10.733) | -1616.29*** (-7.073) |
| 근로자더미 | 750.1968*** (3.425) | 457.904*** (3.467) | 656.4346*** (4.544) | 633.7683*** (4.031) | -202.903 (-1.126) | -33.6962 (-0.315) | -119.4 (-0.711) |

〈표 III-12〉의 계속

| 설명변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가구주성별(남성)더미 | 510.734** (2.138) | 435.1307*** (3.084) | 506.2656*** (3.322) | 573.7071*** (3.494) | 543.1409*** (2.901) | 511.2588*** (4.505) | 412.1331** (2.423) |
| 학력더미(초) | -140.77 (-0.287) | -218.532 (-0.731) | -269.5 (-0.805) | -201.238 (-0.551) | -1720.22*** (-4.034) | -284.021 (-0.982) | -490.095 (-1.128) |
| 학력더미(중) | 173.4567 (0.329) | 19.77804 (0.062) | -29.9547 (-0.084) | 179.7804 (0.464) | -1708.17*** (-3.779) | -165.62 (-0.552) | -465.852 (-1.028) |
| 학력더미(고) | 590.3887 (1.153) | 352.3189 (1.132) | 388.2298 (1.118) | 674.3123* (1.785) | -1249.01*** (-2.835) | 535.309* (1.822) | 57.88877 (1.130) |
| 학력더미(전문대) | 914.4908 (1.543) | 883.1809** (2.484) | 756.4264* (1.926) | 1225.161*** (2.865) | -747.896 (-1.509) | 1239.241*** (3.838) | 548.4269 (1.108) |
| 학력더미(대학제) | 2670.12*** (5.003) | 2348.538*** (7.259) | 2286.846*** (6.345) | 2700.178*** (6.890) | 695.0424 (1.519) | 2290.178*** (7.523) | 2109.97*** (4.559) |
| 학력더미(대학원.석사) | 4014.886*** (6.090) | 4055.767*** (10.169) | 3807.249*** (8.622) | 4025.256*** (8.339) | 2163.583*** (3.876) | 4137.558*** (11.270) | 3492.201*** (6.111) |
| 학력더미(대학원.박사) | 5958.175*** (5.837) | 5276.587*** (8.586) | 4924.84*** (7.607) | 4974.501*** (7.135) | 3528.428*** (4.314) | 4909.805*** (8.888) | 5794.707*** (6.588) |
| 표본 수 | 4,819 | 4,832 | 4,790 | 4,770 | 4,765 | 8,792 | 8,798 |
| R2 [조정-R2] | 0.14710 [0.14461] | 0.31911 [0.31713] | 0.29989 [0.29984] | 0.28632 [0.28422] | 0.25957 [0.25739] | 0.31346 [0.31237] | 0.18677 [0.18548] |

주: 1.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단순최소제곱법(OLS)으로 회귀 분석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분석대상연도는 소득 귀속연도를 나타냄. 계수값은 모두 만원 단위

2. () 안은 *t*-값

3.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significant)함을 나타냄. 단, 유의수준은 양면검정 기준

바. 소결

-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가구소득결정식을 추정한 결과, 종사업종의 차이에 따라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평균적으로 비농어가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추정: 2020년 현재 가구소득의 차이는 평균 약 812만원 수준
 - 농어가는 비농어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구원 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규모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평균은 농어가가 비농어가보다 조금 더 클 개연성이 있음
 - 그러나 가구유형(종사업종)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결정 요인의 차이에 의한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 기여분은 서로 상쇄됨
 - 농어가가 비농어가보다 상당히 고연령인데, 생애주기상 연령대 후반기에 나타나는 소득과 연령의 (-)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연령효과를 통해 농어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비농어가 대비 (-)의 효과를 보임
 - 비농어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다소 낮은 농어가의 학력수준도 농어가의 가구소득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연령효과와 학력효과 등으로 인한 (-) 효과는 가구규모(가구원 수) 효과에 따른 (+) 효과와 정량적으로 거의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격차는 <표 III-1>에서 추정된 단순평균치의 차이와 유사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

- 결론적으로 농어가의 평균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적으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절대값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가구유형의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장기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이러한 시장실패현상의 존재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시사함
 - 단기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가구소득의 평균치가 지속적으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정부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 농어가·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를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지원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정책 또한 직·간접적으로 농어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음
 - 동 정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동 정책을 통한 농어가 소득보전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이는 곧 상기의 조세감면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분석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 추정된 소득격차의 크기보다 실제의 농어가·비농어의 평균가구소득은 조금 더 큰 격차를 나타내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와 비농어가 가구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 지원정책 수준이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의 순위를 뒤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큰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본 절에서는 비농어가에 비해 열악한 농어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어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을 완화·보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면제정책의 적절성을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함

가. 조세감면을 통한 농어의 가구소득 증대정책의 적절성 논란

- 일반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면 기업(법인)과 기업의 소유주, 피고용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
 -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균형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요소의 고용 및 생산 감소를 통해 관련 가구들의 소득을 이차적으로 감소시킴
- 법인세·소득세의 과세가 관련 분야의 가구소득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면제)해주는 경우 조세감면액만큼 직접적으로 관련 가구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차적으로 고용·생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물론 정부의 필수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공공재·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또는 가격)의 의미로서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면제가 가처분소득과 고용·생산 활동을 자극하여 가구소득을 증대시킨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의 무용론이나 불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일반적으로는 국가재정활동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이 필수적인 세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세목이 기간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면제방안은 농어가와 관련된 시장실패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한정하여 적절성을 논할 수 있음
-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잠재적 생산성이 충분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요인, 시장불비 현상 등에 따라 생산 활동이 저조한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그러므로 이런 논의가 법인세·소득세 무용론 등과 같은 과도한 일반화 논의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
- 아래에서는 법인세·소득세의 과세가 노동시장에서 임금(률), 고용량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 역으로 이들 세목을 감면·면제해주는 경우에 가구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면제가 농어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적절한지의 여부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

나. 이론분석

-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생산요소시장, 그 가운데 특히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침
- 아래에서는 법인세 과세 시의 효과, 소득세 과세 시의 효과, 법인세·소득세 결합과세 시의 효과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영향을 분석

- 역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면 반대방향으로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음
- 법인세의 과세는 세후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규모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키는 것이 일반적
 - 그 결과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
 - 이는 [그림 III-11]에서 법인(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형상화($D_{L0} \rightarrow D_{L1}$)
- 소득세의 과세는 노동공급자의 세후임금률을 낮추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클 때 나타나는 노동공급의 후방굴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가계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
 - 이는 [그림 III-12]에서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을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 이동시키는 형태로 형상화($S_{L_0} \rightarrow S_{L_2}$)
 -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노동공급의 후방굴절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
 - 임금소득세의 형태나 누진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변화 형태가 단순한 회전이동에서 벗어나 회전 이동과 좌측방 이동이 결합되거나, 공급곡선의 곡률이 변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음
 - 변화의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변화된 노동공급 곡선이 본래의 노동공급곡선보다 좌측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1) 법인세 과세의 영향

- [그림 III-11]에서 보듯이 법인세를 과세하면 세후수익률 감소 등의 영향에 따라 노동을 포함하여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균형점은 E_0 에서 E_1^* 으로 이동하고 균형고용량은 L_0 에서 L_1 으로 감소함
 - 상품시장이 경쟁시장인 경우 기업(법인)의 노동수요는 상품가격(P)과 노동의 한계생산성(MP_L)의 곱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의 형태로 도출
 - 가계가 수취하는 노동가격, 즉 임금률은 법인세 과세 전 w_0 에서 과세 후 w_1^* 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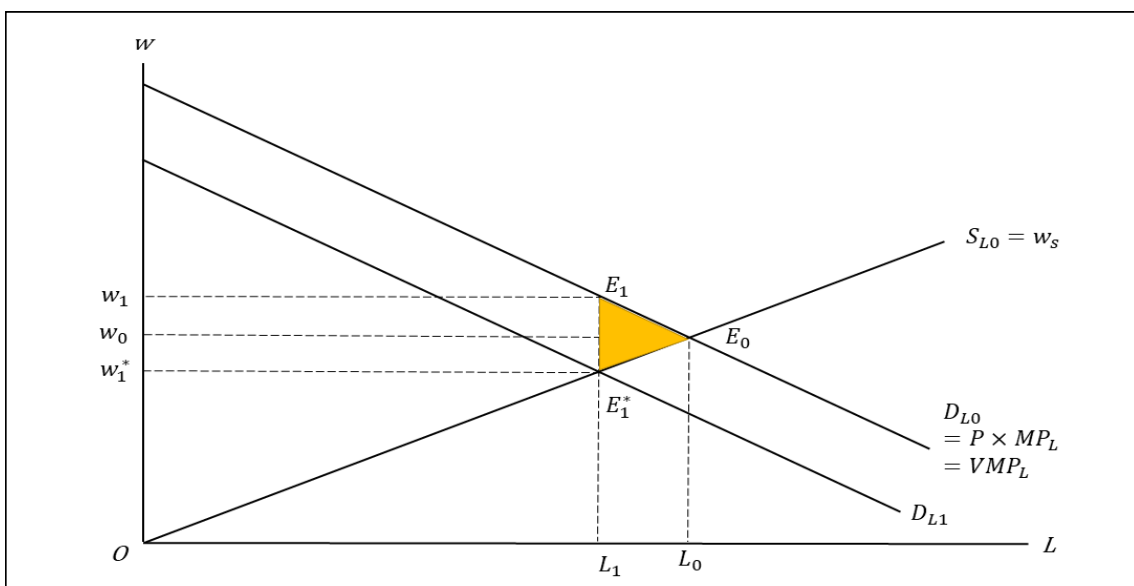
- 법인이 임금으로 지급하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을 역시 w_0 에서 w_1^* 로 하락
- 지급 임금률의 하락은 법인세 부담의 전가(shifting)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액 중 일부가 생산요소로 귀착되는 형태인데, 이를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라고 함
- 그런데 법인세 부과 후 균형고용량인 L_1 에서 법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한계생산가치는 w_1 이지만 법인세 과세 후 법인이 기대할 수 있는 세후 한계생산가치는 w_1^* 로 감소
-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로 인해 감소한 한계생산가치분 $\overline{w_1 w_1^*}$ 중에서, $\overline{w_1 w_0}$ 부분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overline{w_0 w_1^*}$ 부분은 임금률 하락의 형태로 노동에게 귀속·전가되었음

□ 가계(노동공급자)는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노동공급량)도 동시적 감소하므로 임금률과 노동공급량의 곱으로 나타나는 노동소득이 감소함

○ 이는 역으로 법인세를 감면(면제)하면 농어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 그 결과 법인세 과세를 통해 [그림 III-11]에서 삼각형($\triangle E_0 E_1 E_1^*$)으로 표시한 영역만큼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함

[그림 III-11] 법인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노동시장 예시)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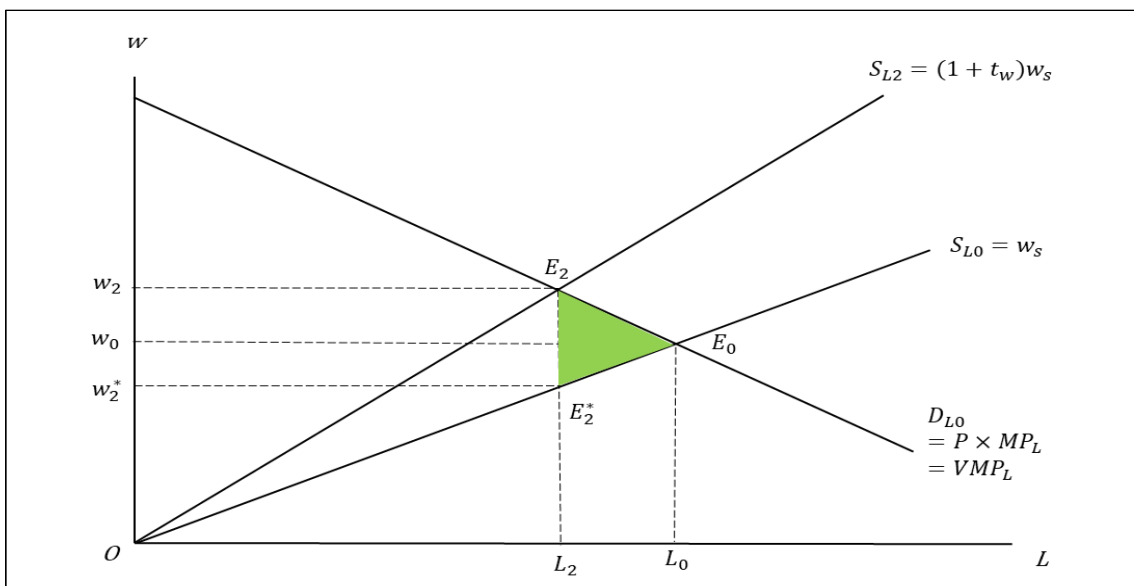
2) 소득세 과세의 영향

- [그림 III-12]에서 보듯이 정률세율구조의 소득세를 과세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이동하면서 균형점이 E_0 에서 E_2 로 이동함
 - 고용량은 L_0 에서 L_2 로 감소
 -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률은 w_0 에서 w_2 로 상승
 - 가계가 수취하는 세후임금률은 w_0 에서 w_2^* 로 하락
 - 소득세가 부과되어 노동 1단위당 $\overline{w_2^*w_2}$ 만큼의 소득세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

-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가계가 수취하는 임금률이 감소하여 가계의 소득세 부담($\overline{w_2^*w_0}$ 만큼 귀착)이 증가하는데, 기업 역시 소득세로 인해 고용 1단위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률 부담이 상승하여 $\overline{w_0w_2}$ 만큼의 소득세가 기업으로 전가함
 - 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후임금률이 감소하고 균형고용량이 감소하면서 농여가의 가구소득이 감소
 - 이는 역으로 소득세를 감면(또는 면제)하면 농여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 소득세 과세의 결과 삼각형($\triangle E_0E_2E_2^*$)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됨

[그림 III-12] 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근로소득세 예시)



자료: 저자 작성

3) 법인세·소득세 결합과세의 영향

- [그림 III-13]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법인세 과세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노동수요곡선의 좌측이동)하고 소득세 과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도 감소(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이동)함에 따라 균형점이 E_0 에서 새로운 수요곡선(D_{L1})과 새로운 공급곡선(S_{L2})이 교차하는 E_3^o 로 이동
 - 균형점이 E_3^o 로 이동하면서 균형고용량이 감소($L_0 \rightarrow L_3$)
 - [그림 III-13]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과세를 통한 고용량 감소효과가 더 크게 묘사되어 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에 실효세율 상승효과의 크기에 따라 양자의 대소 관계가 결정됨에 유의할 필요
 - 다만 두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균형고용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 새 균형점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률은 w_3^o 이지만 가계가 수취하는 임금률은 그보다 낮은 w_3^* 이고 그 차이($\overline{w_3^* w_3^o}$)는 소득세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됨
 - 새 균형점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수취할 수 있었던 한계생산가치(w_3)보다 실제 수취하는 세후 한계생산가치(w_3^o)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차이($\overline{w_3^o w_3}$)는 법인세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
 - 다만 법인세 과세로 인한 법인부담의 증가분 중 일부를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보전(전방전가(forward shifting)라고 함)하는 경우라면 $\overline{w_3^o w_3}$ 중 일부만 법인세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에 법인세 부담 중 일부를 전가한 부분으로서 다시 해당 기업에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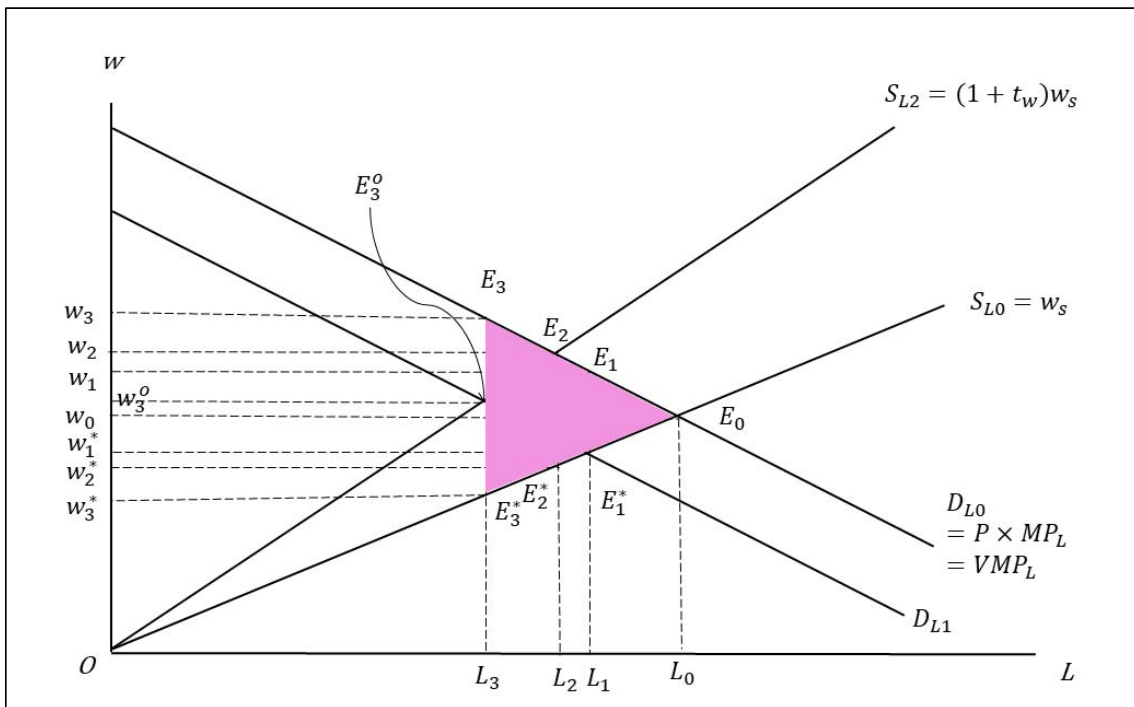
-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면 노동공급자(농어가)가 수취하는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농어가의 세후소득이 감소함
 - 이는 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면제)하면 농어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초래되는 초과부담을 형상화하면 [그림 III-13]에서 삼각형($\Delta E_0E_3E_3^*$)으로 표시됨

- 법인세와 소득세를 결합하면 과세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액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별개로 과세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합산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큼

$$- \Delta E_0E_3E_3^* > \Delta E_0E_1E_1^* + \Delta E_0E_2E_2^*$$

[그림 III-13] 법인세·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III-11]~[그림 III-13]의 논의를 종합하면,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과세되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면제)하면 농어가 수취하는 노동가격(임금률)이 상승하면서 직접적으로 농어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균형고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 활동 활성화에 따라 이차적으로 가구소득이 증대됨을 시사

- 재정소요 충당 측면에서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대한 논거와 별개로, 상기 법인에 대해 과세되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면 농어가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

- 이는 비농어가에 비해 농어가 소득이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완화·교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법인세·소득세 감면(면제) 정책이 농어가 소득증대라는 소기의 정책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법인세·소득세 과세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정책은 시장실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농어가·비농어가 간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해주는 데 있어 유효하면서 적절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농어가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에도 근로장려금(EITC)이나 직접소득이전 방식의 정책수단 등도 있음
 - 다만 근로장려금 등의 직접지원방식은 통상적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등 고용 및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
 - 이는 사회보장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의 하나임
 - 농어업 종사가구의 생산 활동 장려, 고용증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직접소득지원 방식의 지원수단은 노동공급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에 반해 법인세·소득세 감면정책은 위와 같은 부정적 요인에 대한 걱정 없이 조세감면액 만큼 직접적으로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면제)함에 따라 균형고용량이 증대되면서 노동공급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활성화를 통해 (시장)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이중적인 편익이 발생하게 됨
 - 그런 점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면제정책은 직접소득이전을 통한 지원방식보다 우월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

4. 지원수준의 적정성

-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농어가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줄 때 도덕적 해이와 복지수혜의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의

- 결과로서 가구유형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그러므로 소득지원액의 최대치는 소득지원의 결과로서 가구유형 간 소득순위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비농어가와 농어가의 평균소득 차이의 범위 내에서 농어가 소득지원액 수준이 결정되면 소득순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가구유형 간 소득 차액이 소득지원액의 상한선(최대치)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지원을 통해 가구유형 간 소득수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소득지원 수준의 과잉 여부를 가장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위의 제2절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농어가의 평균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미 오래전부터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득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소득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
 -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소득지원 수준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득순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지원 수준이 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할 뿐, 현행의 지원수준이 최적수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고르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농어가 소득지원액의 최적수준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의 소득지원 수준이 최적수준인지를 검정·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그러나 현행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 지원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비록 최적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정답을 제공할 수 없지만, 최소한 조세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가 일정한 정도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이며 지원수준도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5. 타 제도와의 중복성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면제정책은 세금 감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농어가의 가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고용증대를 통해 생산촉진 효과를 나타내어 생산 및 농어가의 소득증가로 연결됨
 - 동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기구를 통해 자생적으로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

- 상기의 조세지원정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세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등

- 상기의 조세지원제도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와 조세지원대상이 상이하며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음

- 사회·경제적 약자, 저소득·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득지원정책이나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 정책 역시 상대적·절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이전을 통해 지원하거나 서비스(예: 무상의료급여 서비스 등) 등을 제공하는 지원제도가 있으나, 영농·영어활동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을 경감·감면해주는 것과는 구별됨
 - 이들 지원정책 중 저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조금 등 소득이전을 통해 이전액만큼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복지정책은, 수혜대상가구의 가구소득을 증대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 구조적으로 지원방식과 기능, 효과 등의 정책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중복되지 않는 등 관련성이 없음

- 그러므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제도는 저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접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지원정책 등과도 중복 및 관련성이 없음

6. 소결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생산성 증가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주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조세감면을 통해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조세감면을 통한 관련 법인의 고용증대와 생산 활동 증진을 통해 이차적으로 농어가의 소득 진작을 도모
 - 동 조세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농어촌 인구절벽과 시장불비성, 잠재적 생산성에 미달하는 취약한 생산 및 산업기반 등의 시장실패 현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서 출발
 - 결과적으로는 상기의 시장실패 현상에 따라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실질적인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동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정당성 검토가 필요

- 아울러 지원방법의 적절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정책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

- (정부개입의 정당성)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득결정식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구유형 간 학력수준, 연령, 가구규모, 성별 차이 등에 의한 소득격차를 제외하고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추정
 - 재정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2007~2020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 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 현상이 상당 부분 인구고령화와 농어촌 지역의 젊은 세대 부족현상, 빈약한 생산인프라 등과 같은 시장실패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실패 현상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완화·해소하는 것이 필수적
 - 따라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정책을 통해 농어가 소득지원(증대) 및 고용확대, 생산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장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원방법의 적절성)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어가의 고용 및 생산 활동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어가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라고 할 때, 동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피고용자에 대한 소득세,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원정책은 조세 이론적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균형고용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방법론상 적절한 정책 수단인 것으로 평가

- (지원수준의 적정성)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조세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적(optimum)이지만, 현실에서 최적수준을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음
 - 상기의 조세지원을 통해 농어가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입증

- 다만 현재의 조세지원 수준이 최적수준에 근접해 있는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검증이 어려움
 - 실증분석에서 농어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에 미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동 지원정책이 방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정책 중복성) 상기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정책 외에도 농어업 부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감면제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지원 대상 객체와 지원 대상 세목 등이 구별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저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이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각종 복지 정책들도 상기의 조세지원정책과 구별되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의 법인세·소득세 감면(면제)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동 제도를 오용하거나 악용하여, 영농·영어활동과 관계없이 세금감면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의 행위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사후적으로라도 조세지원·감면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해주는 취지는 영농·영어활동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지역발전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 위장 현물투자한 경우에는 사후적발 등을 통해 감면된 세액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조세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일률적인 조세감면의 제한은 정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정상적인 출자행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농어가 지원이라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고 정책취지를 후퇴시키기 때문임
 - 반복적·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한 형태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형태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하고, 기 감면된 부분은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
 - 동 조세특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3절 라항을 참조하기 바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동 제도의 효과성으로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효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 동 제도의 목적은 협업적·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유도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 따라서 제도 도입목적상 기대되는 정책효과의 첫 번째는 농어업인이 법인에 참여함으로써 과연 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영어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제도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음
 - 두 번째 기대 정책효과는 동 제도가 영농·영어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을 법인의 구성원(출자자, 조합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 하겠음
 - 아무리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더라도 동 제도가 개인사업자인 농어업인들을 법인에 참여시킬 유인이 없다면 제도 운영의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함
 - 첫째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와 농가의 총판매금액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법인 참여가 농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를 평가함⁵⁰⁾
 - 둘째로, 농업법인의 종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따라 혹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자 수 비중 등에 따라 농업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봄
 - 셋째로, 동 제도의 감면범위와 조건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개인 농어업인이 세

50) 원래는 법인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나,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득 대신 매출액을 보았음

부담상 법인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함

- 넷째로, 동 제도의 시행 기간 중 두드러진 제도 개편이 시행된 시기를 전후하여 농업인들의 관련 행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함
 -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2000~2021년까지만 확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00년대에 개편된 내용 중 2019년 이전에 있었던 제도 개편을 선택함
 - 이에 따라, 2006년의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과 2014년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개편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함

□ 다만, 본 장에서의 분석으로 동 제도의 해당 내용에서의 효과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증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정책적 판단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둠

- 먼저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가 단위의 미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공개되어 있거나 부처에서 제공해 준 미시 자료들은 주요한 변수들이 미비하여 엄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법인단위에서의 농업소득 정보가 포함된 농업법인 미시 자료를 부처에서 제공해 주었으나 여기에는 농업가구에 대한 정보는 없고 법인의 자산, 부채, 소득, 설립연도, 출자 정보 정도만이 포함되어 있음
 - 반면, 농업총조사 미시 자료는 농업가구의 법인 참여여부 정보와 매출액(판매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농업가구의 소득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매출액도 범주로만 되어 있어 엄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농업인의 법인 참여여부에 대한 정보 및 농업법인들의 각종 관련 재무정보가 연결된 패널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도의 개편에 따른 행태변화 또한 분석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와 농가 매출액 간의 관계

□ 본 절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가 농업인의 매출액(총판매금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법인에 참여한 농업인의 총판매금액이 유의미하게 참여하지 않은 농업인에 비해 높다면 소득도 더 높을 개연성이 높음

가. 분석자료

- 본고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미시 자료임
 -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총조사(1960년~), 어업총조사(1970년~), 임업총조사(1998년~)로 각각 시행되던 것을 2010년부터 통합하여 매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이 중 농업총조사에 해당하는 최근 3회(2020년, 2015년, 2010년)의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함
 - 해당 자료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받아 수집함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가구단위의 미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구의 일반정보 및 농업활동 관련 정보 등이 방대하게 포함되어 있음
 - 가구 일반정보에는 행정구역, 가구원 수, 교육 정도(2020년만), 혼인상태, 세대 유형 등의 정보를 포함함
 - 행정구역의 경우, 201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통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류된 가구의 행정구역은 충청남도로 일괄적으로 수정함
 -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과거 충청남도에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임
 - 농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에는 논·밭 면적 및 시설온실 면적, 목초지 면적, 경작 유형, 총판매금액, 농업고용인수, 영농지역, 생산자조직별 참여여부, 전업 및 겸업 등의 정보를 포함함
 - 다만, 총판매금액은 각 가구의 정확한 숫자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범주형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 가구의 총판매금액이 속한 범위만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각 범위의 중위값을 사용함(예를 들어, '120~300만원'인 경우 210만원으로 적용)
 - 최상위 금액범주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2015년과 2020년에는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7억원으로 적용하고, 2010년에는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 경우 5억원으로 적용함
 - 매 조사마다 공통적으로 응답하는 변수도 있지만 매번 신규로 추가된 변수도 있어 다년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줄어들

□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IV-1>~<표 IV-4>와 같이 정리됨

<표 IV-1> 기초통계량(통합회귀분석 기준)

(단위: 만원, ha, 년, 가구)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총판매금액 | 1,781.268 | 4,991.252 | 0 | 70,000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0.079 | 0.269 | 0 | 1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0.005 | 0.072 | 0 | 1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0.001 | 0.031 | 0 | 1 |
| 논·밭 면적 | 1.174 | 2.839 | 0 | 813.46 |
| 시설온실 면적 | 0.044 | 0.254 | 0 | 88 |
| 목초지 면적 | 0.012 | 0.576 | 0 | 661.157 |
| 농업경력 | 32.373 | 18.527 | 1 | 89 |
| 겸업여부 더미(겸업=1) | 0.441 | 0.497 | 0 | 1 |
| 표본 수 | 3,301,029 | | |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 201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ha, 년, 가구)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총판매금액 | 1,744.304 | 4,800.605 | 0 | 50,000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0.057 | 0.231 | 0 | 1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0.003 | 0.053 | 0 | 1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0.000 | 0.016 | 0 | 1 |
| 논·밭 면적 | 1.231 | 2.480 | 0 | 506.88 |
| 시설온실 면적 | 0.045 | 0.287 | 0 | 88 |
| 목초지 면적 | 0.009 | 0.438 | 0 | 150 |
| 농업경력 | 33.256 | 17.533 | 1 | 80 |
| 겸업여부 더미(겸업=1) | 0.467 | 0.499 | 0 | 1 |
| 표본 수 | 1,177,318 | | |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3> 2015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ha, 년, 가구)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총판매금액 | 1,840.921 | 5,052.201 | 0 | 70,000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0.066 | 0.249 | 0 | 1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0.005 | 0.070 | 0 | 1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0.001 | 0.026 | 0 | 1 |
| 논·밭 면적 | 1.203 | 2.973 | 0 | 660.594 |
| 시설온실 면적 | 0.045 | 0.242 | 0 | 66 |
| 목초지 면적 | 0.013 | 0.501 | 0 | 198 |
| 농업경력 | 32.753 | 18.382 | 1 | 81 |
| 겸업여부 더미(겸업=1) | 0.450 | 0.498 | 0 | 1 |
| 표본 수 | 1,088,518 | | |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4> 202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ha, 년, 가구)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총판매금액 | 1,760.582 | 5,136.764 | 0 | 70,000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0.116 | 0.321 | 0 | 1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0.008 | 0.091 | 0 | 1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0.002 | 0.046 | 0 | 1 |
| 논·밭 면적 | 1.078 | 3.066 | 0 | 813.46 |
| 시설온실 면적 | 0.041 | 0.224 | 0 | 39.6694 |
| 목초지 면적 | 0.014 | 0.758 | 0 | 661.157 |
| 농업경력 | 30.968 | 19.664 | 1 | 89 |
| 겸업여부 더미(겸업=1) | 0.402 | 0.490 | 0 | 1 |
| 표본 수 | 1,035,193 | | |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분석방법

- 본 절에서는 각 연도 농업총조사에 대하여 각각 연도별 횡단면분석과 3개년 자료를 합친 통합회귀분석(pooled OLS)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함

- 기본적인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음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mu_t + \epsilon_{i,t} \quad \text{for } i = 1, \dots, I, t = 2010, 2015, 2020$$

y : 총판매금액

x : 법인 참여여부(영농조합법인만 참여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하는 경우 / 두 법인 모두 참여하는 경우 등 세 개의 더미변수 활용)

z : 각종 통제변수(지역더미, 논·밭 면적, 시설온실 면적, 목초지 면적, 교육수준 더미(2020년에만 적용), 농업경력, 겸업여부 더미 등)

μ : 연도더미

ϵ : 오차항

하첨자 i, t : 각각 개별 농업가구와 조사연도를 의미

- 또한, 표준오차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각 회귀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함
 -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는 회귀분석의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통상적인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로 t-value를 구할 경우, 잔차항의 등분산성(homoskedasticity)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들은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Huber-White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각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함
 - 또한, 최근에는 군집(cluster) 내에서 오차항의 상관관계는 허용하되 군집 간 독립을 전제하는 군집화(clustering)된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확대되고 있어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사용할 때의 결과도 함께 보여줌
 - 본고에서는 지역별 농업여건의 차이가 있어 각 지역 내 농업가구는 지역 농업여건을 공유하지만 지역 간 농업여건은 독립적일 가능성을 반영하여 각 광역시·도의 지역에 따라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적용함

다. 분석결과

- 각 연도 횡단면 회귀분석과 통합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표 IV-5>는 통합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표 IV-6> ~ <표 IV-8>은 각 연도별 (2010년, 2015년, 2020년) 횡단면 회귀분석의 결과임
- 각 결과의 좌측 열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한 경우이며, 우측 열은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적용한 것임

<표 IV-5> 통합회귀분석 추정결과

| 구분 | 강건한 표준오차 적용 시 | 군집화된 표준오차 적용 시 |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1,382.40*** (25.05) | 1,363.79*** (95.86)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2,073.12*** (79.03) | 2,071.41*** (168.80)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4,069.89*** (210.74) | 4,030.79*** (334.70) |
| 논·밭 면적 | 425.24*** (25.61) | 427.25*** (50.34) |
| 시설온실 면적 | 3,654.08*** (261.27) | 3,682.23*** (380.10) |
| 목초지 면적 | 439.88*** (158.20) | 444.97*** (132.75) |
| 농업경력 | -14.29*** (0.21) | -13.71*** (1.78) |
| 겸업여부 더미 | -684.63*** (9.84) | -689.32*** (77.75) |
| 상수 | 926.12*** (38.09) | 1,742.75*** (115.30) |
| 지역 더미 | Yes | 표준오차에 지역 군집 적용 |
| 연도 더미 | Yes | Yes |
| R-squared | 0.127 | 0.125 |

주: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통합회귀분석의 결과, 경작면적이나 경험, 겸업 등이 통제되었음에도 가구별 총판 매금액은 법인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
-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더 높은 매출액(총판 매금액)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류의 법인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은 가장 증가하였음

- 다만, 매출액이 원자료에서 각각의 숫자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범위로 부여되어 계수의 수치를 엄밀한 효과의 크기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천만원 단위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 매출액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인 참여를 통해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함
- 회귀분석상 관계는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절에서 다른 접근법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표 IV-6> 201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구분 | 강건한 표준오차 적용 시 | 균집화된 표준오차 적용 시 |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1,759*** (45.34) | 1,746*** (132.4)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1,873*** (162.7) | 1,858*** (279.3)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4,260*** (717) | 4,329*** (648.6) |
| 논·밭 면적 | 507.5*** (29.08) | 507.2*** (38.71) |
| 시설온실 면적 | 2,666*** (383.8) | 2,690*** (560.8) |
| 목초지 면적 | 532.8*** (84.28) | 542.1** (193) |
| 농업경력 | -21.08*** (0.378) | -21.42*** (2.17) |
| 겸업여부 더미 | -729.5*** (15.57) | -715.2*** (90.68) |
| 상수 | 1,281*** (73.74) | 1,935*** (135.2) |
| 교육 더미 | No | No |
| 지역 더미 | Yes | 표준오차에 반영 |
| 표본 수 | 1,177,318 | 1,177,318 |
| R-squared | 0.134 | 0.132 |

주: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7> 2015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구분 | 강건한 표준오차 적용 시 | 군집화된 표준오차 적용 시 |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1,628*** (44.65) | 1,599*** (85.78)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2,346*** (152.7) | 2,314*** (338.1)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3,849*** (412.5) | 3,765*** (515.6) |
| 논·밭 면적 | 408.0*** (37.11) | 409.6*** (45.47) |
| 시설온실 면적 | 3,964*** (380.7) | 3,993*** (357.6) |
| 목초지 면적 | 593.3*** (98.88) | 599.2*** (200.4) |
| 농업경력 | -13.63*** (0.339) | -13.28*** (1.833) |
| 결업여부 더미 | -571.2*** (14.39) | -576.5*** (73.82) |
| 상수 | 982.8*** (79.85) | 1,734*** (110.6) |
| 교육 더미 | No | No |
| 지역 더미 | Yes | 표준오차에 반영 |
| 표본 수 | 1,088,518 | 1,088,518 |
| R-squared | 0.128 | 0.126 |

주: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8> 202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 구분 | 강건한 표준오차 적용 시 | 군집화된 표준오차 적용 시 |
|---------------|---------------------|---------------------|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 더미 | 911.0*** (29.04) | 875.8*** (79.15) |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더미 | 1,849*** (106.2) | 1,840*** (242.5) |
| 두 법인 모두 참여 더미 | 3,886*** (260.2) | 3,823*** (391.3) |
| 논·밭 면적 | 362.6*** (47.59) | 367.2*** (73.32) |
| 시설온실 면적 | 4,863*** (218.1) | 4,889*** (535.1) |

<표 IV-8>의 계속

| 구분 | 강건한 표준오차 적용 시 | 군집화된 표준오차 적용 시 |
|-----------|----------------------|----------------------|
| 목초지 면적 | 328.4 (206.5) | 330.6* (176.8) |
| 농업경력 | 9.160*** (0.681) | 10.69*** (1.233) |
| 겸업여부 더미 | -896.9*** (17.88) | -931.8*** (84.93) |
| 상수 | -1,035*** (50.12) | -98.02** (46.01) |
| 교육 더미 | Yes | Yes |
| 지역 더미 | Yes | 표준오차에 반영 |
| 표본 수 | 1,035,193 | 1,035,193 |
| R-squared | 0.140 | 0.137 |

주: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단년도 회귀분석의 결과 또한 통합회귀분석과 동일한 양상이며,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참여와 매출액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함

○ 다른 변수들도 농업경력 변수를 제외하면 모두 통합회귀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부호로 나타남

- 경작지의 면적이 클수록, 겸업을 하지 않고 농업에 전업할 경우 매출액이 높다는 결과는 경제적 직관에 부합함
- 경작지 중에서도 온실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밭·목초지의 증가보다 매출액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온실재배 작물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다만, 농업경력의 경우 2010년, 2015년에는 통합회귀분석과 동일하게 음(-)의 부호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양(+)의 부호로 유의미하게 전환되었음
- 경력의 음(-)의 부호는 신형 농기계나 농기술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일 수 있음
- 이것이 가장 최근에 양(+)의 부호로 바뀐 것은 농업 자본재와 학습효과가 고령층에게까지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결과일 수 있음

-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느냐의 여부는 해당 농업인 가구의 매출액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매출액에 대한 법인 참여 변수들은 일관적으로 모든 분석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성을 나타냄
 - 그렇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이러한 상관성을 법인 참여와 매출액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단정 짓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음
 - 다음 절에서 살펴볼 내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인과관계(즉, 매출액이 큰 농가에서 법인 참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행태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농업법인의 종류 및 출자 특성과 농업소득 간의 관계

- 본 절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법인의 종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와 출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제1절에서는 가구 단위에서 농업인 개인이 법인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판매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음
 - 본 절에서는 법인 차원에서 법인의 종류나 법인의 출자 특성에 따라 법인에서 창출하는 농업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가. 분석자료

- 본고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 심층평가를 위해 별도로 제공해 준 농업법인 실적에 대한 미시 자료임
 - 해당 미시 자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의 기초적인 재무정보를 패널로 구축한 자료임
 - 해당 자료에 포함된 재무정보에는 농업인/비농업인 출자자 수, 농업인/비농업인 출자액, 자산, 부채,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등임
 -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출자자 비중, 농업인 출자액 비중, 총출자금액 등의 변수를 생성하였고, 여기에 설립연도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업력 변수도

생성하여 활용함

- 분석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총 표본의 크기는 8만 6,937개로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함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받은 농업법인 실적에 대한 미시 자료에 있는 재무 정보 중 비록 항목은 있으나 적절하게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됨
 - 농업법인이면서 농업인 출자자가 없는 경우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표본 중 1,699개 존재함
 - 또한, 자산과 출자금 항목을 0으로 응답한 법인이 다수 존재함
 - 예를 들어, 자산이 0인 표본은 55,545개에 달하였고,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 비농업인 출자금)이 0인 경우도 3,570개이었음
 - 특히, 자산이 0인 관측치 수가 전체 표본의 60%가 넘어 모든 이상치를 삭제한 자료로만 분석하는 것도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 조직이 잘 꾸려진 법인이 아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식을 법인에서 작성할 때 출자자 정보나 소득 정보는 응답하고 나머지 자산, 부채 항목은 응답을 무시하면서 0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 상존
 - 이러한 관측치를 모두 제외시킬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존재가 우려됨

- 따라서 패널 분석을 진행할 때는 두 가지로 표본을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따로 분석을 진행함
 - 먼저, 출자 정보의 이상치만을 제외하고 자산 변수의 이상치는 내버려둔 채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되 통제변수에 자산, 부채에 대한 것은 제외함
 - 농업인 출자자가 0보다 크지 않은 경우와 총출자액이 0 이하로 기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관측치(4,214개)는 제외시킴
 - 농업인 출자자 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도 작성 오류(출자금액과의 혼동 등)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변수값이 1만명 이상인 관측치(1,540개)도 제외함
 - 다음으로 모든 이상 수치들을 제외한 뒤 활용할 만한 변수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패널 분석을 진행함
 - 관측치 삭제 과정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함
 - 법인종류 변수는 더미로 만들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1을 부여하고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0을 부여함

- 한편, 변수를 선정할 때 농업인 출자자 비중과 농업인 출자액 비중은 서로 상관성이 상당히 높아 이 중 출자액 비중만 통제변수에 포함시킴

<표 IV-9> 변수 간 상관관계

| 변수 | 법인종류 더미 | 업력 | 농업인 출자자 수 | 농업인 출자자 비중 | 농업인 출자액 비중 | 총출자액 |
|------------|---------|--------|-----------|------------|------------|------|
| 법인종류 더미 | 1 | | | | | |
| 업력 | 0.3109 | 1 | | | | |
| 농업인 출자자 수 | 0.0144 | 0.0129 | 1 | | | |
| 농업인 출자자 비중 | 0.5033 | 0.1054 | 0.0123 | 1 | | |
| 농업인 출자액 비중 | 0.4346 | 0.1212 | 0.0052 | 0.7951 | 1 | |
| 총출자금액 | -0.0173 | 0.007 | 0.0009 | -0.0194 | -0.0282 | 1 |

주: 관측치 수는 80,538개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두 가지로 나눈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IV-10>과 같음

<표 IV-10> 기초통계량

| 변수 | 관측치 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출자 정보의 이상치만 제외한 표본 | | | | | |
| 농업소득(천원) | 81,183 | 773,811 | 1.02E+08 | -364,320 | 2.81E+10 |
| 법인종류 더미 | 81,183 | 0.509 | 0.500 | 0 | 1 |
| 업력(년) | 81,183 | 8.566 | 5.875 | 1 | 62 |
| 농업인 출자자 수(명) | 81,183 | 22.300 | 279.153 | 1 | 9,750 |
| 농업인 출자액 비중 | 80,547 | 0.841 | 0.287 | 0 | 1 |
| 총출자금액(천원) | 80,547 | 1.84E+07 | 3.00E+08 | 1 | 2.73E+10 |
| 출자 정보 및 자산 수치의 이상치를 모두 제외한 표본 | | | | | |
| 농업소득(천원) | 28,887 | 1,984,222 | 1.70E+08 | -364,320 | 2.81E+10 |
| 법인종류 더미 | 28,887 | 0.488 | 0.500 | 0 | 1 |
| 업력(년) | 28,887 | 8.177 | 5.799 | 1 | 62 |
| 농업인 출자자 수(명) | 28,887 | 24.635 | 295.637 | 1 | 9,750 |
| 농업인 출자액 비중 | 28,529 | 0.814 | 0.305 | 0 | 1 |
| 자산(천원) | 28,887 | 7,460,099 | 2.65E+08 | 1,000 | 2.63E+10 |
| 총출자금액(천원) | 28,529 | 21,100,000 | 3.68E+08 | 1 | 2.73E+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분석방법

- 본 절에서는 농업법인의 기초적인 재무정보에 대한 2016~2022년까지의 미시 자료를 가지고 패널회귀분석(panel OLS)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함
 - 기본적인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음

$$\ln y_{n,t} = \alpha + \beta x_{n,t} + u_{n,t} \quad \text{for } n = 1, \dots, N, t = 2016, \dots, 2022$$

y : 농업소득

x : 영농조합법인 더미, 업력, 농업인 출자자 수, 농업인 출자액 비중, 로그 자산, 로그 총출자금액(로그 자산의 경우, 자산변수의 이상치를 제거한 표본에 대해서만 적용)

u : 잔차항

하첨자 n, t : 각각 개별 농업법인과 조사연도를 의미함

- 또한 제1절과 유사하게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추정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함
 - 잔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을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자료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다. 분석결과

- 분석 자료에 따라 구분하여 실행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V-11>과 같이 정리됨
 - 자산변수에서 이상치를 제거한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에 따라 결과는 일부 다르게 나타남
 - 출자 특성 이상치만 제거한 표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법인의 농업소득이 1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 이상치까지 제거한 표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이 약 120% 더 높게 나타남
 - 출자 특성 이상치만 제거한 표본에서는 업력이 짧을수록 농업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 이상치까지 제거한 표본에서는 업력이 길수록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11>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 ln(농업소득) | 출자 특성 이상치만 제거 | 출자 특성 및 자산 이상치 제거 |
|------------|----------------------|---------------------|
| 영농조합 더미 | 0.157 (0.357) | 1.209 (1.132) |
| 업력 | -0.229*** (0.015) | 0.392*** (0.037) |
| 농업인 출자자 수 | -0.0002 (0.0002) | -0.0002 (0.0003) |
| 농업인 출자액 비중 | -1.242** (0.517) | -2.555** (1.074) |
| ln(총출자금액) | 0.093*** (0.026) | 0.146* (0.075) |
| ln(자산) | (제외) | 0.487*** (0.116) |
| 상수항 | 3.957*** (0.683) | -5.955** (2.593) |
| 고정효과 | Yes | Yes |
| 법인 수 | 18,811 | 10,536 |
| 관측치 수 | 80,282 | 28,265 |

주: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강건한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여 유의수준을 결정함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재무정보를 응답할 때 자산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5만 5천여 개의 법인들이 자산 정보까지 실질적으로 기입한 법인들과 유의미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예를 들어, 일감이 많은 신규 농업회사법인이 서식 작성을 안일하게 여겨 주요 항목(출자자 수, 출자액, 소득금액 등) 외의 다른 항목(자산, 부채 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업력이 짧고 농업소득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이 자산 이상치를 제거하면서 대부분 표본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음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총출자금액이 클수록, 농업인 출자액의 비중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은 증가하였다는 점임
 - 이는 비농업인의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법인의 농업소득 증대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정책입안 시 주의해야 할 결과로 판단됨

3. 조세지출 구조상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유인

- 본 절에서는 동 제도의 세금감면 범위를 살펴보면서 구조적으로 제도가 개인 농업인으로 하여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함
-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 감면 수준)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농어업 사업소득의 세금감면을 비교함
 - 기본적으로 농업에서는 식량작물의 재배를 통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전부 과세대상이 아님
 - 즉, 법인과 개인 간에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 구간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구간은 차이가 있으며, 농업 관련 일반기업은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사항이 존재함
 -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15~30% 감면(『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이 농업활동에서 창출한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배당해야 개별 농업인의 소득으로 최종 귀속될 것이므로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

<표 IV-12>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한도

| 소득 구분 | 개인사업자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
|--------------|----------------------------------|---|--|-----------------------------------|
|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 전액 비과세 | 전액 비과세 | 전액 비과세 | 3,0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 소득금액 한도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 소득금액 한도 | 3,0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
| 농가부업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업 소득 비과세 |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

자료: 홍범교 외(2021), p. 139.

〈표 IV-13〉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법인세 적용세율

| 개인사업자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9%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1%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000억원 초과 | 24% |
| 10억원 초과 | 45% | | |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표 IV-14〉 법인별 배당소득세 감면 한도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
|-----------|---|--|------------------------------|
| 배당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 출자자의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면세 |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
|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5% 저율분리과세 |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5% 저율분리과세 |

자료: 홍범교 외(2021), p. 43.

가.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1)

-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각각 15억원인 농업인 3명이 개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와 공동출자한 법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부담액을 계산함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중 10%가 소득금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활동을 할 경우, 각 개별 농업인은 법인소득 100%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각각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가장 유리하게 계산됨
 - 개인사업자로는 농업인 3명 각각의 수입금액 15억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1억 5,000만원 중 수입금액 5억원에서 발생한 5,000만원만이 과세대상 소득이 됨
 - 3명이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세울 경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수입금액 6억원이므로 소득의 60%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배당과정에서 비과세 범위를 제외한 뒤 배당소득세(5%)도 납부함
 - 3명이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경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수입금액 50억원이므로 법인세는 전액 면제되나, 배당과정에서 배당소득세(14%)를 납부해야 함
 - 결과적으로, 아래 <표 IV-15>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납세부담이 가장 적으며 그 뒤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순서임

<표 IV-15> 사례 1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구분 | 개인사업자(각자) | 영농조합법인(3인) | 농업회사법인(3인) |
|-------------|---------------------|-----------------------|----------------------|
| 수입금액 | 15억원 | 45억원 | 45억원 |
| 소득금액 | 1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 과세소득 | 5천만원 | 2억 7천만원 | 0원 |
| 사업소득 과세금액 | 624만원 ¹⁾ | 2,191만원 ²⁾ | 0원 |
| 세후 소득금액 | 1억 4,376만원 | 4억 2,809만원 | 4억 5천만원 |
| 배당소득 과세금액 | - | 1,960만원 ³⁾ | 6,300만 ⁴⁾ |
| 최종 1인당 소득금액 | 1억 4,376만원 | 1억 3,616만원 | 1억 2,900만원 |

주: 1) 과세소득이 5천만원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적용하여 산출

2)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 및 소득구간별 법인세 세율,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에 의한 추가 감면(30%)까지 적용하여 산출

3) 영농조합법인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하여 5% 저율분리과세 적용하여 산출

4) 농업회사법인에서 배당소득세는 과세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 14%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저자 작성

나.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2)

-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각각 1억원인 농업인 3명이 개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와 공동출자한 법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부담액을 계산함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중 10%가 소득금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활동을 할 경우, 각 개별 농업인은 법인소득 100%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각각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농업회사법인만이 불리하게 계산됨
- 식량작물이 아니라도 작물재배업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임
 -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소득도 비과세 한도 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발생함
 - 결과적으로, 아래 <표 IV-16>과 같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은 세부담이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라면 배당소득세율만큼의 세부담을 지불해야 함

<표 IV-16> 사례 2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구분 | 개인사업자(각자) | 영농조합법인(3인) | 농업회사법인(3인) |
|-------------|------------------|------------------|---------------------|
| 수입금액 | 1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사업소득 과세금액 | 0원 ¹⁾ | 0원 ¹⁾ | 0원 ¹⁾ |
| 세후 소득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배당소득 과세금액 | - | 0원 ¹⁾ | 420만원 ²⁾ |
| 최종 1인당 소득금액 | 1천만원 | 1천만원 | 860만원 |

주: 1)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모두 과세대상이 아님

2)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로 14% 세율 적용

자료: 저자 작성

다.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소수의 농업인과 다수의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한 농업인(사례 3)

-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30억원인 농업인 1명과 1억원인 농업인 10명이 각자 개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와 공동출자한 법인사업자로 납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부담액을 계산함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중 10%가 소득금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활동을 할 경우, 각 개별 농업인은 법인소득 100%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각각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고액 수입금액을 가진 소수의 농업인 입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이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대상금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커서 법인세 납부에서 혜택이 1차적으로 발생함
 -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서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추가적인 비과세 소득 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비합산되는 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가장 유리함
 - 농업회사법인은 비록 영농조합법인만큼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14% 단일세율로 조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인소득세보다는 세금이 적게 부과됨
 - 결과적으로,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는 아래 <표 IV-17>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할 때 납세부담이 가장 적으며 그 뒤로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순서임
 - 다수의 저소득자들에게는 개인사업자 대신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여도 세부담상에서의 불이익은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으로 참여할 경우 일부 불이익이 발생함

<표 IV-17> 사례 3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 구분 | 개인사업자(각자) | | 영농조합법인(11인) | | 농업회사법인(11인) | |
|--------------|-----------------------|------|-------------|----------|-------------|----------|
| | 30억원 | 1억원 | 30억원(1인) | 1억원(10인) | 30억원(1인) | 1억원(10인) |
| 수입금액 | 30억원 | 1억원 | 40억원 | | 40억원 | |
| 소득금액 | 3억원 | 1천만원 | 4억원 | | 4억원 | |
| 과세소득 | 2억원 | 0원 | 0원 | | 0원 | |
| 사업소득 과세금액 | 5,606만원 ¹⁾ | 0원 | 0원 | | 0원 | |
| 세후 소득금액 | 2억 4,394만원 | 1천만원 | 4억원 | | 4억원 | |
| | | | 3억원 | 1억원(10인) | 3억원 | 1억원(10인) |

<표 IV-17>의 계속

| 구분 | 개인사업자(각자) | | 영농조합법인(11인) | | 농업회사법인(11인) | |
|----------------|---------------|------|-----------------------|----------|-----------------------|----------|
| | 30억원 | 1억원 | 30억원(1인) | 1억원(10인) | 30억원(1인) | 1억원(10인) |
| 배당소득 과세금액 | - | - | 1,440만원 ²⁾ | 0원 | 4,200만원 ³⁾ | 140만원 |
| 최종 1인당 소득금액 | 2억 4,394만원 | 1천만원 | 2억 8,560만원 | 1천만원 | 2억 5,800만원 | 860만원 |

주: 1) 과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적용하여 산출

2) 영농조합법인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하여 5% 저율분리과세 적용하여 산출

3) 농업회사법인에서 배당소득세는 과세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 14%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 유형이 있겠으나, 적어도 이러한 사례는 대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에게 법인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식량재배업에 따른 소득은 사업자 유형에 무관하게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타 작물재배업에 따른 소득이나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참여할 유인이 발생함
- 특히, 법인세에서의 감면효과와 배당소득세에서의 감면효과가 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유불리는 출자자(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제1절에서 나타난 법인 참여여부와 농가 매출액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임

- 양(+)의 상관성은 농업인들이 법인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여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매출액이 높은 농업인들이 절세를 위해 법인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함
- 이러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통제해야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 참여와 매출액의 양의 관계가 인과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4. 조세지출제도 개편에 따른 행태 변화 여부

- 효과성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동 조세지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개편사항 중 주요한 개편내용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가장 이상적으로는 제도 도입 전과 후를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법인집단을 구분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해야겠으나, 동 제도는 시행된 지가 이미 짧게는 26년(영어조합법인)에서 길게는 34년(영농조합법인)이 지난 상황임
 - 제도 도입 시점부터의 통계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최근 자료들도 미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 본 절에서는 분석이 되는 개편내용으로 2006년의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과 2014년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을 선정함
 - 농업법인들에 대한 자료는 주로 통계청의 농업법인조사를 바탕으로 함
 - 농업법인조사는 법인들의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개별 법인 단위의 미시 자료가 아닌 연도별 법인 평균값을 제공하고 있어 엄밀한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함
 -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00~2021년 사이에서 변경 전후 시기를 몇 년이라도 살필 수 있는 개편사항에 초점을 맞춤
 -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에서 제도 개편된 사항을 대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효과도 엄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성향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이나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등의 계량경제적 기법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하겠으나 자료의 한계로 본 절에서는 약식의 개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제도 개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법인조사의 연간 법인 평균값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우선은 제한된 표본 수를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간단하게 진행하거나, 제도 전후의 평균치의 추세를 그래프로 살펴보고 추세변화가 얼마나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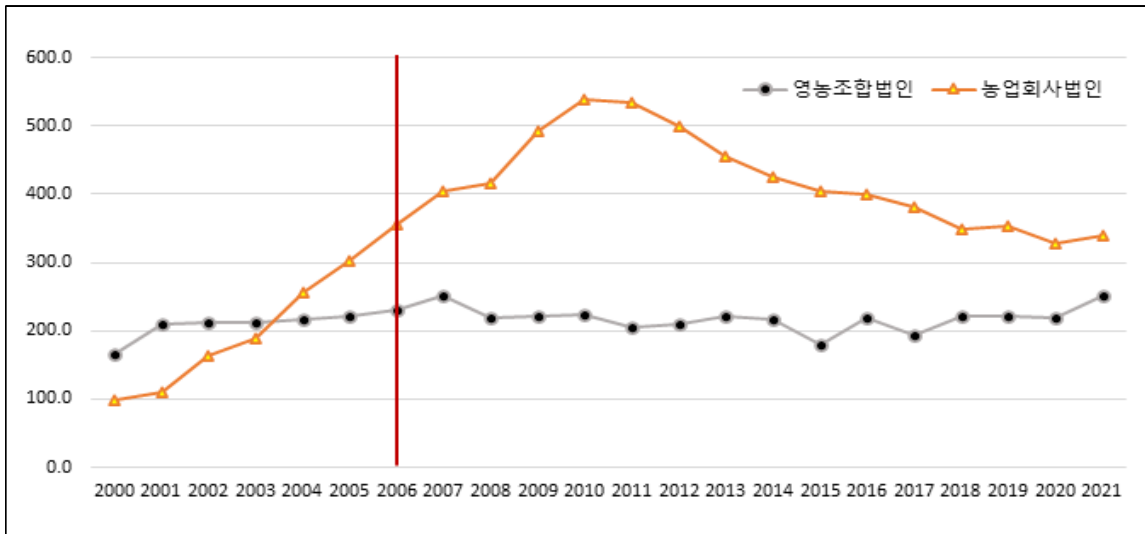
- 미하게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조변화검정(structural break test)을 시도함
-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볼 만한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표본 수가 적더라도 이중차분법을 적용함

가.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의 효과

- 동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에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과세함
- 해당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예상해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행태변화로 출자자 및 출자금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기대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신설로 인해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출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음
 - 출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은 출자자 수가 증가하거나 1인당 출자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우선, 법인당 평균 출자금 규모는 2006년 전후 변화흐름이 두드러지지 않음
 -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06년을 전후하여 농업회사법인에서의 법인당 출자금에서 추세가 바뀌었다고 눈에 띄는 사항은 없음
 - 출자법인 수도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이나 정책변화 전후 4개년 정도로 범위를 한정하여 확대하면 농업회사법인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의 증가세가 약간 강화된 듯 보이므로 단순하게라도 계량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비농업인의 비중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은 변동성이 눈에 띄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그림 IV-1] 법인당 출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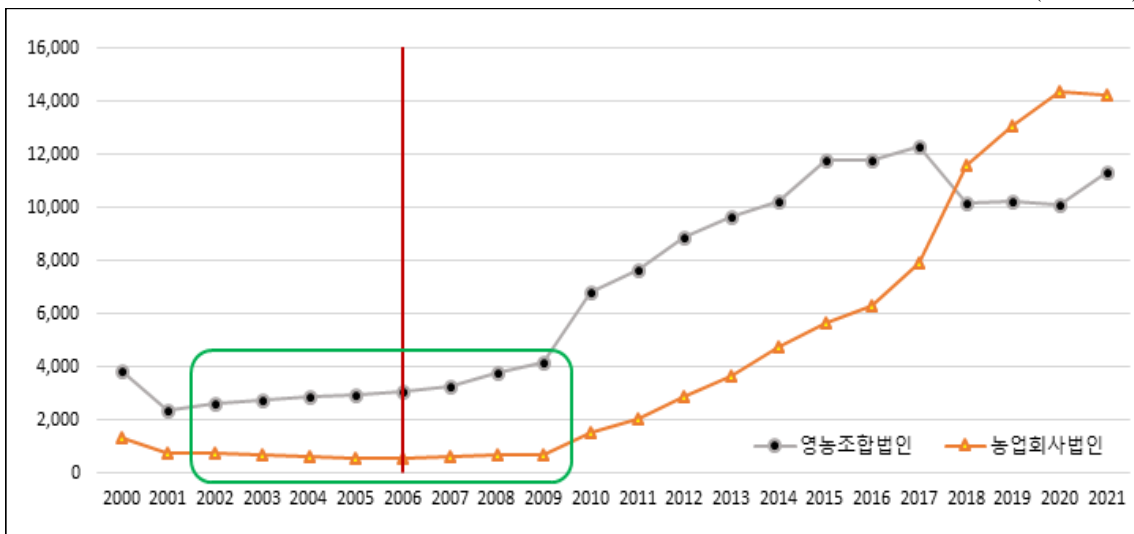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 출자법인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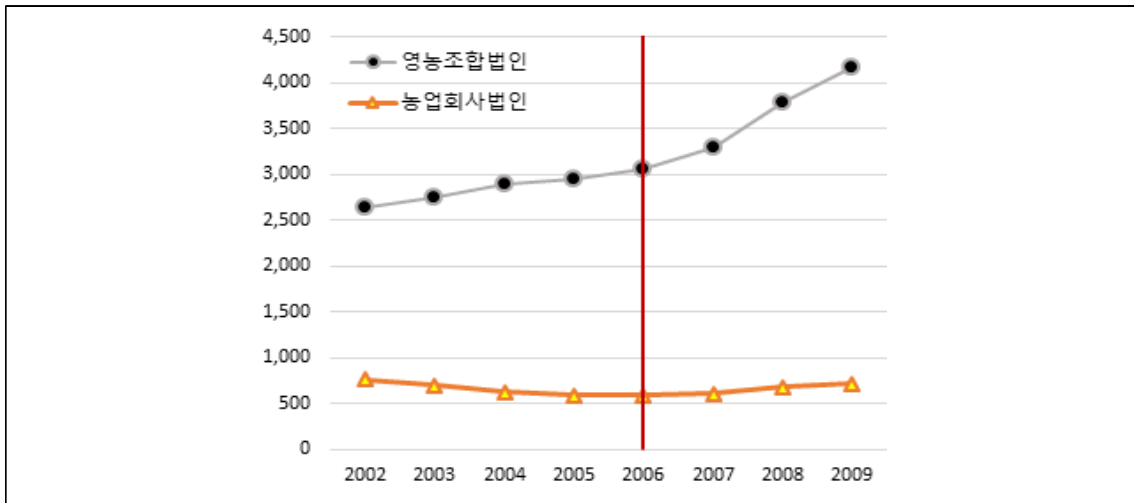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3] 출자법인 수 추이(2002~2009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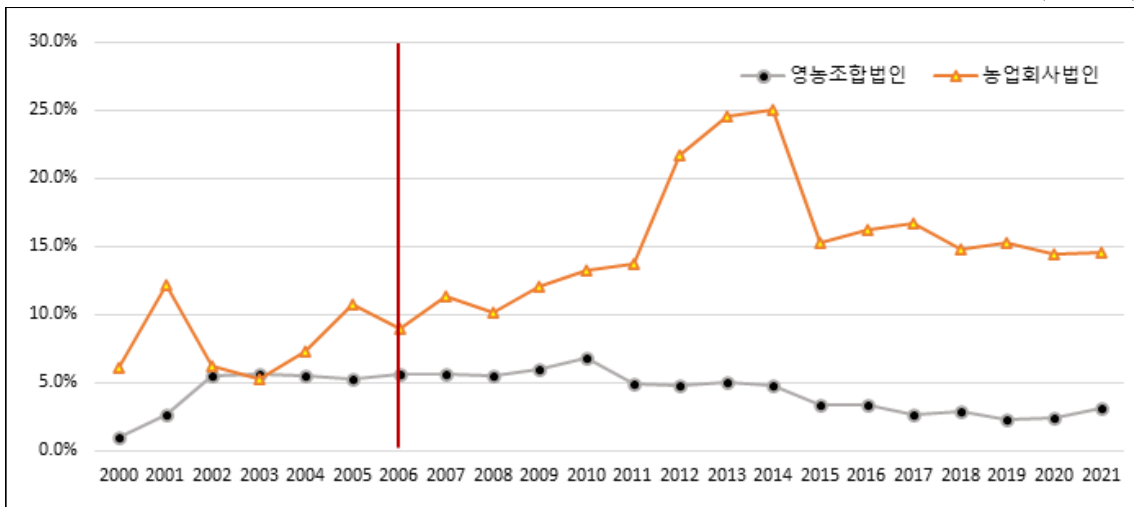
(단위: 개)



주: [그림 IV-2]의 초록색 범위만 확대하여 보여줌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4]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를 통계적으로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에 대하여 2006년부터 그 이후에 추세선의 기울기가 유의미하게 바뀌었는지 이중차분법으로 회귀 분석함
- 해당 제도변화는 농업회사법인에만 적용되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도는 바뀐 것이 없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을 처치군, 영농조합법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중차분법을 진행함

- 추세를 감안할 때 해당 제도변화 외 다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변화 전 4년(2002~2005년)과 변화 후 4년(2006~2009년)을 분석함
-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회귀식에서 α_2, β_2 가 0과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확인함

$$Diff_t = \alpha_1 + \alpha_2 D_t + \beta_1 t + \beta_2 D_t t + \eta_t$$

$Diff_t$: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간 연도별 평균 차분값

t : 시간변수(“각 연도 - 1999”로 값 부여)

D : 2006년부터 그 이후에 대한 시기더미

η : 오차항

- 또한, 종속변수인 1차 차분값을 출자금 외에도 출자 법인 수나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분석을 추가함

□ (분석결과) 2006년을 전후로 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법인당 평균 출자금 규모에서 유의미한 추세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음

- 영농조합법인은 2002~2009년 사이 법인당 출자금액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농업회사법인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평균 4,717만원가량의 법인당 평균 출자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출자금이 연평균 약 104만원 증가함

- 그러나 두 법인 간 격차의 추세가 2006년 전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바뀌지는 않음

<표 IV-18> 법인당 출자금액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법인당 평균 출자금액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계수 추정값 |
|---|--------------------|
| 시간(β_1) | 45.61*** (3.54) |
| 2006년 이후 더미*시간(β_2) | 3.10 (8.42) |

<표 IV-18>의 계속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법인당 평균 출자금액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계수 추정값 |
|---|-----------------------|
| 2006년 이후 더미(α_2) | -33.39 (66.99) |
| 상수(α_1) | -193.82*** (20.26) |
| R-squared | 0.9901 |

주: 1.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은 제도변화 후 증가율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은 제도변화 전 소폭 감소세에서 제도변화 후 소폭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둘 간의 격차변화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음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은 2006년이 되기 전 4년 동안에는 연평균 1.5%p가량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4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1.0%p 정도로 증가율 수치가 완화됨
 -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도 2006년이 되기 전 4년 동안에는 연평균 0.07%p가량 감소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4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0.09%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화함
 - 이러한 수치들 역시 평균의 변화이기 때문에 전체 미시 자료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는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표 IV-19>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계수추정값 |
|---|-------------------|
| 시간(β_1) | 0.016 (0.008) |
| 2006년 이후 더미*시간(β_2) | -0.009 (0.008) |
| 2006년 이후 더미(α_2) | 0.042 (0.047) |

<표 IV-19>의 계속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계수추정값 |
|---|-------------------|
| 상수(α_1) | -0.054 (0.038) |
| R-squared | 0.8029 |

주: 1.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출자법인 수는 제도변화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출자법인 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2006년 이전까지는 4년간 연평균 57개가량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6년 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신설되면서 4년간 연평균 44개가량 증가하여 추세가 반전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제도변화 전에는 연평균 102개씩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평균 369개씩 증가하여 증가세가 더 강화됨
 - 두 법인의 증가세 격차(1차 차분)는 제도변화 전 159개에서 변화 후 326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현재는 평균값의 분포이므로 개별 법인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때 통계적 유의성은 보다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수가 감소하던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정책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영농조합법인 수와의 격차는 더 확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도 영농조합법인 수와의 격차이지 단순 농업회사법인 수의 변화가 아님

<표 IV-20> 출자법인 수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출자법인 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계수추정값 |
|--|---------------------|
| 시간(β_1) | 164.7*** (12.84) |
| 2006년 이후 더미*시간(β_2) | 171.0*** (27.51) |

<표 IV-20>의 계속

(표본 수: 8개)

| 종속변수: 1차 차분된 출자법인 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계수추정값 |
|--|-------------------------|
| 2006년 이후 더미(α_2) | -1,322.8*** (236.75) |
| 상수(α_1) | -1,401.1*** (45.99) |
| R-squared | 0.9942 |

주: 1.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의 과세전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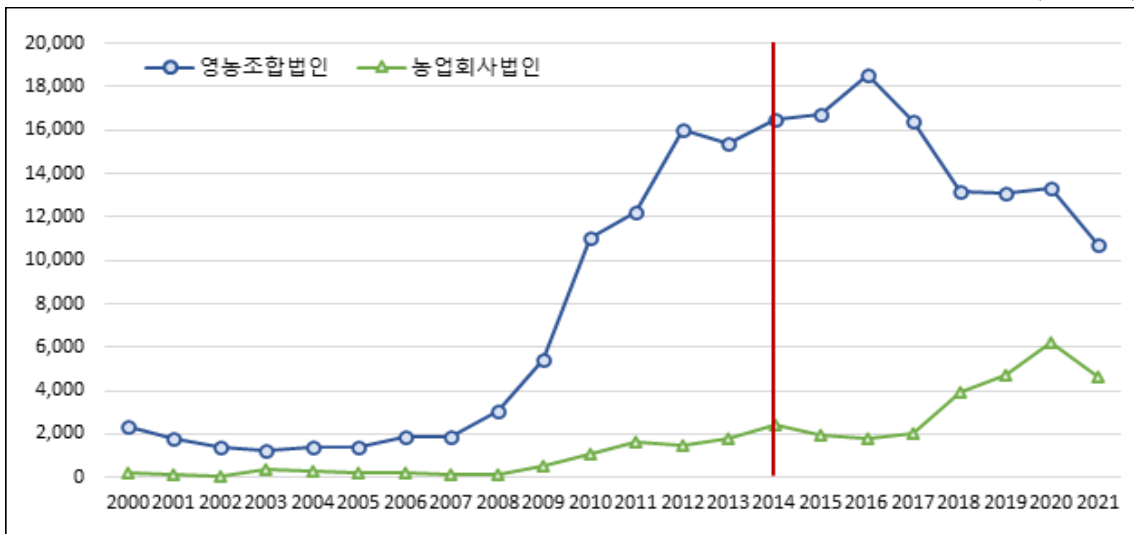
- 동 제도와 관련하여 2014년에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한도를 두어 일부 과세전환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까지만 세금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기로 함
 - 농업회사법인 또한 수입금액 50억원 이하까지만 세금을 면하여 주고, 이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이 됨
 - 해당 제도변화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마땅한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려워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어려움

- 해당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예상해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행태변화로는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 식량 외 작물재배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해당 작물의 재배 수익성이 식량작물 재배 수익성을 하회하게 된다면 재배작물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과 전체 작물재배면적에서의 비중 추세를 살펴봄
 - 식량 외 작물은 농업법인조사 자료에서 재배작물 중 화훼, 사료작물, 종자·종묘,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함

- 먼저, 그래프로 볼 때 법인당 평균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규모는 2014년 전후 변화 양상이 존재함
 - 재배면적의 경우 2014년부터는 아니지만 2016년부터 면적의 변화가 명확함
 - 재배면적 중 식량 외 작물의 비중으로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2014년을 기점으로 비중이 하락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V-5]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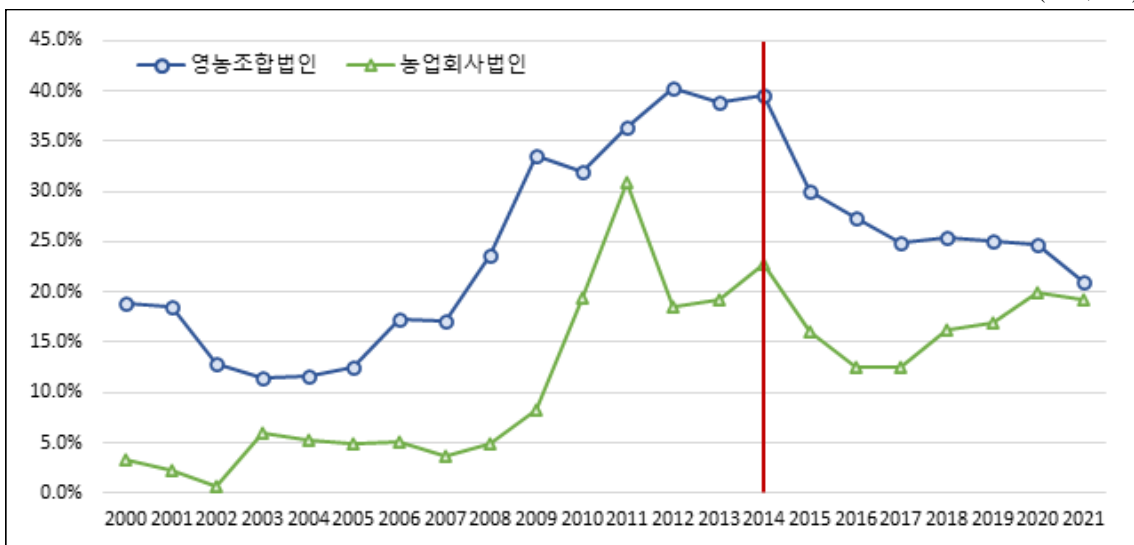
(단위: m²)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6]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를 통계적으로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에 대하여 2014년부터 그 이후에 추세선의 기울기가 유의미하게 바뀌었는지 회귀 분석함
 - 상술한 바와 같이 해당 제도변화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단순하게 법인 종류별로 제도변화 전후로 추세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후분석(Before-After-Analysis)으로만 진행함
 - 즉, 아래의 회귀식에서 γ_2 가 0과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확인함

$$C_t = \alpha + D_t + \gamma_1 t + \gamma_2 D_t t + \theta_t$$

C : 법인당 평균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혹은 그 비중
 t : 시간변수(“각 연도 - 1999”로 값 부여)
 D : 2014년부터 그 이후에 대한 시기더미
 θ : 오차항

- 이러한 분석을 농업회사법인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실시함
 - 제도가 바뀌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액 변화도 함께 비교하고자 함

- (분석결과) 2014년을 전후로 하여 2021년까지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법인당 평균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규모에서 유의미한 추세변화가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은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역방향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됨

<표 IV-21>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표본 수: 12개)

| 종속변수: 법인당 평균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
| 시간(γ_1) | 207.3*** (58.91) | 1,663*** (360.9) |
| 2014년 이후 더미*시간(γ_2) | 355.1* (175.1) | -2,580*** (421.6) |
| 2014년 이후 더미(α_2) | -5,868* (3120) | 38,890*** (5966) |
| 상수(α_1) | -1,071 (804.7) | -7,120 (4126) |
| R-squared | 0.811 | 0.772 |

주: 1.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22>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표본 수: 12개)

| 종속변수: 법인당 평균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
| 시간(γ_1) | -0.013 (0.020) | 0.024** (0.008) |
| 2014년 이후 더미*시간(γ_2) | 0.014 (0.021) | -0.044*** (0.010) |
| 2014년 이후 더미(α_2) | -0.232 (0.307) | 0.565*** (0.159) |
| 상수(α_1) | 0.377 (0.272) | 0.065 (0.100) |
| R-squared | 0.287 | 0.861 |

주: 1.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계수에 상첨되는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면적의 비중도 2014년 전후에서 유의미한 추세변화가 나타남
 -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의 하락추세로의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남

- 식량 외 작물재배업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시키는 제도 변화였기 때문에 세금감면 축소효과가 식량 외 작물과 식량작물 간의 수익성의 순위를 바꿀 경우 재배할 작물의 선택에 있어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임
 -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해당 제도 개편의 효과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그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는 하나 출자금액, 출자법인 수,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모두에서 정책입안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평균적인 변화는 있었음
 - 평균적으로 2006년 이후 법인당 출자금액은 소액이라도 증가하였고, 출자법인 수의 감소폭은 완화되었으며, 비농업 출자자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추가로 시계열적인 구조적 추세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순차적인 F-검정(sequential F-test)을 활용함
 - 순차적인 F-검정은 알려진 구조적 변화(known structural breaks)뿐 아니라 특정 기간에 구조적 변화가 몇 번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 알려진 구조적 변화는 해당 시점에 대한 Wald 검정값(Wald test statistic)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진 변화인지를 검정함
- 알려지지 않은 구조적 변화는 특정 기간에 구분점(break points)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구분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Bai & Perron의 임계값(critical values)을 활용하여 판정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과 그 비중에 대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값을 사용함

□ (분석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경우 2017년에 명백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알려진 시점(2014년)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정한 결과,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바뀌었으나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자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IV-23> 참조)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비중은 1% 유의수준에서도 귀무가설이 기각될 정도로 명백하게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구조적 변화 개수와 그중 2014년이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4년에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남(<표 IV-24> 참조)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은 2014년보다는 2017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그래프 분석과 맥락을 함께 함

<표 IV-23> 2014년의 구조적 변화 여부 검증 결과

| H0: no break vs. H1: 1 break | | W(τ) | p-value(F) |
|------------------------------|----------------|-------------|------------|
| 영농조합법인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0.73 | 0.40 |
|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 17.31 | 0.00 |
| 농업회사법인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1.13 | 0.29 |
|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 11.27 | 0.00 |

주: p-value는 귀무가설(H₀)이 맞다고 가정할 때 지금 이상으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24> 분석기간(2000~2021년) 중 구조적 변화 개수 추정 결과

| 2000~2021년 중 법인별 구조적 변화시점 | | | Test Statistic |
|---------------------------|----------------|-------|----------------|
| 영농조합법인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2002년 | 44.90*** |
| | | 2009년 | 19.04*** |
| | | 2017년 | 16.95*** |
|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 2008년 | 36.32*** |
| | | 2014년 | 15.89*** |
| 농업회사법인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 2017년 | 41.25*** |
| |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 2009년 | 23.93*** |
| | | 2014년 | 14.00*** |

주: 검정값에 상첨된 ***는 Bai & Perron 임계값에 의해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5. 소결

- 본 장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의 필요성,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 관계, 농업법인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 제도 변화 시 효과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함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의 필요성을 보기 위하여 농업법인에 참여한 농민이 참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때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였는지를 분석함
 - 이를 위해 농업총조사(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총판매금액을 종속변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참여 여부를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연도별·합산 회귀분석을 구분하여 실행함
 - 경작지 면적, 시설 면적, 목초지 면적, 농업경력, 전업 여부, 지역(광역시·도) 등을 통제함
 - 분석결과, 모든 연도와 합산에서 공통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한 경우 농가의 총판매금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모두 참여⁵¹⁾(4,069.9만원)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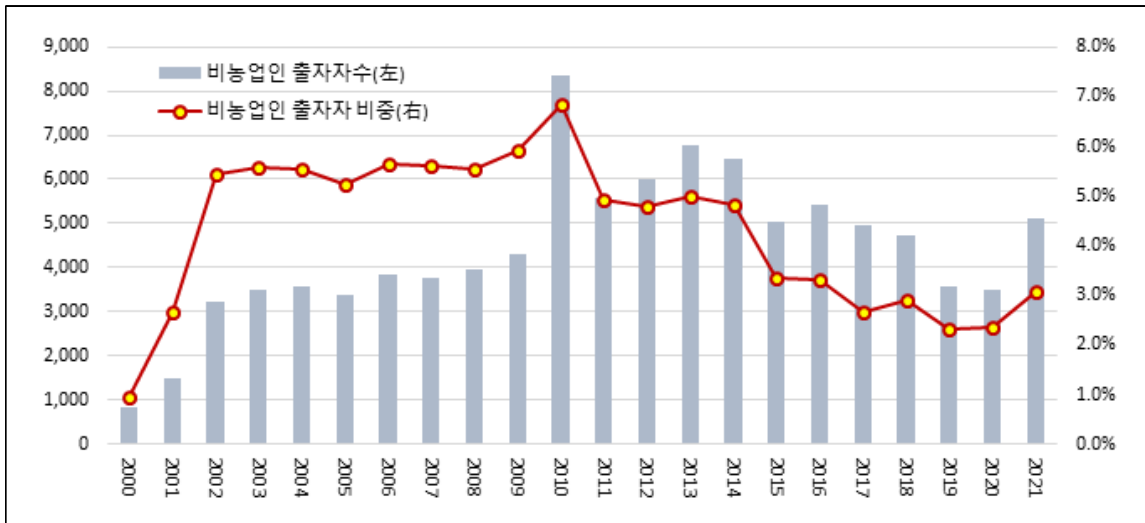
51) 2020년 기준, 총 1,035,193가구 중 2,177가구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동시 가입하여 약 0.2% 정도가 양 법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음

(2,073.1만원)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1,382.4만원)'의 순으로 매출증가효과가 나타남

-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비농업인 출자정보(출자자 수, 출자금액)와 해당 법인의 농업소득 간의 회귀분석을 실행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제공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농업법인의 기초 재무정보가 포함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18,811개의 농업법인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자산 변수가 이상치인 관측치가 전체의 60% 이상 되어 분석에 한계는 있음
 - 분석결과, 농업인 출자액의 비중이 낮을수록 총출자금액이 클수록 법인의 농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함
 - 자산규모도 클수록 농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은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이 더 높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는 아니었음
 - 반면, 업력과 농업소득 간의 관계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부호로 나타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 중 특히 총출자금액이 클수록, 농업인 출자액의 비중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이상치 처리 방식에 무관하게 일관적인 결과로 나타남
 - 이는 비농업인의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법인의 농업소득 증대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정책입안 시 주의해야 할 결과로 판단됨
 - 참고로,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조합원) 비중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아니어서 비농업인의 출자와 관련한 제도개편 필요성은 좀 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논해야 할 것임([그림 IV-7], [그림 IV-8] 참조)

[그림 IV-7]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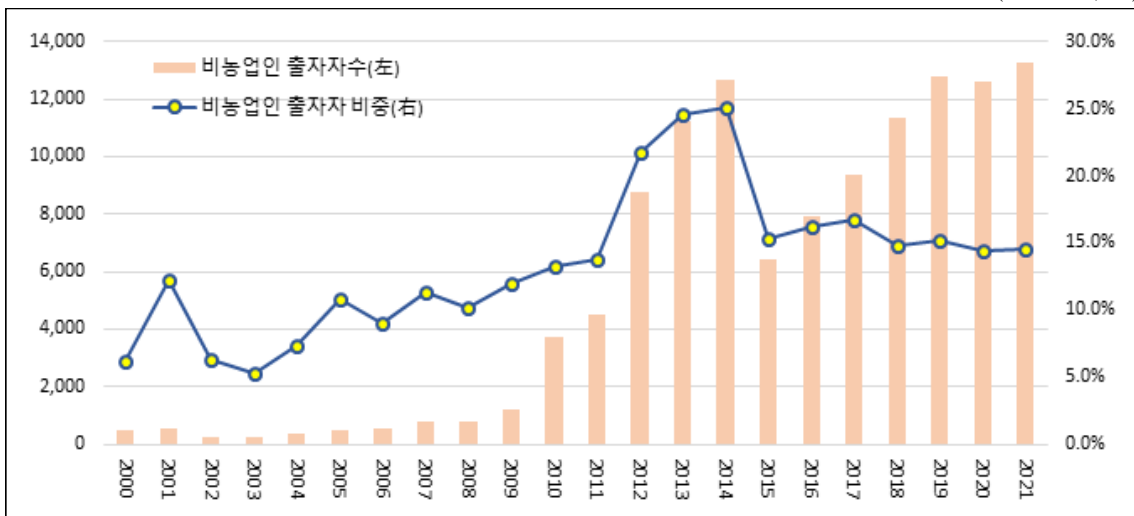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8]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https://kosis.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는 동일한 소득조건인 농민이 개인 대신 법인에 참여할 때 세금상의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사례분석으로 판단함
 - 사업소득에 대한 동 제도의 감면 범위와 조건상으로, 소수의 대규모 농업인을 제외하면 개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조직에 참여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그 외 작물 재배업과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규모는 오히려 개인사업자에게 더 유리함
 - 다만, 그 외 작물재배업과 농가부업은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농업인의 경우, 한도를 하회하는 다른 농업인들과 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인을 구성하면 감면혜택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첫 번째 실증분석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한 농가의 총판매금액이 더 높은 것은 역인과관계일 가능성이 충분하여 현재의 분석수준에서는 상관성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임
- 제도 변화 시 효과는 2000년대에 있었던 제도상 두 건의 주요 개편(200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 2014년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에 대하여 개편 전후 관련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 자료의 한계로 농업법인조사에서 공개한 2000~2021년까지의 연평균 지표값으로 개략적인 분석으로 진행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후 행태변화 여부: 2006년 전후로 농업인 출자자 수, 비농업인 출자자 수, 비농업인 출자자 수 비율, 법인당 출자금액 등에서 영농조합법인 대비 농업회사법인의 유의미한 추세 변화(structural break)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출자법인 수는 농업회사법인 대비 영농조합법인의 증가세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과세전환 후 행태변화 여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2014년에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율의 추세가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작물재배면적 대비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율의 감소 전환이 명확함
 - 다만, 이번 분석은 충분한 표본크기를 가진 미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통계청의 통합자료(aggregated data)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법인설립을 통하여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 특례제도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지원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따라서 동 조세특례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동 조세특례를 일몰시킬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다만 중장기적으로 농어업 가구와 비농가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이를 살펴 향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뮬레이션상 조세특례 구조가 대규모 농업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농업 소득에 대한 정확한 미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임
 - 이번 분석은 미시 데이터 취득의 제한으로 통계청의 통합자료(aggreated data)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서 향후 세부자료 취득이 가능해지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⁵²⁾

-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지원방법의 적절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타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함
 - (정부개입의 정당성) 재정패널자료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농어가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유의미하게 연간 812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2007~2020년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 현상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지원방법의 적절성) 동 조세특례는 이론적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균형고용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방법론상 적절한 정책수단인

5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늦게나마 수령한 농업법인 관련 미시 자료는 이상치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시 자료 관리를 위한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것으로 평가됨

- (지원수준의 적정성)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조세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적(optimum)이지만, 현실에서 최적수준을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음
 - 다만 실증분석에서 농어의 가구소득이 비농어에 미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동 지원정책이 방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 (타 제도와의 중복성) 농어업 부문을 대상으로 조특법 등에 규정된 각종 조세 지원·감면 제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지원 대상 객체와 지원 대상 세목, 지원 조건 등이 구별되어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의 필요성,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 관계, 농업법인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 제도 변화 시 효과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 (법인 참여 효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와 합산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참여한 경우에 총판매금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모두 참여(4,069.9만원) > 농업회사법인만 참여(2,073.1만원) > 영농조합법인만 참여(1,382.4만원)’의 순으로 매출증가효과가 나타남
- (출자와 소득 간 관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비농업인 출자 정보와 해당 법인의 농업소득 간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출자와 농업소득 간 관계에 대해 확인함
 - 분석결과, 농업인 출자액 비중이 낮을수록, 총 출자금액이 클수록 법인의 농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2016~202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나, 자료 자체에 이상치가 많이 발견되어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⁵³⁾
- (법인 참여 유인 구조) 참여 유도 유인 구조 여부는 동일한 소득조건인 농업

53) 농업법인이면서 농업인 출자자가 0인 경우, 자산과 출자금 항목이 0인 경우가 각각 1,699개, 55,545개, 3,570개에 이룸. 특히 자산이 0인 관측치 수가 전체 표본의 60%를 넘음

인이 개인 대신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상의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사례분석으로 판단함

- 사업소득에 대한 동 제도의 감면 범위와 조건상으로, 소수의 대규모 농업인을 제외하면 개인 농업인이 법인 조직에 참여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제도 변화 시 효과는 2000년대에 있었던 제도상의 주요 변화(200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 2014년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후 관련 지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후 행태변화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의 과세전환은 법인의 작물재배면적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작물재배면적 대비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율의 감소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남

○ 다만, 이번 분석은 미시데이터 취득의 제한으로 통계청의 통합자료(aggreated data)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서 향후 세부자료취득이 가능해지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조세경감을 받는 농어업법인들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의 악용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2021년 8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를 신설, 농어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⁵⁴⁾

○ 동시에 아래와 같은 새롭게 강화된 규제 조항들은 동 특례 조항의 악용을 막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동법 제20조의4에서 부당 이득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 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규정

5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최근 대법원은 동 조세특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림⁵⁵⁾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의무⁵⁶⁾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등록확인서 제출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본다면, 법인세 면제 신청 절차만을 위임한 모법(母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음
 - 즉 시행령은 신청의 절차만 위임받아 정하는 것일 뿐, 면제 요건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임

-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정부 용자나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어업법인이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님⁵⁷⁾
 - 농어업법인의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끝나지만,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보다 체계화된 관리가 가능함
 -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등 농어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시행령에 따라 동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을 것이나, 동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법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감면의 조건으로 한 현행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면 향후 명시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면제 대상 농어업법인 소득 가운데, 부대사업소득의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 하였음⁵⁸⁾
 - 예를 들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의 재배와 같은 농

5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57) 농업경영체 등록 비중은 2021년 현재 활동농업법인 25,605개 가운데 15,129개로 약 59.1%임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대사업 소득

업의 본질적인 사업이 아니고, 여타 휴양지에서의 관광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혜택을 부여함에 따른 문제 제기임

-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상세한 자료의 존재 여부 및 접근이 중요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가용 데이터를 이용한 전체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대비 부대사업 매출액은 약 1.1% 수준
 - 이는 14,268개 법인 중 부대사업 매출액을 보고한 1,068개 법인의 통계로서 이들 농업회사법인 전체 매출액은 3,527.3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대사업 매출액은 37.9억원임
 - 따라서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2년에 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20조의5 사업범위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의함⁵⁹⁾
- 따라서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고, 자료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부대사업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는 비농업인에게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 농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90% 한도, 8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비농어업인이 출자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참여 추세는 현재 증가추세라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2018~2021년간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자수 비중은 각각 14.8%, 15.2%, 14.4%, 14.5% 수준이며,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8.6%, 20.8%, 21.9%, 18.6% 수준임
-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대상 소득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약을 두고 있음

59) 2022년 5월 이전에는 삭제된 제11조에서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 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음

- 2019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를 신설하여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총액 중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법인세 감면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제한함
- 동시에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⁶⁰⁾
- 따라서 당초에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농업인만으로는 자본출자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고,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특정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농업인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배제는 일정 기간 후에 그 추세를 검토한 후 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함
- 자료 자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총 출자금액이 클수록, 농업인 출자액의 비중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기 때문에 비농업인의 출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6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감사원, 『감사보고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2022. 7.
- _____, 『감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2021. 1.
- _____, 『감사보고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 2016. 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1. pp. 467~468.
- 나채준·왕승혜·김수홍,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_____,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023. 3.
- _____, 『2022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2.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2022. 2.
- 마상진·안석·김유나,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전남대학교, 2017. 1.
- 성명재, 「도·농·어 소득불평등도 비교와 소득격차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제42권, 제2호, 2019, pp. 61~87.
- 유찬희·승준호·김종인·김현정,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10.
- 이동규·김승래·성명재·이명현,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이동식,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2022, pp. 35~59.

임소영·원은송,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쟁점과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10.

임종선·김경신, 「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2016, pp. 375~412.

홍범교·성명재·이동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황수철·장민기,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 2022. 3.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3. 31.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1. 12. 14.